

우리나라 國民年金制度의 改善方向

1997. 12

全 瑛 俊
韓 道 淑

序 言

우리나라의 國民年金制度는 1973년에 國民年金福祉法이 制定됨에 따라 대표적인 公的 老後所得保障制度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오일쇼크를 비롯한 경제·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제도의 시행이 지연되다가 1988년에야 비로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國民年金制度의 導入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國民年金制度는 아직 導入 初期에 있으며 급여지급은 2008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선진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收給不均衡과 같은 財政上의 문제는 아직 대두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老齡化에 따른 人口構造의 變化와 保險料率에 비해 過多하게 책정된 給與水準과 같은 국민연금제도의 現 收給構造가 유지될 경우 향후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財政難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는 現 構造下에서 약 2020년경에 기금이 赤字로 轉換될 것이며 2030년경에는 積立基金이 고갈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老齡化를 먼저 경험한 主要 先進國에서는 이러한 공적연금의 財政健實度 및 所得再分配와 더불어 제도의 效率性 提高를 위해 年金改革을 단행하여 왔다. 우리나라와 같은 新興工業國들은 선진국보다 낮은 소득수준에서 老齡化를 경험하게 됨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의 財政負擔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폐해는 선진국의 경우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本 報告書는 우리나라의 國民年金制度에 대한 世代間的 厚生分析과 外國事例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처해진 現 상황하에서 年金改革의 方向을 제시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

미 있는 작업이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世代別 厚生分析에 대한 연구는 世代間의 所得移轉에서 오는 歪曲을 최소화하고 경제전체의 후생을 전제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主要國의 公的年金制度에 대한 事例分析과 國際比較,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全世界的인 年金改革案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外國事例 관련 參考資料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全瑛俊 博士와 韓道淑 博士가 共同執筆하였다. 全瑛俊 博士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세대별 후생분석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으며, 韓道淑 博士는 주요국의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고찰과 최근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年金改革案에 대한 論議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著者들은 원고정리에 도움을 준 李信姬·洪忠基 研究員과 洪裕南·安相淑 研究助員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본 보고서의 심사에 참여해 준 匿名의 두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著者들의 개인적인 意見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7年 12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金仲秀

目 次

I. 序 論	11
II. 國民年金의 役割과 經濟的 效果	14
1. 國民年金制度의 必要性	14
2. 國民年金制度의 經濟的 效果	19
3. 國內外的 既存의 研究	24
III. 우리나라의 國民年金制度와 問題點	28
1. 우리나라의 國民年金制度	28
2. 國民年金制度의 現況과 問題點：財政危機를 中心으로	33
IV. 主要 先進國의 公的年金制度의 現況	39
1. 美國	40
2. 英國	48
3. 日本	52
4. 캐나다	61
5. 프랑스	70
6. 獨逸	74
7. 스웨덴	78
8. 濠洲	82
9. 뉴질랜드	86
V. 主要國의 公的年金制度 國際比較	90

1. 財源調達方式	90
2. 加入對象者	93
3. 受給資格要件	95
4. 公的年金 課稅制度	98
VI. 最近 世界的인 年金改革에 관한 論議와 示唆點	103
1. 人口의 老齡化	103
2. 全世界的인 老後所得保障 問題	105
3. 老後所得保障에 대한 政府의 役割	107
4. 多層體系의 老後所得保障制度 確立	112
5. 特定國家別 年金改革에 대한 政策提案	119
6. 政策的 示唆點	122
VII. 國民年金制度 改善方案 시뮬레이션	125
1. 模型	125
2. 模型 캘리브레이션	131
3. 年度別 遺族年金 受給現況	137
4. 政策 시뮬레이션 및 計算方法	139
5. 結果 解析	143
VIII. 國民年金制度의 改善方向 및 政策的 示唆點	158
1. 最近 論議되고 있는 國民年金 改革의 基本方向	160
2. 改善方向	162
3. 政策的 示唆點	167
參考文獻	170
<附錄 I>	176
<附錄 II>	186

表 目 次

<表 III-1> 國民年金制度의 保險料率	28
<表 III-2> 現行 國民年金制度의 老齡年金 給與構造	30
<表 III-3> 國民年金과 特殊職域年金의 比較	32
<表 III-4> 種別 加入者 現況	34
<表 III-5> 給與種類別 給與支給 現況	35
<表 III-6> 國民年金制度의 財政推移(1988~1995)	37
<表 III-7> 財政收支 展望	38
<表 IV-1> 미국 OASDI 年金制度의 扶養率 推移	42
<表 IV-2> OASDI制度의 財政推移	43
<表 IV-3> 現行 日本公的年金制度의 體系	53
<表 IV-4> 日本의 所得(公的年金 包含) 控除額 現況	60
<表 IV-5> 캐나다 老齡保障制度	62
<表 IV-6> 캐나다 老齡保障年金의 財政收支 展望	65
<表 IV-7> 캐나다·퀴백 年金制度	68
<表 IV-8> 캐나다 年金制度의 釀出率	69
<表 IV-9> 獨逸의 年金 受給開始年齡別 利子所得課稅 比率	78
<表 IV-10> 스웨덴 基礎年金의 收入 및 支出推移	80
<表 IV-11> 스웨덴 補足年金의 收入·支出 및 基金狀態	81
<表 IV-12> 스웨덴 基礎年金 및 補足年金의 老齡年金 受給者數와 支給額	81
<表 V-1> 主要國의 公的年金制度	92
<表 V-2> 主要國의 人口構造 關聯 統計(1995)	99

<表 V-3> 公的年金의 課稅制度에 대한 國際比較	102
<表 VII-1> 우리나라 人口의 將來 展望(1990~2090)	132
<表 VII-2> 遺族年金 遺族類型別 年齡別·性別(月平均) 支給額 現況(1989~1995).....	137
<表 VII-3> 政策代案別 資源配分[60世代(21~80歲)]	147
<表 VII-4> 政策代案別 適用稅率 比較[60世代(21~80歲)]...	148
<表 VII-5> 年金政策의 厚生效果 比較[60世代(21~80歲)]...	152
<表 VII-6> 年金受給과 釀出金의 比較[60世代(21~80歲)]...	153
<表 VII-7> 敏感度 分析	154
<附表 I-1> 主要國의 公的年金制度 國際比較	176
<附表 II-1> 政策代案別 資源配分 I	186
<附表 II-2> 政策代案別 適用稅率 比較 I	187
<附表 II-3> 年金政策의 厚生效果 比較 I	188
<附表 II-4> 年金受給과 釀出金의 比較 I	189
<附表 II-5> 政策代案別 資源配分 II	190
<附表 II-6> 政策代案別 適用稅率 比較 II	191
<附表 II-7> 年金政策의 厚生效果 比較 II	192
<附表 II-8> 年金受給과 釀出金의 比較 II	193
<附表 II-9> 政策代案別 資源配分 III	194
<附表 II-10> 政策代案別 適用稅率 比較 III	195
<附表 II-11> 年金政策의 厚生效果 比較 III	196
<附表 II-12> 年金受給과 釀出金의 比較 III	197
<附表 II-13> 政策代案別 資源配分 IV	198
<附表 II-14> 政策代案別 適用稅率 比較 IV	199
<附表 II-15> 年金政策의 厚生效果 比較 IV	200
<附表 II-16> 年金受給과 釀出金의 比較 IV	201

圖 目 次

[圖 VI-1] 1990~2030年代까지 世界老齡人口(60歲 以上)의 增加率 分布.....	104
[圖 VI-2] 世界の 地域別 老齡人口(60歲 以上) 分布 (1990, 2030)	105
[圖 VII-1] 國民年金基金 推移	156
[圖 VII-2] 國民年金의 世代別 厚生效果(Ⅰ)	157
[圖 VII-3] 國民年金의 世代別 厚生效果(Ⅱ)	157

I. 序 論

우리나라의 出生率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출생한 베이비 붐(baby boom)세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층의 인구수에 대한 生産可能年齡에 속하는 청년층의 인구수의 비율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노령화는 生産要素 供給의 變化에 따른 장기적인 생산요소 가격 변화를 초래하고, 또한 이러한 生産要素 價格의 變化는 期間別 資源配分の 變化와 世代別 厚生水準의 變化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노인층의 노후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중 國民年金制度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노인층의 증가에 따른 年金支給의 增加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年金保險金 收入의 감소와 더불어 미래의 연금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보다 根本的 問題인 年金給與 水準과 年金保險金收入의 不均衡 문제는 당장에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만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존의 연구들은 2030년대에는 年金基金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保險數理的 研究(actuarial study)에 국한되고 세대별 후생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uerbach-Kotlikoff(1987)의 模型을 응용하여 出

1) 이러한 연구에는 문형표(1992), 한국개발연구원(1995), 민재성·김용하(1994) 등이 있다.

產率 下落에 따른 資源配分 및 世代別 厚生水準의 評價와 國民年金 財政의 健全性 提高를 위하여 제시되어 온 여러 대안의 효과를 世代別 厚生의 再分配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²⁾. 본 연구에서 행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먼저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생산요소 공급 및 가격의 변화를 야기시킴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가용한 자원의 가치 변화를 통해 복리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이에 현행 제도와 같은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勞動供給의 減少와 貯蓄率의 下落을 통해 미래세대의 복리 수준을 감소시킨다. 셋째, 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年金保險料를 引上하는 방안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들의 복리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미래세대에 전가될 부담을 증대시킬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年金給與를 下向調整하는 방안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들의 후생비용은 미미한 반면 그에 따른 미래세대의 복리수준 향상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年金財政의 健全性 提高를 위해 年金給與를 下向調整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老齡化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를 국가별로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公的 年金制度의 國際比較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와 세계은행을 비롯하여 최근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年金改革案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지향점에 대한 示唆點을 도출하고자 한다.

本 報告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第II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

2) 본 연구에서 고려할 年金財政健全化 方案은 연금보험료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부류와 연금급여를 하향조정하는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年金賦出率을 上向調整하는 방안과 연금재정운용방식을 賦課方式으로 轉換하는 방안이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年金課稅의 실시, 年金受給開始年齡의 上向調整, 所得推計制度의 強化가 있다.

금의 役割과 經濟的 效果를 살펴보고, 第Ⅲ章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를 소개하고 다른 공적연금과 간략히 비교하며,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財政危機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第Ⅳ章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第Ⅴ章에서는 주요 내용별로 주요국의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第Ⅵ章에서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年金改革에 대한 政策代案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第Ⅶ章에서는 國民年金制度 改善方案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형, 모형의 캘리브레이션, 정책대안별 시뮬레이션 및 계산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따른 결과의 해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第Ⅷ章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政策代案 및 政策的 示唆點을 제시한다.

II. 國民年金的 役割과 經濟的 效果

1. 國民年金制度의 必要性

국민연금제도를 다른 나라에서는 社會保障制度(social security system)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정부가 強制貯蓄을 통해 노후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보편적 연금 프로그램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만일 각 개인이 자신의 노후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고 또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저축상품이 민간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된다면, 강제적인 저축을 통해 노후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시장에서 민간연금상품이 제공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경제학에서 경제주체의 행위에 대해 대표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合理的 期待假說(rational expectations hypothesis)은 현실의 상황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정부가 강제저축을 통한 노후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가. 民間年金の 높은 去來費用(transactions cost)

민간연금의 형태로 노후생계를 위한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연금상품으로부터 충분한 收益率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들에서 많은 민간연금보험 프로그램에서 보장하는 수익률이 기대하는 것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민

간연금의 行政管理 費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행정관리 비용이 지급수혜액의 2% 정도인 데 반하여,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지급수혜액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정관리 비용, 배당금 및 세금 등에 충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의 도입은 행정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민간연금시장에서와 같이 다양한 연금상품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만일 민간연금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충분히 높지 않다면 국민연금 도입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은 심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행정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클 것이다.

나. 市場失敗의 補完

國民年金制度가 정당성을 갖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그것이 시장실패를 보완한다는 데 있다. 시장실패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민간연금보험제도는 社會的 危險(social risk)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 사회적 위험이란 사회전체가 직면하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사회적 위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전쟁과 인플레이션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들을 민간연금회사가 부담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의 인상 혹은 세대간 조세부담의 재분배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이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상보다 급속히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었을 경우, 민간연금이 제공하는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는 이러한 예상 외의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일시적으로 부채를 지고 장래에 태어날 세대들에게 세부담을 전가시켜 완벽하진 않지만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위험, 특히 인플레이션에 의한 위험은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物價連動公債(indexed bond)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연금시장 실패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逆選擇(adverse selection)과 道德的 解弛(moral

hazard)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번째 유형의 시장실패는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보편적인 연금제도의 도입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시장 실패는 사람마다 현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거나 期待壽命이 다른 데서 기인한 위험성을 대상으로 民間保險商品을 마련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은퇴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저축으로 상대적으로 긴 은퇴기간을 가져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은퇴시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긴 사람의 경우도 기대수명이 짧은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은퇴기간을 살아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위험들은 어떤 사회에서도 명백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연금보험회사는 이러한 위험에 적절히 보험을 제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서 찾을 수 있다. 逆選擇이란 상대적으로 일찍 은퇴하거나 기대수명이 긴 사람들은 민간연금에 가입할 유인이 큰 반면 상대적으로 늦게 은퇴하거나 기대수명이 짧은 사람들은 민간연금에 가입할 유인이 작다는 데서 파생되는 문제이다. 역선택에 직면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보험가입료를 올리게 되면 가입자들 중 아주 빠른 시기에 은퇴할 것이 확실한 사람과 기대수명이 길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역선택이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民間年金保險市場에서는 역선택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道德的 解弛는 일단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믿고 일찍 은퇴해 버리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만약 연금보험회사가 각 보험가입자의 노동가능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노동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보험가입자

들 자신이 지니고 있는 반면, 민간연금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이들의 노동가능성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즉, 情報의 非對稱性이 존재하므로 민간보험회사가 이러한 문제를 떠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정부에 의해 강제가입이 의무화되는 국민연금의 도입이다.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이러한 역선택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는 정부에 의한 국민연금 강제가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정비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 所得再分配 機能

국민연금제도는 그 운용방식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같은 세대 내의 사람들 사이에서만뿐만 아니라 세대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가 積立方式(funded system)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賦課方式(pay-as-you-go)을 택할 경우, 즉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세적 성격을 띤 사회보장세(payroll tax)를 거두어들여 현재의 노년층에게 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世代間的 所得再分配 效果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 효과 때문에 어떤 세대는 자신들이 기여한 연금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급여를 받는 반면 다른 세대들은 자신이 기여한 연금보험금의 가치보다 훨씬 적은 연금급여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논의 중 世代間的 衡平性(intergenerational equity)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또한 동일 세대 내의 부유층과 빈곤층간에도 이루어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균등분과 소득비례분이 상존하고 있어 소득계층별 소득

재분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 효과는 연금각출은 기본적으로 소득비례인 데 반하여 급여면에서는 균등분이 존재하여 국민연금의 내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노후생계를 보조하는 수단이며 소득재분배, 특히 세대내 빈곤층의 生計補助를 위한 수단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존재하는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이러한 所得再分配 기능이 강조될 수 있다. 평등주의적인 가치관이 강한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일정수준의 생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노년층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국민연금제도에 의해서 일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老年層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빈곤층이 많은 편이므로 이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溫情的 干涉主義(paternalism)에 의한 介入

만일 모든 사람들이 合理的인 선택을 한다면 정부가 개입하여 강제적 저축을 강요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인이 스스로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消費行爲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스스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간본연의 약점에 기인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개인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무리 사려 깊은 사람도 情報의 不足으로 인해 非合理的인 決定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인간본연의 나태함에서든 정보의 부족에서든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여 충분한 저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국민연금제도를 통한 강제저축을 의무화하여야 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2. 國民年金制度의 經濟的 效果

국민연금제도는 현대 정부의 역할 중 그 중요성 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민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지출규모면에서 방위비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미 여러 나라 정부 총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민간부문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제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여러 경제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貯蓄과 勞動供給行爲이다.

가. 貯蓄에 미치는 影響

국민저축은 政府貯蓄과 民間貯蓄의 합으로 결정된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한 강제저축이므로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민간의 저축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운용 방식에 따라 정부저축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일 국민연금의 재정운용 방식이 賦課方式일 경우 정부저축에는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부과방식하에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 사회보장세를 징수하여 노년층의 연금급부에 충당하므로 정부저축의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재정운용 방식이 積立方式일 경우 정부저축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국민저축에 대한 영향은 연금의 재정운용 방식에 따른 정부저축의 변화와 민간의 저축행위의 변화로 결정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민간의 저축행위에 미치는 경로는 다음 몇 가지로 대별된다.

國民年金이 民間貯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경로는 世代間의 所得再分配를 통한 것이다. 만일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이 순수한 적립방식이라면 세대간의 소득재분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적립방식하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적립한 연금보험료의 원리금이 이들의 연금급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순수한 적립방식으로 운용하는 나라는 드물다. 아래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용방식도 순수한 적립방식이 아니라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혼합된 混合積立方式이므로 세대간의 소득재분배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의한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초래하는 저축행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年金給與水準과 年金保險賦出率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의 가입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기여한 연금보험료 수준보다 은퇴 후 지급받을 연금급여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밝히고 있다. 이는 現行의 국민연금제도는 연금재정의 부담을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들로부터 미래에 태어날 세대로 전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연금재정부담의 전가는 限界消費性向이 낮은 청년층으로부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노년층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혹은 한계소비성향이 현시점에서 0인 미래세대로부터 한계소비성향이 陽의 값을 가진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민간의 貯蓄率을 下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국민연금제도 도입이 저축률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경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代置效果(replacement effect)를 들 수 있는데 국민연금제도는 국가에 의한 강제저축 수단이므로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저축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국민연금 재정운용방식이 완벽한 적립방식이라면 줄어든 민간부문의 저축이 정부부문의 저축의 증가,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 기금의 증가의 형태로 일부 대체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국민연금의 재정운용 방식이 부과방식이라면 민간의 저축만 줄어들 뿐 정부의 저축은 늘어나지 않으므로 국민저축은 감소할 것이다.

세번째로 은퇴효과가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퇴직상태에 있

는 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와 관련된다. 만일 국민연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노후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계속 일해야겠지만 이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더 일찍 은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다 길어진 은퇴기간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보다 많은 저축이 필요하게 되므로 민간의 자발적인 저축을 증가시키게 된다.

네번째 효과는 부모가 자식에게 遺産을 相續하려는 動機(bequest motive)와 관련된다. 만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운용 방식이 완전한 적립방식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세대간 富의 재분배를 초래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청년층으로부터 노년층으로 富를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유산상속 동기가 있는 부모들은 국민연금제도가 초래한 자기 자식들의 富의 감소를 보충하려는 유인이 발생하며 자식들의 富의 감소에 상응하는 상속을 늘리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속동기에 의하여 자식을 가진 노년층의 저축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認識效果(recognitio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노후생활 대비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노후대책에 가치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저축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제도는 민간저축을 증대시키는 효과와 감소시키는 효과가 동시에 존재하며 또한 국민연금 재정운용 방식에 따라 정부저축도 영향을 받으므로 국민연금의 저축에 대한 영향을 사전적으로 알 수는 없으며 實證研究에 의한 檢證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나. 勞働供給에 미치는 影響

국민연금제도는 현재의 근로자들에게서 연금보험금을 각출하여 은퇴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근로자와 은퇴자들의 실질소득의 변화를 야기하여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민연금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所得效果와 代替效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노년층의 소득을 높여 줌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노년층들로 하여금 여가를 더 즐기고 노동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조기은퇴라는 현상을 초래하고 따라서 노동공급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所得效果는 이 제도가 연금가입자들의 富를 증대시키느냐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특정 개인이 평생동안 납입한 연금보험금의 현재가치가 은퇴 후 지급받을 연금급여의 현재가치보다 적을 경우 국민연금제도는 이 사람의 富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 사람이 소비한 여가량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시간의 감소를 야기한다. 만일 연금보험금의 현재가치가 연금급여의 현재가치보다 크다면, 거꾸로 노동시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代替效果는 제도의 도입이 여가의 機會費用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느냐에 좌우된다. 여가의 기회비용은 여가 1단위를 추가적으로 소비함으로써 포기하여야 하는 實質賃金率이다. 연금보험금의 납입은 세후 실질임금률의 감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여가의 기회비용은 하락하게 되며 개인의 노동공급 시간은 줄어들어 노동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勞動供給의 變化와 貯蓄率의 變化는 기본적으로 실증연구에 의해 규명되어야 하며 국민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통계자료에 의한 분석보다는 시뮬레이션에 의한 효과분석을 이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國民厚生에 미치는 影響

국민연금이 국민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복잡한 경로를 통

해서 나타난다. 이를 제도적인 면과 일반균형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다. 制度的인 면에서 국민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연 국민연금이 각 경제주체들의 평생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다. 만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평생동안 납부한 연금보험금의 현재가치보다 은퇴 후 지급받은 연금급여의 현재가치가 높을 때는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들의 평생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가입자들의 평생소득을 증가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부과방식하에서 'Aaron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이 조건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성장률의 합이 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모든 세대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제에서의 저축수익률은 이자율인 데 비하여 賦課方式下의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가입자들이 근로기간중에 납부한 연금보험금에 비하여 경제성장률과 인구성장률의 합만큼 늘어난 연금보험금 수입을 거둘 수 있고 이것이 연금급부의 재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Aaron 조건'이 성립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생소득이 증가하여 이들의 후생이 증대될 것이다.

一般均衡的인 면은 위에서 제시한 노동공급과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국민연금은 필연적으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경로로 노동공급과 저축행위의 왜곡을 가져오며 따라서 생산요소가격, 즉 임금률과 이자율의 변동을 가져오고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일반균형효과를 통한 후생의 변화에 대한 효과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국민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은 人口-勞動-國民經濟-年金制度의 요소가 함께 고려된 모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國內外的 既存의 研究

본절에서는 國民年金이 國民經濟에 미치는 效果에 대한 國內의 研究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의 研究들은 勞動供給의 變化에 관한 研究, 저축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그리고 재정운용 방식에 따른 年金財政負擔의 世代別 分布와 世代別 厚生分析에 관한 研究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국민연금이 勞動供給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실증분석은 퇴직연령에 미치는 影響과 노동시간에 미치는 影響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연금이 退職年齡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外國의 研究로는 Boskin (1977), Boskin and Hurd(1978), Burkhauser and Quinn(1980), Guestman and Steinmeier(1985), Fields and Mitchell(1984), Quinn (1977), Pellochio(1981), Gordon and Blinder(1980) 등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이 勞動時間에 미치는 影響을 분석한 研究들에는 Pellechio (1979), Hall and Jorgenson(1980), Kotlikoff(1979), Burkhauser (1980), Tachi-banaki and Simono(1985) 등이 있다. 이들 研究들은 다기간 동학적 결정모형(a multi-period intertemporal decision making model)을 그 이론적 토대로 하고 주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이들 研究에 의하면 연금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效果가 일률적으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연금수혜 자격요건의 완화는 노령계층의 조기은퇴현상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러한 結果의 통계학적 有意성이 높지 않거나, 통계학적 有意성은 있으나 경제적 의미가 별로 크지 않은 結果가 제시되었다. 또한 이들 研究들은 橫斷面資料(crosssectional data)를 이용하였으므로 분석연도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結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國民年金給與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의 분석방법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效果분석에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실증연구의 고전적인 예로 자주 인용되는 연구는 Feldstein(1974)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197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저축의 약 50%를 감소시켰다고 한다. 이 연구에 대해서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개인저축을 감소시켰다는 것은 타당하나 그 규모를 지나치게 크게 추정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그 대표적인 예로 Munnell(1977)이 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저축의 감소폭이 Feldstein(1974)의 그것에 비하여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러한 저축 감소폭에 대한 비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연금이 가계저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에는 Barro(1978), Darby(1978) 그리고 Kotlikoff(1979) 등이 있다.

재정운용 방식이 所得再分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통계 자료에 의한 분석보다는 模擬實驗(simulation) 模型에 의해 많이 행해졌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Denton and Spencer(1981)와 Auerbach and Kotlikoff(1987)가 있다. 이들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이론적인 접근방법으로 행해졌으며 그 예로는 Samuelson(1958), Aaron(1966), Spremann(1984) 등이 있다. 몇몇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인 결론은 부과방식하에서 모든 세대의 근로자가 보다 나은 내부 수익률을 가질 조건은 인구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상승률의 합이 생산적 투자에 의한 이자율보다 높을 때라는 것이다. 즉 'Aaron의 조건'이 성립할 때라는 것이다.

연금재정 방식의 효과는 필연적으로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와 경제전체의 거시변수의 변동에 대한 영향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人口-勞動-國民經濟-年金의 요소가 함께 고려된 모형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Denton and Spencer(1981) 모형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적연금의 도입이 경제성장률과 저축률에 미

치는 영향, 기술진보와 인구노동조건이 공적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분석되었다. 그러나 Denton and Spencer(1981)의 분석은 微視的 最適化 行爲에 기초를 둔 분석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Auerbach and Kotlikoff(1987)의 모형은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위에 기초를 둔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전의 모형과 달리 세대별 후생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모형을 이용하여 이들은 人口老齡化의 動態的 分析을 시도하였고 정부수입 및 지출의 방향, 사회보장각출료 수준¹⁾, 인구노령화에 의한 저축률과 실질임금의 변동, 개인의 후생변화, 공적연금제도의 변동이 경제 및 세대간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國內의 연구들은 주로 年金財政의 健全化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국민연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역사가 일천하고 연금급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외국에서 행해진 것과 같은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민재성 외(1986)가 외국의 연구를 토대로 당시 도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던 국민연금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年金財政의 健全化를 위한 여러 대안에 대한 분석도 주로 保險 數理的인 形態로 이루어졌다. 민재성·김용하(1991)는 Denton-Spencer(1981)의 모형을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國民年金의 經濟的 效果를 분석하였다²⁾. 이 밖에도 김용하(1994)와 문형표(1995)는 연금재정부담의 世代間 分布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1) 사회보장각출금 수준의 결정이 연구의 초점이 된 것은 미국의 사회보장체계가 기본적으로 부과방식이므로 매기 사회보장각출금 수준을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배준호(1994)는 Denton-Spencer(1981)를 개량하여 1974년 당시 우리나라 공적연금 도입연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위에 바탕을 둔 연구가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함수형태로 규정하거나 연금재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예를 들어 인구구조의 변동, 임금상승률 및 이자율의 변동에 대한 외생적인 가정에 바탕을 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세대별 연금재정부담의 분포에 대한 분석은 주로 연금의 내부수익률의 비교를 통해 행해졌으며 이들의 공통된 결론은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의 内部收益率이 지나치게 높아 연금재정의 부담을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에 적립될 국민연금기금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연금급여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2030년대부터 2040년대 사이에 국민연금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금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과의 연계방안 연구도 행해졌으며 그 예로는 문형표(1993)와 김용하·민재성(1994)이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의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경제주체들의 最適化 行爲에 바탕을 둔 世代別 厚生 分析이 행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방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Ⅲ. 우리나라의 國民年金制度와 問題點

1. 우리나라의 國民年金制度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財源調達方式은 기본적으로 寄與原則에 따르는 積立方式(funded system)이다. 즉 가입자가 근로기간 또는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부는 보험료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추후 가입자의 은퇴 후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데 충당하는 방식이다.

가. 年金保險料

國民年金制度의 保險料 水準은 <表 Ⅲ-1>에 정리되어 있다. 보험료 납부는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 使用者와 被傭者가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론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연금각출 분담분은 사용자의 勞動雇用費用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결국 근로자에게 歸着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表 Ⅲ-1> 國民年金制度의 保險料率

(單位：%)

	소득 기준	보험료율			
			1988~93	1993~97	1998 이후
사업장 가입자	표준소득월 액	사용자	1.5	2.0	3.0
		가입자	1.5	2.0	3.0
		법정퇴직금	-	2.0	3.0
임의 및 임의 계속 가입자	전가입자 평 균소득월액	전액 본인부담	3.0	6.0	9.0

<表 III-1>의 繼續

(單位：%)

소득 기준		보험료율			
지역 가입자 (1995. 7 시행)	신고소득 월액 ¹⁾	전액	1988~	2000.7~	2005.7
		본인부담	2000.6	2005.6	이후
			3.0	6.0	9.0

註：1) 단, 농어민에 한해서는 최저소득 등급의 보험료의 3분의 1을 定額으로 국고에서 지원.

나. 年金給與

급여 측면에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살펴보면, 노령으로 인한 소득기회의 상실, 장애 발생 및 조기 사망 등의 위험에 대해서 老齡年金, 障害年金 및 遺族年金 등이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노령연금의 종류, 수급자격 및 급여산식은 <表 III-2>에 정리되어 있다.

다. 其他 規定

1) 返還一時金

반환일시금제도는 15년 미만 가입자가 중도 탈퇴하였을 경우 가입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수익을 返還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자는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거나 60세에 달할 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한 때,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한 때, 그리고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이다.

이러한 반환일시금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가 初期段階에서 가입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 항목의 연금급여 지출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表 Ⅲ-2> 現行 國民年金制度의 老齡年金 給與構造

	자 격			연 금 액 산 정 공 식
	가입기간	지급개시연령	재직여부	
완전노령 연금	20년 이상	60세 (55세) ¹⁾	퇴직시	$0.2(\bar{W} + 0.75W)(1 + 0.05n)^{2)}$ (+ 가급연금액)
감액노령 연금	15~20년 미만	60세 (55세) ¹⁾	퇴직시	$0.2(\bar{W} + 0.75W)(0.725 + 0.05n')^{2)}$ (+ 가급연금액)
재직자 노령연금	20년 이상	60~65세 미만 (55~60세 미만) ¹⁾	재직시	기본연금액 × (0.5 + 0.1(연령 - 60))
조기노령 연금	20년 이상	55세	퇴직시	기본연금액 × (0.75 × 0.05(지급개시 연령 - 55)) + (가급연금액)
유족연금 급여			수급자 사망시	기본연금액의 60%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50%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간 10년 미만)

註: 1) 특수직종근로자(坑內鑛夫 및 船舶漁撈作業 종사자)의 경우

2) \bar{W} :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연금지급 개시 후의 경제사정 변동률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1995.15 개정). 특히 전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다(10% 상승세 혹은 매년 변동률의 합이 10% 이상일 때 조정).

W : 가입자의 전가입기간중 재평가된 표준소득월액의 월평균치

$n(n')$: 20년(15년) 초과 가입연수

가급연금액: 배우자 월 5천원, 자녀 1인당 월 3천원

資料: 보건사회부, 「국민연금법령집」, 1989.

2) 標準所得率制度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산정된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實際所得의 月平均値를 산정하고 이를 다시 정부가 제시하는 所得 等級表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月平均所得額을 결정한 다음 보험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되어 있다. 所得等級表는 22만원에서 360만원까지 1~4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처럼 최고소득등급이 월 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적용 대상소득은 최고 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는 고소득층의 연금액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所得推計制度

소득추계제도(earnings test)는 연금수급자격을 지닌 자라고 하더라도 정규적인 소득을 보장받고 있으면 年金惠澤을 줄이거나 年金受給을 延期하는 제도이다. 현행 연금제도에서는 在職者 老齡年金制度(60세 이상 64세 미만 적용)를 통하여 소득추계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재직자 노령연금이란 年金受給資格을 갖춘 자가 60세가 넘어서도 일정액 이상의 소득(기본연금액 이상)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4) 年金給與의 指數化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年金給與額이 固定되어 있다면 연금급여의 실질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소득보장 차원에서 볼 때 매년 적절한 給與水準의 上向調整이 필요하다. 이러한 급여의 지수화는 현행 제도하에서 消費者物價 上昇率(CPI)을 基準으로 연금급여를 상향 조정하여 給與의 實質價値를 보전해 주고 있다. 즉 퇴직시점에서 산정된 基礎年金給與額을 기준으로 매년 누적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합이 10% 이상일 때에 그 변동률만큼 급여를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다(국민연금법령 제33조).

라. 다른 公的年金과의 比較

우리나라의 公的年金은 크게 國民年金과 特殊職域年金으로 나눌 수 있다. 특수직역연금에는 公務員年金(1960년 실시), 軍人年金(1963년 실시), 私立學校 職員年金(1975년 실시) 등이 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차이는 給與算式과 保險料 水準에 있다. <表 III-3>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제도의 給與算式은 均衡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합으로 구성되고 있는 반면 특수직역연금제도

<表 Ⅲ-3> 國民年金과 特殊職域年金的 比較

		국민연금제도	지역연금제도
가입단위		개인(지역연금은 세대단위)	개인
保險料	납부율	평균소득월액의 9% (1998년 이후)	소득월액의 11%
	소득상한	있음(최고소득등급 제한)	없음
	분담형태	피용자 : 3% 사용자 : 3% 퇴직금전환 : 3% (임의 및 지역가입은 전액 본인부담)	국가 및 사용자 : 6.5% ¹⁾ 가입자 : 6.5%
급여종류		· 노령연금 : 가입기간 20년 이상 · 장해연금 } 가입기간 1년 이상 · 유족연금	· 퇴직연금 : 가입기간 20 ~ 33년 · 장해 및 조기사망시 단 기급여 지급
노령 (퇴직) 급여	급여산정 기준	전가입기간 평균소득(W) 및 전가입자 평균소득(\bar{U}) 기준	최종소득(W*) 기준
	기본급여 산식	$0.2 \times (1 + 0.05n) \times$ $(\bar{U} + 0.75W)$ (소득재분배기능)	$(0.5 + 0.02n) \times W^*$ (소득비례형)
	연금액 조정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CPI) 기준	재직자보수 기준
	지급개시 연령	60세부터 지급	퇴직 직후부터 지급 ²⁾
	지급방식	연금형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가능
	유족급여	기초연금액의 일정부분 ³⁾	기초연금액의 70%

註 : 1) 1995년 12월 29일 개정 : 가입자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납부하지 않는다.

사립학교교원 연금 : 국가 부담 2.0%, 사용자 부담 : 4.5%

2) 1996년 1월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60세부터 지급

3)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가입기간 20년 이상 60%

의 경우 완전소득비례적 급여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은 특수직역연금에 비하여 소득재분배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保險料 水準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선이 존재하여 역진적인 성격이 있는 반면,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아 소득비례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급여산식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월액인 반면 직역연금의 경우 최종소득이며 급여개시 연령도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제한이 없이 퇴직 직후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특수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노령뿐만 아니라 가입기간 발생한 장애나 조기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障害年金과 遺族年金을 지급하고 있으나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경우 가입자의 유족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20년 이하일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장애연금의 경우도 공무상 재해에 한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제도에서는 均等給與部分의 導入과 給與開始年齡의 制限을 두어 노령으로 인한 소득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기초소득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消費者物價 上昇率을 기준으로 한 급여조정 방식, 재직자 노령연금제도를 통한 所得推計(earnings test) 方式을 도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이 社會保險的인 성격이 강한 반면 특수직역연금은 私保險的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國民年金制度의 現況과 問題點：財政危機를 中心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기본적 연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으로 그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당시의 세계적인 오일쇼크로 인해 그 시행이 보류되다가 15년 후인 1987년 전면적인 제도 개정으로 1988년부터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국민(단, 기존의 공적연금제도의 수혜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強制的인 當然適用制度和 任意適用制度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 당연적용 대상자는 1991년 말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포함하며 이는 1992년 1월 현재 10인 미만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임의적용 대상자는 당연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자들이며 여기에는 농민, 어민, 자영업자 및 5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가 포함되며 이들은 다시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눌 수 있다. 국민연금은 1995년 7월부터 농어촌지역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

농어촌지역 가입자(약 160만명)와 사업장 가입자를 포함한 당연적용 대상자수는 714만명에 달하며, 농어촌지역 가입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를 포함한 임의가입 대상자수는 약 7만명에 달하고 있다.

國民年金給與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老齡年金, 障害年金, 遺族年金 및 返還一時金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되

<表 Ⅲ-4> 種別 加入者 現況

(單位: 個, 名)

	총가입자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1988	4,432,695	58,583	4,431,039	1,370	286
1989	4,520,948	62,952	4,515,680	4,036	1,232
1990	4,651,678	72,511	4,640,335	8,274	3,069
1991	4,768,536	80,987	4,747,605	14,921	6,010
1992	5,021,159	120,374	4,977,441	32,238	11,480
1993	5,159,868	129,703	5,108,871	40,452	10,545
1994	5,444,818	144,910	5,382,729	48,332	13,757
1995	7,257,394	152,463	5,541,966	1,650,958	15,760

주: 1. 1975년부터는 지역가입자에 당연적용 대상자인 농어촌지역 가입자가 포함됨.

2. 당연가입자인 농어촌지역 가입자는 「국민연금통계연보」에서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5.

어야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완전노령연금의 수혜자는 2008년에 생길 전망이다. 현재의 주된 연금급여는 반환일시금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表 III-5>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제도하에서 행해지는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반환일시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國民年金의 問題點으로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으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財政不均衡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年金財政 危機의 원인은 인구의 老齡化에 따른 人口構造의 變動과 年金給與와 年金保險金 收入의 不均衡으로 요약될 수 있다.

<表 III-6>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급여 수준을 초과하여 國民年金基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에 있고 또한 국민연금 재정운용 방식이 적립방식이기 때문이다. 1995년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18조 1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기금의 증가는 연금

<表 III-5> 給與種類別 給與支給 現況

(單位：名, 件, 千원)

	계			특례노령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수	건 수	금 액	수급자수	건 수	금 액	수급자수	건 수	금 액
1988	3,136	3,128	300,579	-	-	-	-	-	-
1989	59,438	59,347	6,034,473	-	-	-	1,811	1,756	753,359(2.48)
1990	257,318	257,101	42,301,047	-	-	-	4,927	4,762	3,058,373(7.23)
1991	383,251	382,790	110,881,939	-	-	-	8,793	8,392	6,600,975(5.95)
1992	493,217	492,471	216,540,564	-	-	-	14,800	14,129	12,942,729(5.97)
1993	584,206	583,014	333,130,850	10,971	10,971	6,446,594(1.93)	21,387	20,336	20,480,548(6.14)
1994	847,199	845,613	519,074,469	22,530	22,530	18,524,183(3.56)	27,742	26,431	28,981,397(5.58)
1995	878,102	875,899	755,460,397	38,162	38,162	37,517,401(7.23)	37,009	32,459	39,127,945(5.18)

註：1. 수급자수는 동순위 수급자를 포함한 수이며, 건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수입.

2. () 안은 총합계 중 구성비임.

<表 Ⅲ-5>의 繼續

(單位: 名, 件, 千원)

	장 해 연 금						반 환 일 시 금		
	연 금			일 시 보 상 금					
	수급자수	건 수	금 액	수급자수	건 수	금 액	수급자수	건 수	금 액
1988	-	-	-	-	-	-	3,136	31,284	300,579(100.0)
1989	42	42	19,133<35.52>	27	27	34,730<64.47>	57,558	57,522	5,227,251(86.62)
1990	307	307	223,022<46.14>	194	194	260,271<53.85>	251,890	251,838	38,759,381(91.62)
1991	879	879	862,048<61.22>	332	332	545,940<61.22>	373,247	373,187	102,872,977(92.77)
1992	2,172	2,172	2,901,912<57.38>	1,344	1,344	2,155,305<42.61>	474,901	474,826	198,540,618(91.68)
1993	3,896	3,896	5,780,889<56.41>	2,341	2,341	4,466,879<43.58>	545,611	545,470	285,965,941(88.84)
1994	5,435	5,435	8,596,417<70.57>	1,566	1,566	3,583,710<29.42>	789,926	789,651	459,388,761(88.50)
1995	7,088	7,088	12,664,576<76.45>	1,529	1,529	3,902,303<23.55>	796,628	796,236	661,754,639(87.60)

註: () 안은 총합계 중 구성비, < > 안은 장해연금·일시보상금 총합계 중 구성비임.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5.

도입 초기의 현상이며,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어 연금급여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연금재정의 안정화는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형표(1995)에 의하면 2023년에는 연금재정이 적자로 전환되며 연금기금도 2033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재정의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年金保險金의 上向調整이나 연금급여 수준의 下向調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정책대안의 실시를 위해서는 年金財政에 미치는 影響뿐만 아니라 世代間 厚生效果分析을 통한 정책효과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表 Ⅲ-6> 國民年金制度의 財政推移(1988~1995)

(單位: 億원, %, 千名)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연평균 증가율
수 입	5,282 (100.0)	7,111 (100.0)	10,193 (100.0)	11,377 (100.0)	16,628 (100.0)	32,227 (100.0)	43,415 (100.0)	53,934 (100.0)	36.25
각출료(A) ¹⁾	5,070 (95.99)	6,270 (88.17)	8,340 (81.82)	9,848 (86.56)	12,234 (73.57)	26,394 (81.90)	33,258 (76.60)	39,663 (73.53)	34.39
기타수입 ²⁾	212 (4.18)	841 (13.41)	1,853 (18.18)	1,529 (13.44)	4,394 (26.43)	5,833 (18.10)	10,157 (23.40)	14,272 (26.46)	94.31
지 출	3 (100.0)	70 (100.0)	535 (100.0)	1,144 (100.0)	2,400 (100.0)	3,613 (100.0)	5,975 (100.0)	7,938 (100.0)	457.80
연금급여(B) ³⁾	3 (100.0)	60 (85.71)	423 (79.07)	1,109 (96.94)	2,165 (90.21)	3,331 (92.19)	5,190 (86.86)	7,555 (95.17)	408.83
기 타 ⁴⁾	0 (0.0)	10 (14.29)	112 (20.93)	35 (3.06)	235 (9.79)	282 (7.81)	785 (13.14)	384 (4.83)	
B/A	0.06	0.95	5.07	11.26	17.70	12.62	15.60	19.03	
수 지 차	5,279	7,041	9,658	10,233	14,228	28,614	37,440	45,997	34.21
누적적립기금	5,282	12,402	22,595	35,390	52,019	84,246	127,661	181,597	46.95
연금수급자수 (C)	3	59	257	383	493	584	847	878	328.87
연금가입자수 (D)	4,433	4,521	4,652	4,769	5,021	5,160	5,445	7,257	6.96
C/D	0.07	1.31	5.52	8.03	9.82	11.31	15.56	26.53	

註: () 안은 구성비임.

- 1) 본인기여금 및 기업부담금의 합계
- 2) 이식수입 포함
- 3) 반환일시금 및 장애·유족연금급여
- 4) 예비비 포함.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6.

<表 Ⅲ-7> 財政收支 展望

(單位: 10億원, 1990年 不變가격)

	각출금 수입	기본운용수입	총수입	총지출	지출차액	적립기금
1995	2,774	590	3,363	1,367	1,996	9,825
1996	3,175	694	3,870	2,123	1,746	11,571
1997	3,390	792	4,182	2,553	1,628	13,199
1998	5,896	1,136	7,033	1,293	5,740	18,939
1999	6,314	1,500	7,814	1,750	6,063	25,002
2000	8,287	1,958	10,245	2,609	7,636	32,638
2001	8,854	2,234	11,088	3,104	7,983	40,621
2002	9,393	2,700	12,093	3,620	8,474	49,095
2003	9,958	3,190	13,148	4,237	8,911	58,006
2004	10,548	3,703	14,252	4,929	9,323	67,329
2005	13,166	4,299	17,465	6,629	10,836	78,164
2010	17,334	7,501	24,835	12,784	12,051	136,377
2020	27,932	10,919	38,852	35,226	3,626	218,388
2030	40,190	4,059	44,250	75,380	-31,130	90,206
2040	52,448	0	52,448	119,744	-67,296	0
2050	67,495	0	67,495	151,861	-84,366	0

資料: 문형표(1995).

IV. 主要 先進國의 公的年金制度의 現況

우리나라보다 인구의 노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노령인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公的年金의 導入을 서둘렀으며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제도의 정착이 실현되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인구출산율의 감소와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령화의 급진전으로 年金財政의 收給不均衡 問題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年金改革이 斷行되었다. 이러한 각국의 主要 年金改革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財政 安定化 方案으로는 연금재정 운영방식의 전환과 같은 제도의 기본구조상의 改革과, 制度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정수급불균형의 개선을 위한 법정연금 개시연령의 연장, 보험료의 인상,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수급자격요건의 강화 및 연금과세의 도입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증대하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연금의 역할을 퇴직 후의 最低生活 水準의 保障인 기초연금으로 最小化하고 기초연금 이상의 노후소득은 사적연금을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私的年金의 制度化에 따른 각종 稅制支援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國民年金制度는 1988년에 도입되어 연금급여의 지급이 본격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재정상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선진국과는 달리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적립방식의 재정운용체제하에서는 제도가 成熟期에 접어들어 연금급여가 本格化되면 연금재정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年金財政의 赤字가 發生하게 되며 더 나아가 年金基金의 枯渴을 招來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國民年金制度의 給與支給은 2008년부터 본격화되며 이후의 연금재정상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연금재정상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年金改革은 시급한 사안이며 이 같은 연금재정의 어려움을 앞서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는 연금개혁방안의 摸索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本章에서는 主要 先進國의 公的年金制度의 현황 파악을 위해 美國, 英國, 日本, 캐나다, 프랑스, 獨逸, 스웨덴, 濠洲와 뉴질랜드 등 9개의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를 國家別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老齡化를 먼저 경험하였으며 공적연금제도의 도입 또한 상당히 앞서 이미 制度의 成熟期를 맞이하고 있다.

1. 美國

美國 公的年金制度(social security system)의 시초는 1935년에 일반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老齡·遺族·障害保險(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의 導入이며 이후 적용대상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현재는 전체 취업인구의 약 96%가 가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수직역연금제도인 철도퇴직제도(railroad retirement system : RRS), 군인연금제도(military retirement system : MRS), 연방공무원연금제도¹⁾(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 CSRS, 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 FERS) 및 다수의 주·지방정부관계 공무원연금제도가 있다²⁾. 각 직역연금제도는 일반인

1)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기존의 CSRS에 가입되어 있으나 1984년 이후 채용된 모든 연방공무원은 새로운 공무원연금제도인 FERS의 가입과 동시에 OASDI의 적용을 받게된다.

2) 주·지방정부 공무원 중 주·지방정부 자체의 연금제도가 없는 경우 또는 주정부가 OASDI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는 OASDI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을 대상으로 하는 OASDI와는 별도로 발전하여 왔으나 점차 OASDI와 적용대상, 재정구조 및 급부방식 등 여러 면에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의 계기는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에 따른 失業과 貧困의 深化로 정부주도의 社會保障制度의 必要性이 대두된 데 있다. 초기의 사회보장연금제도는 積立方式으로 運用되었으며 제한된 적용범위와 사보험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었다.

1939년부터는 積立方式에서 賦課方式(pay-as-you-go)으로 轉換되었다. 이로 인해 제도 초기의 적은 부담으로 많은 급부가 가능하여 지급개시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등 수급조건을 완화하였으며 醫療保障 및 補足保障所得制度 등 공적부조급부의 범위 또한 확대하였다.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대상자의 적용범위를 65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로 농업종사자, 철도직원도 포함시켰으며 이외에도 가사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하였다.

제도가 성숙기로 접어든 1970년대 말부터는 사회보장세의 수입에 비해 과도한 급여 확대에 의한 연금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출생률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령화의 급진전으로 연금재정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0년 이후 老齡人口比率(65세 이상 인구대비 현역근로자수) 및 扶養率(연금수급자수 대비 가입자수)은 급격히 上昇하여 세대간의 收給不均衡 問題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表 IV-1> 참조).

연금재정의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고 기금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1983년에 社會保障法이 改正되었다.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혁 이후 재정운영 방식이 수정부과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적립금의 보유수준이 증가하게 되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각출료의 인상과 적용대상자의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表 IV-1> 미국 OASDI 年金制度的 扶養率 推移

(單位: 百萬名, 백, %)

	가입자수(A)	연금수급자수(B)	A/B	B/A × 100
1950	48.3	2.9	16.5	6
1960	72.5	14.3	5.1	20
1970	93.1	25.2	3.7	27
1980	112.0	35.1	3.2	31
1990	132.8	39.5	3.4	30
2000	145.8	46.7	3.3	31
2010	156.9	53.8	2.9	34
2020	161.1	66.7	2.4	41
2030	163.0	79.2	2.1	49
2040	166.1	83.7	2.0	50
2050	167.8	86.4	1.9	51

資料: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ASDI Trust Fund, *The 1993 Annual Report*, 1993.

개정안은 財政安定化 조치를 위해 각출료를 인상하는 한편 신규채용 연방공무원을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 ① 근로자-고용주 사회보장세율 합계액의 4분의 3 정도였던 자영업자의 세율을 근로자-고용주 사회보장세율을 합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② 고소득자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50%³⁾까지 과세소득에 산입시키고 연금과세수입은 전액 OASDI신탁기금으로 이전되도록 하였다.
- ③ 연금개시연령을 2003년부터 2027년까지 2기로 나누어 최종 67세로 상향조정하도록 하였다.
- ④ 최저생활비용의 조정 실시기간도 종전보다 반년의 기간을 두고 조정하는 한편 적립비율이 감소할 경우는 연금급여액을 소비자

3) 1994년부터 고소득계층의 경우 연간 사회보장급여의 최고 85%까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본질의 마. 관련세제 참조.

물가나 임금상승률 중 낮은 것에 연동하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表 IV-2> OASDI制度의 財政推移

(單位: 10億달러, %)

	수입	지출	수지차	기금규모	적립률
1960	11.4	11.6	-0.2	22.9	197
1970	36.1	30.3	5.8	37.7	124
1980	117.4	118.5	-1.1	32.2	80
1985	197.9	188.5	7.4	39.8	21
1987	226.9	207.3	19.6	65.4	32
1990	306.8	248.6	58.2	214.9	86
1992	338.2	287.5	50.7	317.2	110
1995	402.4	338.8	63.6	489.3	144
2000	536.8	446.0	90.8	885.5	199

註: 적립률 = (기금규모/지출) × 100

資料: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ASDI Trust Fund, *The 1993 Annual Report*, 1993.

가. 加入對象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당시는 가입대상 적용범위가 민간근로자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일정수입 이상(1995년 기준 연소득 630달러 이상)의 모든 雇用主, 勤勞者, 自營業者는 加入이 義務化되어 있다. 단 목사, 외국정부와 국제기관 종사자, 농업노동자 및 가사노동자와 주·지방 공무원 등의 가입은 임의로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1995년 4월 현재 4,300만명이 OASDI의 연금급여혜택을 받고 있으며 총지급액은 매월 2,700만달러 수준이다. 1995년과 1996년에 지출되는 급여의 총액은 각각 3,290억달러와 4,47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나. 財源調達 및 保險料

OASDI의 재원은 가입 근로자가 납부하는 社會保障稅(social security tax)와 고용주의 각출금, 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및 연금과세 수입 이월금(1984년 이후)과 적립금의 운영수입으로 조달되고 있다. 사회보장세는 목적세 형태로 근로소득에 부과되며 매년 필요지출의 규모에 따라 조정된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각출률은 각각 6.2%로 근로자 1인에 적용되는 총 각출률은 12.4%이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회보장세 12.4%를 단독으로 부담한다.

다. 年金給與 算定方式

1979년 이후에 지급되는 老齡年金 또는 障害年金의 기본연금액(primary insurance amount : PIA)은 가입자의 재평가된 월평균소득(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 AIME)에 의해 결정된다. OASDI제도하의 모든 연금급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변화에 따라 자동연동함으로써 급여의 실질가치를 보전해 주고 있다.

1995년도에 62세 이상이거나 재해발생 또는 사망한 가입자의 기본연금액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OASDI 기본연금액(PIA)} = 0.9 \times \text{AIME}_1 + 0.32 \times \text{AIME}_2 + 0.15 \times \text{AIME}_3$$

AIME₁ : 제1단계 소득구분으로 평균지수화된 월소득(AIME)의 첫 426달러까지를 포함

AIME₂ : 제2단계 소득구분으로 426달러 초과 2,567달러 이하의 AIME

AIME₃ : 제3단계 소득구분으로 2,567달러를 초과하는 AIME

위와 같은 월평균소득에 대한 구분(bend point)은 社會保障法⁴⁾에 의한 평균소득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OASDI의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최대급여액도 기본연금액 산정 방식과 유사한 공식을 통해 산정된다. 최대급여액 산정공식 또한 기본연금액의 함수로 나타나고 1995년 급여지급이 개시되거나 수급자격을 충족하기 전에 사망한 가입자의 最大給與額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며 기본연금액 구분도 사회보장법⁵⁾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begin{aligned} \text{최대연금급여액} = & (1.50 \times \text{PIA}_1) + (2.72 \times \text{PIA}_2) + (1.34 \times \text{PIA}_3) \\ & + (1.75 \times \text{PIA}_4) \end{aligned}$$

PIA₁: 기본연금액 구분(PIA-interval bend point) 제1단계로 544달러까지 포함

PIA₂: 기본연금액 구분 제2단계로 544달러 초과 785달러 이하의 PIA

PIA₃: 기본연금액 구분 제3단계로 785달러 초과 1,024달러 이하의 PIA

PIA₄: 기본연금액 구분 제4단계로 1,024달러 초과하는 PIA를 포함

라. 給與의 種類

OASDI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노령·장애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피부양자연금 등이 있다.

1) 老齡年金

기초연금인 老齡年金을 100% 수급할 수 있는 完全老齡年金의 수

4)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215(a)(1)(B) 참고.

5) 사회보장법 215(a)(2) 참고.

급자격은 40분기 이상의 가입기간 충족시에 주어지고 있다. 완전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65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62세 이상으로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는 노령연금의 早期受給이 가능하다. 그러나 62세부터 노령연금을 조기수급할 경우 연금급여액이 감액되어 기본연금액의 80%가 지급된다⁶⁾. 65세 이후에 연금수급을 시작하고자 할 경우는 70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수급당시의 급여액은 증액되어 기본연금액의 115%가 지급된다⁷⁾.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정에 의하면 연금개시연령을 2003년부터 2027년까지 2기로 나누어 최종 67세로 상향조정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이 같은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상향조정 방안의 취지는 人口高齡化 전망에 따른 年金財政의 건실화와 就業年齡의 연장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다.

2) 障害年金

OASDI제도하에서는 障害를 勤勞 및 所得取得能力의 喪失로 인해 최소한 1년 이상 월간 소득이 500달러 이하의 경우 또는 장애로 인해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짓고 있다. 장애연금급여의 수급자격은 6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자로 최소 5년(20분기) 이상의 가입기간을 충족시켜야 하며 급여액은 노령연금과 같은 기본연금액의 100% 수준이다. 단, 가입자가 31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21세 이후 장애 발생 전까지 최소 6분기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만 완전피보험자 자격이 주어진다.

3) 遺族年金

遺族年金은 가입자가 死亡 以前에 일정한 연금수급 자격을 만족한 경우 지급되며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은 사망한 가입자의 기본연

6) 노령연금의 조기수급액은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조기 수급되는 매개월당 (5/9)%씩 감액된다.

7) 이월되는 노령연금의 수급액은 매개월당 0.25%씩 증액되어 연간 3%가 증가하게 된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같은 유족연금급여는 수급 대상자별로 금액에 차이가 있으나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유족의 경우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의 75~10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가입자가 40분기의 가입기간을 충족하여, 완전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사망했을 경우는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에 배우자와 자녀 및 부모가 포함되며 준피보험자 자격을 만족시킨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 및 자녀로 수급대상 범위가 축소된다.

配偶者遺族年金의 경우는 배우자가 65세 이상 또는 50세 이상으로 장애가 적용되는 경우가 해당되며 16세 이하의 자녀나 장애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급여가 지급된다. 고아연금의 대상자에는 사망한 가입자의 18세 이하인 미혼자녀 또는 19세 이하의 취학자녀가 포함되며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8세 이상의 자녀에게도 급여의 수급권이 주어진다. 부모연금은 사망한 가입자가 부모를 반 이상 부양해 온 경우가 해당된다.

마. 關聯稅制

사회보장세에 대한 고용주의 각출보험료는 손금산입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는 급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과세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 각출분은 源泉徵收에 의해 課稅되고 소득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美國의 公的年金給與所得(social security benefit)에 대한 課稅原則은 각출시 課稅, 급부시 非課稅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83년도의 사회보장세 개정에 따라 급부시에 연금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부터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잠정소득(provisional income)의 규모에 따라 2가지 방법으로 연금소득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範圍가 규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租稅收入은 社會保障基金으로 積立된다. 낮은 잠정소득계층은 사회보장급여의 50% 또는 기준금액 초과분의

50% 중 낮은 금액이 연금소득 과세범위에 포함되며, 높은 잠정소득 계층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최고 85%까지 과세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즉, 낮은 잠정소득계층의 경우는 독신자의 경우 2만 5천달러, 부부합산신고시는 3만 2천달러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의 50% 또는 연간 사회보장급여의 50% 중 낮은 금액을 연금소득의 과세범위로 정하고 있다. 반면, 높은 잠정소득계층의 경우는 독신자의 경우 3,400달러와 부부합산시 4,4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85%에 사회보장급여의 50% 또는 기초액(독신자는 4,500달러, 부부합산은 6천달러) 중 낮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연간 사회보장급여의 85% 중 낮은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규정짓고 있다.

2. 英國

英國의 社會保險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國民保險制度이고 다른 하나는 其他 國民保險(勞動災害)制度이다. 양자는 각각의 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1975년부터는 單一基金으로 統合되었다.

질병급부, 실업급부, 미망인급부, 장애연금, 퇴직연금, 산재급부 등 소위 보험급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나의 社會保險制度로 統合되어 있는 것이 英國 社會保險의 特徵이다. 國民保險法은 1946년에 制定되어 1948년부터 施行되었으나 당시는 균일액각출에 대해 균일액급부를 하는 소위 一律的인 制度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1961년부터 퇴직연금에 대해 소득비례의 부가연금제도가 설치되었다. 이 제도는 1975년에 일단 폐지되었으나 1978년 새로운 부가연금제도가 발족하였고 이것을 수정한 부가연금제도가 1988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가. 加入對象

老齡·障害·遺族年金制度는 모든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週所得(weekly earning)이 58파운드 이하의 근로자와 연간 일정소득이 기준치 이하인 자영자 및 무직자는 임의가입자로 규정짓고 있다.

고용주가 민간부분의 연금제도 가입시 연금에 대한 보험료의 적립 및 급여지급 수준이 사회보험의 소득비례부분을 능가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나. 財源調達

社會保險의 財源은 근로자와 고용주로부터 납부되는 보험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勤勞者의 보험료는 주당 소득 중 첫 58파운드까지는 2%의 각출률이 적용되며 나머지 58~440파운드 사이는 10%가 적용된다. 소득비례부분을 적용 제외할 경우는 주소득의 첫 58파운드까지는 2% 각출률이 적용되고 나머지 58~440파운드 사이의 주소득에 대해서는 8.2%의 각출률이 적용된다.

自營業者는 주당 5.75파운드 상당의 정액을 납부하며 연간소득이 6,640~2만 2,880파운드 사이인 경우는 연간 소득의 7.3%를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된다.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매주 5.65파운드를 납부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임금에 따라 3~10.2%(소득비례부분의 적용 제외시는 2~10.2%)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자산조사에 의해 지급되는 사회부조 성격의 급여와 기타 非寄與給與(non-contributory benefit)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전액부담하고 있다. 각출가능 최대소득의 상한액은 440파운드로 제한하고 있으며 최소소득은 58파운드로 규정짓고 있다.

다. 給與의 種類

급여의 종류에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老齡年金(old-age pension) 및 遺族年金과 사회부조방식의 所得支援(income support), 중증장애급여(severe disablement allowance), 장애생계급여(disability living allowance), 간호급여(attendance allowance), 장애노동급여(disability working allowance), 폐질간호급여(disabled care allowance) 등이 있다. 모든 연금은 物價上昇率에 따라 調整된다.

1) 老齡年金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남자 65세, 여자 60세로 50주(1975년 4월 이전) 동안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충족하거나 1975년 4월부터 1978년 3월까지 납부한 보험료가 최소한 주각출 수준의 50배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연금지급 적격요건으로 규정짓고 있다(1978년 3월 이후부터는 주각출의 52배가 적용됨). 일반적으로 남자의 경우는 49년의 10분의 9, 여자의 경우는 44년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이 적용되며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이에 비례하여 감액된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가입기간이 급여혜택을 위한 가입기간의 25% 미만일 경우는 연금지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 부양자녀의 양육 또는 경로친척의 간호로 인해 가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또한 학업 및 실직기간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주당 최고 58.85파운드이며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어른의 경우는 일인당 35.25파운드, 첫 자녀의 경우는 9.85파운드 그리고 이외의 자녀에 대해서는 11.05파운드의 부양가족에 대한 급여가 각각 지급된다.

공적연금의 소득비례 급여(SERPS)는 주당 92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입기간에 대해 매년 최대 1.25%를 평균잉여소득에 기초하여 연동지급한다.

2) 障害年金

병가수당이 지급된 이후에도 장애에 의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는 28주 동안의 장애연금급여의 혜택이 부여된다. 장애연금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병가수당 지급이외의 장애급여는 壽與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4월 13일부터는 급여혜택을 지급받기 이전의 과세연도중 최저소득에 대한 보험료의 25배를 납부하였고 동시에 장애급여 수급 직전의 두 과세연도의 보험료가 최저소득에 대한 보험료의 50배를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완전급여가 지급된다.

장애연금급여는 의사에 의해 장애가 증명된 후 52주 후에 지급되거나 완전장애의 경우는 28주 후부터 지급된다. 장애연금급여는 해외로도 송금이 가능하나 출국 이전의 6개월 동안 障害로 인해 勤勞가 不可能한 상태이어야 한다.

장애연금의 기초급여는 57.60파운드이며 연령과 장애수준에 따라 추가로 주당 3.80, 7.60 또는 12.15파운드가 지급된다. 소득비례부문 급여는 주당 58.85파운드이며 35.25파운드와 9.85~11.05파운드가 부양어른과 부양자녀를 위해 추가적으로 각각 지급된다.

3) 遺族年金

사망한 가입자가 연금급여의 혜택을 위한 가입기간을 充足하였거나 사망당시 연금수급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遺族年金이 지급되고 있다. 60세 미만의 미망인 또는 배우자가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一定額(1995년 기준 1천파운드)이 一時拂로支給되며 홀어머니에게는 주 58.85파운드, 첫자녀는 9.85파운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11.05파운드가 각각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미망인에게는 가입자 사망당시 배우자의 연령 또는 홀어머니 급여가 정지된 시점에 따라 연금이 차등지급된다. 55세 이상은 주당 58.85파운드의 급여가 지급되나 45~54세의 미망인에게는 완전급여의 일정부분만 지급된다. 또한 1978년 이후에는 가입자의 소득비례

부분에 대한 급여도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고아연금의 경우는 양부모 사망시에만 적용된다.

라. 關聯稅制

雇用主가 納入한 각출보험료는 全額 損金算入되며 勤勞者 負擔의 각출보험료는 소득공제 없이 一般所得稅를 課稅한다. 연금급여는 급부시 일반소득으로 전액 과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연금과세는 이중과세를 피하는 의미에서 공적·사적연금을 막론하고 각출단계시 비과세, 급부시 과세를 취하였으나, 1965년부터 각출시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日本

日本の 公的年金制度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國民年金制度와 기초연금 이상의 보장을 제공하는 보수비례부문의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厚生年金制度, 공무원 및 각종 특수직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4가지의 共濟組合年金制度로 구성되어 있다(<表 IV-3> 참조).

일본 연금제도의 시초는 1942년 남자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勞働者年金保險法の 導入이다. 이후 1954년에는 厚生年金制度가 改正되었고 1961년에는 근로자 연금제도에서 제외되었던 자영업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國民皆年金制度가 성립되었으며 이로 인해 社會保障制度로서의 年金制度가 비로소 體系化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일본경제의 高度成長에 따른 社會經濟構造의 變化에 상응하는 연금급여 수준의 조정이 요구되어 1965년 연금법 개정에서는 1만엔 수준의 연금을 실현하였으며 1966년에는 후생연

금의 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1969년에는 연금수준을 2만엔으로 인상하였으며 1973년의 연금개정에서는 연금수준의 지표가 되는 후생연금의 급여수준을 근로세대 임금수준의 60%선으로 하는 등 연금수준의 기본방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후생연금급여의 산정시 과거의 임금을 현재의 가치로 再評價하여 계산하는 標準報酬額의 再評價制度가 도입되었으며 消費者物價上昇率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 年金額이 조정되는 自動物價連動制度가 도입되었다.

<表 IV-3> 現行 日本公的年金制度의 體系

제도의 종류	기초연금제도	근로자연금제도(보수비례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후생연금제도	공제조합제도			
			국가공무원 등	지방공무원 등	사립학교교직원	농림어업단체직원
대상	자영자, 피용자연금제도의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배우자	일반 피용자, 선원 등	국가공무원, 공공기업체 관계직원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직원	사립학교교직원	농림어업단체직원
운영주체	국가	국가	각 성·청 등 공제조합 및 연합회	각 지방공무원 공제조합 및 연합회	사립학교직원공제조합	농림어업공제조합

資料 : 민재성 외, 『공무원연금제정의 장기발전 및 연금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94. 8.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연금제도가 분리되어 운용되면서 제도간의 連繫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각 제도의 가입기간이 길어져 연금지급액이 증대함에 따라 수급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에는 공적연금제도의 안정화와 세대간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연금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함에 따라 공적연금의 기초연금부문 일원화
- ② 미래 연금수급자의 급부수준을 하향조정하고 현역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세대간의 소득분배의 불균형 해소
- ③ 공적연금제도간의 조화 및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연계조정이 가능하도록 각출료 및 급여산정을 기초로 한 표준보수제 채택

1990년대에 들어와 계속되는 勞動人口의 減少와 더욱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高齡化 등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年金法の 改正이 요구되었으며 이를 위한 연금개정이 1994년에 이루어졌다. 1994년의 연금법 개정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 기회 확보와 근로세대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연금급여와 보험료 부담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94년도 연금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본격적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고 60대 전반은 고용연장으로부터의 임금과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함. 즉 60세부터 65세까지는 보수비례부분 상당의 노령후생연금을 지급하고 65세부터는 노령기초연금과 老齡厚生年金을 지급하도록 전환
- ② 在職者老齡年金을 다음과 같이 개정(1995년 4월부터 시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함(개정 전에는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연금지급의 停止比率도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촉진의 誘因이 존재하지 않았음).
- ㉠ 개정 전 : 임금이 25만엔 이상(표준보수월액이 26만엔 이상)의 厚生年金 가입자에게는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임금이 25만엔 미만(표준보수월액 24만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임금에 비례하여 퇴직 후에 지급되는 연금액의 20%에서 80%에 상당하는 연금을 지급

- ㉠ 개정후 : 임금과 연금의 합계액이 22만엔 이하인 경우는 연금 소득의 80%까지 지급하며 임금과 연금의 합계액이 22만엔을 초과할 경우는 34만엔까지 임금 증가분의 50%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임금과 연금을 합한 총소득이 50%씩 증가하도록 함. 임금이 34만엔 초과시는 임금의 증가분만큼 연금의 지급을 정지함.
- ㉡ 雇傭保險과의 조정을 통해 1998년 4월부터는 65세 미만의 노령 후생연금 수급권자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은 고용급여만을 지급하고 노령후생연금의 지급은 정지함.
- ㉢ 1989년 개정 이후의 전세대의 소비수준 향상을 고려해 1989년의 노령기초연금 월액 5만 5,500엔에서 1994년 10월부터 연금액의 월액수를 6만 5천엔으로 인상하며 장해기초연금 및 유족기초연금도 이와 같이 조정함.
- ㉣ 후생연금의 보수비례부분이 종전에는 名目賃金 상승에 비례하여 재평가되었으나 향후 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상승을 고려하여 實受領賃金의 인상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순소득기준의 연동제를 도입함.
- ㉤ 국민연금의 월보험료는 급여수준의 향상에 따라 1994년의 1만 1,100엔에서 1995년의 1만 1,700엔으로 인상하고 향후 매년 500엔(1994년 기준)씩 인상함. 국민연금의 최종 월보험료는 2015년 이후에는 2만 1,700엔으로 추정됨(1994년 기준).
- ㉥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은 1989년 재정재계산시 5년마다 2.2~2.5%로 인상하도록 하였으나 최근의 경제성장을 감안하여 2.5%의 보험료를 인상과 동일하며 보험료 부담의 증가를 완화하는 단계적인 인상방안을 채택함.
- ㉦ 1994년 11월 이전 : 14.5%
- ㉧ 1994년 11월부터 : 16.5%(2% 인상)
- ㉨ 1996년 10월부터 : 17.35%(0.85% 인상)

또한 후생연금의 징수대상을 상여금을 포함한 3개월간의 총보수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 차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함.

- ⑧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의 개정을 통해 배우자 및 장해자의 취업의욕을 증진시킴.
- ⑨ 육아휴직중(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의 보험료를 면제하며 이 기간은 급여면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함.
- ⑩ 연금수급권의 확보를 위해 60세 이후 65세까지의 임의가입기간을 연장함.

가. 國民年金制度

초기의 국민연금제도는 무각출에 의한 福祉年金의 성격으로 1959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1961년에는 적용대상에 기존의 연금제도에서 제외되었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무직자까지 포함함으로써 強制性을 띤 社會保險制度로 발전하였다. 1985년 연금 대개혁 이후의 일본국민연금제도는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적인 연금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로소 國民皆年金體制가 이루어졌다. 또한 통산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분립된 연금제도간의 연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적연금간의 이동에 따른 연금수급권이 보장되게 되었다.

1) 加入對象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國內居住者로 가입이 義務化되어 있고 강제가입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3종류의 가입자별로 구분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는 임의가입이 인정되고 있다.

- ① 제1호 피보험자 :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 국내거주자로 농림어업, 상업 등의 자영업자와 자영업 종사자

및 학생을 포함함.

- ② 제2호 피보험자: 후생연금 또는 각종 공제연금 등 피용자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가 이에 포함됨. 단, 65세 이후에는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제2호 피보험자자격이 상실됨.
- ③ 제3호 피보험자: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제2호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이에 포함되며 제2호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세까지 제1호 피보험자로 구분됨(단, 제3호 피보험자가 제2호 피보험자의 자격을 획득하였을 경우는 예외임).

일본의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의 가입자수는 1993년말 현재 6,928만명에 이르며 이 중에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1,544만명(65세 이상 피용자연금제도의 수급권자 포함)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국민의 50%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財源調達 및 保險料

국민연금의 급여지출에 필요한 財源은 일반국민의 保險料, 정부로부터의 支援金과 被傭者年金制度로부터의 각출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일정액이 부과된다. 피용자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는 基礎年金醜出金으로 가입자 전원이 공평하게 다음과 같은 산정공식에 의해 부담하고 있다.

$$\text{기초연금각출금} = \text{기초연금 급여지출액} \times [\text{피보험자수} \\ (\text{제2호와 제3호}) \div \text{국민연금의 총피보험자수}]$$

정부는 지원금 형태로 기초연금각출금의 3분의 1 정도를 국고에서 모든 피보험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제도운영비와 20세 이전의 장해연금의 급부금 및 각종 급여혜택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1994년에는 월 1만 1천엔이었으나 급여수준

의 향상 등을 감안해 1995년에는 1만 1,700엔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1996년도 이후의 보험료 월액은 전년도의 物價上昇率에 連動시키기로 하였다.

3) 給與의 種類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각 연금에 피부양가족급여가 추가로 가산되어 지급되고 있다.

가) 老齡基礎年金

노령기초연금은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간의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일정액의 연금급여가 지급된다. 전국민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基礎年金額은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부분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1989년 연금개정 이후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지출의 증가를 감안하여 1989년의 5만 5,500엔이었던 노령기초연금이 1994년 10월분 연금액부터는 월 6만 5천엔으로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이 40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보험료 납부실적과 면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감액된 연금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egin{aligned} \text{노령기초연금액(1994년 기준)} &= 786,000\text{엔} \times (\text{보험료납부기간월수} \\ &\quad + \text{보험료면제기간월수의 } 1/3) / 480\text{개월} \end{aligned}$$

완전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인 65세 이상의 가입자에게 지급되나 경과적 조치에 의해 가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를 위해 特例規定을 마련하여 特例老齡年金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급여지급 개시연령인 65세 이전이나 이후에도 연금지급이 가능하다. 65세 이전에 연금을 조기수급할 경우에는 완전노령연금에서 감액(60세 수급시에는 42%가 감액되며 64세에는 11%가 감액됨)된 연금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65세 이후에 연금을 延期受給할 경우에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초과한 연수에

따라 가산(12%~88%)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조 기, 연기 또는 차기지급되는 노령연금의 취지는 노령자의 취업을 장 려하려는 데 있다.

나) 障害基礎年金

障害基礎年金은 가입기간에 질병에 대한 初診日이 포함되어야 하 며 1급 또는 2급의 장애상태 인정시 지급된다. 해당 장애기초연금의 급여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의 초진일 이전의 가입기간중 3분의 1 이상의 보험료에 대한 滯納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고 있으며 3급 의 장애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최 소가입연령인 20세 이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20세 또는 장애 인정일의 장애상태에 따라 장애등급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며 장애 기초연금의 수급권자의 소득이 일정금액 초과시에는 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障害基礎年金은 장애등급에 따라 差等の 一定額과 추가로 子女加 算年金이 지급된다. 장애기초연금은 1992년 기준으로 장애 1급인 경우 가입자 本人에게 연간 90만 6,600엔이 지급되었다. 子女加算年 金は 장애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부양자녀가 18세 미만 또는 1, 2급 의 장애상태인 경우에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해당 2자녀까지는 매 년 1인당 20만 9,100엔, 3자녀부터는 1인당 6만 9,700엔이 추가적으 로 지급된다. 장애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에 대한 가산연금은 추 가·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피용자연금제도에서 배우자에 대한 급여가 가산되기 때문이다.

다) 遺族基礎年金

遺族基礎年金은 加入者가 死亡한 경우 그 遺族에게 지급되며, 노 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가입자 사망시에도 보험 료 체납기간이 사망전 가입기간의 3분의 1 이하일 경우에는 유족기 초연금이 지급된다. 배우자가 수급하는 유족기초연금(부부연금)은 1994년 기준으로 연 78만 6천엔 수준이며, 부양자녀수에 따라 加算

금이 지급된다.

또한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 유족기초연금(부부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할 경우 자녀들이 지급받는 유족기초연금(遺子女年金)의 기본금은 연 78만 6천엔이며 2인 이상부터는 일정의 가산금이 지급된다. 이 같은 유자녀연금은 자녀가 18세 미만 또는 20세 미만의 1, 2급 장애자일 경우에만 지급된다.

4) 關聯稅制

個人이 납부한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 등의 보험료 부담금은 공적 연금에 관계되는 것으로 사회보험료의 공제대상으로 全額控除된다. 企業이 부담하는 납부금에 대해서는 全額 損金算入된다. 납입자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친족을 위해 지급하거나 급여로부터 공제되는 건강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료 합계액을 당해연도의 총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한다. 반면 연금소득은 일반소득으로서 전액 과세된다. 당해연도 공적연금 등의 총수

<表 IV-4> 日本의 所得(公的年金 包含) 控除額 現況

수급자 연령	당해연도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 합계액(A)	공제액
65세 이상인 자	260만엔 이하	140만엔까지
	260만엔 초과 460만엔 이하	$(A) \times 25\% + 75\text{만엔}$
	460만엔 초과 820만엔 이하	$(A) \times 15\% + 121\text{만엔}$
	820만엔 초과	$(A) \times 5\% + 203\text{만엔}$
65세 미만인 자	130만엔 이하	70만엔까지
	130만엔 초과 410만엔 이하	$(A) \times 25\% + 35.5\text{만엔}$
	410만엔 초과 770만엔 이하	$(A) \times 15\% + 78.5\text{만엔}$
	770만엔 초과	$(A) \times 5\% + 155.5\text{만엔}$

資料 : 일본소득세법(35조).

입에서 수급자의 연령이나 수입금액별 공제액을 공제한 잔액이 '雜所得'으로서 課稅된다(<表 IV-4> 참조).

4. 캐나다

캐나다의 헌법상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사회보장에 따르는 책임을 분담하고 있으며 소득보장과 관련된 행정은 인적자원개발성(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에서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의 공적연금제도는 노령보장제도(old age security system : OAS)와 캐나다·퀘벡연금제도(Canada pension plan·Quebec pension plan : CPP/QPP)로 구성되어 있다. 노령보장제도는 무각출로 조세에 의해 일반재정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며 연금급여의 종류에는 기초연금인 老齡保障年金(old age security pension : OASP) 이외에 所得保障補足制度(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GIS)와 配偶者 年金手當制度(spouse's allowance : SPA) 등이 있다. 캐나다 및 퀘벡연금제도는 피보험자의 각출에 근거하여 소득비례로 지급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모두 연방정부의 책임하에서 전국이 통일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퀘벡주만은 캐나다 연금제도에 상응하는 퀘벡 연금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가. 年金의 種類

1) 老齡保障制度(OAS)

1951년에 도입되어 1952년부터 시행된 「노령보장법(Old Age Security Act)」은 이미 1927년부터 시행되어 온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자산조사(income test)에 근거한 연금급여체제를 대신하게 되었다. 노령보장법은 그 이후 많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금개시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1965)

- ② 소득보장 보족제도 도입(1967)
 - ③ 연금급여액에 연간 생활비용지수를 적용(1972)
 - ④ 연금급여액을 매 4분기별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한 생활비용 증가에 따라 조정(1973)
 - ⑤ 배우자 연금수당제도 도입(1975)
 - ⑥ 캐나다 영주기간에 따른 부분연금지급 도입(1977)
 - ⑦ 국제 사회보장제도 체결을 OAS에 포함(현재 진행중)
 - ⑧ 배우자 연금수당 혜택을 60세에서 64세의 모든 저소득층 미망인들에게 적용(1985)
- 캐나다 국외로 지급되는 급여는 적격요건 충족시 해외거주자에게

<表 IV-5> 캐나다 老齡保障制度

	1995년 3/4분기		1995년 3월	
	최대급여수준 (캐나다달러)	급여혜택가능 최고소득 수준 (캐나다달러)	수급자수 (명)	지급액 (백만 캐나다달러)
노령보장연금(OASP)	392.41	n.a.	3,420,018	1,292.7
소득보장보족제도(GIS)				
미혼	466.33	11,208	831,030	279.0
기혼(무연금 수급권 자의 배우자)	466.33	27,168	77,070	23.4
기혼(연금 수급권자 의 배우자)	303.75	14,592	398,329	68.6
기혼(배우자연금수당 (SPA)의 배우자)	303.75	20,880	70,231	15.8
소계			1,376,660	386.8
배우자수당				
일반	696.16	20,880	70,218	17.7
미망인	768.55	15,336	41,521	18.4
소계			111,739	36.1

資料 :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Old Age Security Program Annual Report*, 1994.

도 송금되고 있다. 또한 18세 이후 2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에는 해외거주자에게 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무기한 지급된다. 이외에는 연금 수혜자가 국내영토를 벗어난 달과 추가적으로 6개월 동안의 급여가 지급되며 그후에는 급여지급이 중단된다. 만약 국내로 逆移民하는 경우는 연금급여의 지급이 다시 시작된다. 반면 GIS와 SPA의 경우는 캐나다 출국후 6개월 동안만 연금이 송금된다.

가) 老齡保障年金(OASP)

거주기간 충족시 65세 이상의 신청자에게는 고용이나 퇴직과는 상관없이 매달 노령보장연금급여가 65세부터 사망시까지 지급된다. 노령보장연금에 대한 수급 적격요건은 캐나다 市民權 또는 永住權 所有者로 18세 이후 최소 10년간 국내에 영주하여야 하며,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라도 18세 이후 최소 20년간 국내에 영주하였거나 시민권을 소유하던 자에 한해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18세 이후에 캐나다와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에 영주한 경우는 체류기간을 캐나다 영주기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年金給與額은 18세 이후 10년 이상의 국내거주 年數에 따라 差等支給되며 영주한 지 40년이 되면 수급가능한 최대금액(1995년 3/4분기 기준 매월 392.41캐나다달러)을 100% 지급받게 된다. 단 40년의 영주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1977년 1월 1일을 기해 25세 이상으로 이 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거나 영주권을 획득한 자에 한해서는 최대연금금액이 지급된다. 최대의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경우에도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시점 이후 10년 이상의 국내 영주기간을 필요로 한다⁸⁾. 최대연금급여 혜택의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급대상자는 部分年金(partial

8) 이 기간중 1년간의 국내 비거주 기간은 18세 이후 3년간의 국내영주기간의 3년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면 60세부터 62세까지 2년간의 국내 비거주기간은 18세 이후부터 55세까지의 거주기간중 6년으로 대치할 수 있다.

pension)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분연금 급여액수는 노령연금 관련 영주기간을 충족하는 각 연도에 대해 최대연금 금액의 40분의 1 수준으로 규정되고 있다.

총 OASP 급여는 매년 연평균 수급자수 전망치에 연평균 급여액의 전망치를 곱한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1년 이후 연평균 OASP급여율은 전년도의 OASP평균 급여에 다음과 같은 지수를 곱해 추정하고 있다.

$$\text{지수} = (1 + C_{N-1})^{1/3} + (1 + C_N)^{2/3}$$

$C_N = (N-1)$ 연도 ~ N 연도 사이의 소비자물가 지수 증가율

나) 所得保障補足制度(GIS)

GIS는 65세 이상의 인구 중 低所得者에게 보족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노령보장연금과 기타소득의 합계가 최저생활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 정부가 최저생계비 부족액을 보조해 주고 있다.

GIS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재신청을 해야 하며 매달 지급되는 연금급여의 액수는 수급자의 연간소득과 기혼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독신자, 미망인, 이혼자 및 별거인에 적용되는 지급률과 기혼자(동거인을 포함한 배우자가 OASP 또는 SPA 혜택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게 지급하는 最大補助 給與率이 差等化되어 있다. 독신자에게 적용되는 GIS 보조율은 기혼자 개인의 경우보다 높으나 기혼자의 부부합산 보조금액은 독신자의 보조혜택보다 높다.

독신자, 미망인, 이혼자 및 별거인에게 지급되는 월간 최대보조액은 기타소득 매 2달러당 1달러가 감액된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모두 OASP 연금수급자인 경우 최대 월간보조액은 기타소득 매 4달러당 1달러가 감액된다. 단, 예외적으로 부부 중 1인만이 OASP 수급자이고 다른 한 사람이 기본 OASP나 SPA 수혜자격이 없는 경우는 월간최대 보조액이 OAS 연금혜택을 제외한 기타 부부합산

<表 IV -6> 캐나다 老齡保障年金의 財政收支 展望

	65세 이상 노령인구수 (명)	연금 수급자수 (명)	평균급여액 (캐나다 달러)	총급여액 (백만캐다 달러)	행정비용 (백만캐나 달러)	총지출 (백만캐나 달러)	총비용/ 총수입 (%)
1994	3,405,555	3,362,984	4,639	15,601	55	15,655	4.27
1995	3,484,116	3,440,563	4,733	16,285	57	16,342	4.19
1996	3,560,448	3,515,941	4,825	16,964	59	17,023	4.07
1997	3,631,603	3,583,077	4,913	17,620	62	17,681	4.07
1998	3,699,320	3,653,077	5,025	18,355	64	18,420	4.05
1999	3,755,008	3,708,069	5,167	19,160	67	19,227	4.02
2000	3,811,156	3,763,515	5,339	20,095	70	20,165	3.99
2005	4,100,880	4,049,617	6,342	25,681	90	25,771	3.91
2010	4,555,831	4,498,882	7,532	33,884	119	34,003	3.99
2015	5,301,202	5,234,936	8,945	46,828	164	46,992	4.33
2020	6,161,937	6,084,912	10,624	64,648	226	64,874	4.76
2025	7,104,729	7,015,920	12,618	88,529	310	88,839	5.23
2030	8,018,745	7,918,510	14,987	118,671	415	119,087	5.59
2035	8,401,219	8,296,203	17,799	147,667	517	148,184	5.49
2040	8,523,507	8,416,962	21,140	177,935	623	178,558	5.18
2045	8,551,827	8,444,928	25,108	212,033	742	212,775	4.85
2050	8,596,912	8,489,449	29,820	253,156	886	254,042	4.58
2055	8,771,621	8,661,975	35,417	306,781	1,074	307,854	4.40
2060	9,072,217	8,958,813	42,064	376,846	1,319	378,165	4.29
2065	9,307,098	9,190,758	49,959	459,162	1,607	460,769	4.14
2070	9,490,297	9,371,668	59,336	556,075	1,946	558,021	3.95
2075	9,675,169	9,554,228	70,472	673,308	2,357	675,665	3.78
2080	9,899,471	9,775,726	83,699	818,218	2,864	821,082	3.64
2085	10,167,647	10,040,551	99,408	998,112	3,493	1,001,605	3.51
2090	10,444,244	10,313,690	118,066	1,217,692	4,262	1,221,954	3.39
2095	10,696,847	10,563,136	140,225	1,481,215	5,184	1,486,399	3.26
2100	10,931,549	10,794,904	166,543	1,797,818	6,292	1,804,110	3.13

資料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Old Age Security Program Annual Report*, 1994.

소득 매 4달러당 1달러씩 감액된다⁹⁾.

GIS 급여소득에는 OASP 급여소득과는 달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GIS 급여는 해외 거주자에게 6개월 이상의 지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제도의 재원 또한 조세에 의한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지급되고 있다.

다) 配偶者 年金手當(SPA)

SPA 혜택은 매달 지급되며 이는 미망인이나 부부 중 1인의 연금 소득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SPA 수혜자는 매년 수당혜택을 받기 위한 재신청을 해야 하며 手當惠澤은 所得稅가 免除된다.

SPA는 GIS와 같이 해외거주자에게는 6개월 이상의 지급을 금하고 있다. SPA 혜택수혜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려면 신청자가 60세 이상 64세 이하이며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으로 OASP와 GIS를 제외한 연간 夫婦合算所得이 一定限度額 內이어야 한다.

SPA 수혜자가 OASP 급여혜택을 받게 되는 65세가 되면 SPA는 자동적으로 지급이 중단된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SPA 지급이 중단된다.

- ① 수혜자 사망시
- ② 해외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 ③ 연금수혜 배우자가 GIS 수혜자격 상실
- ④ 수혜자의 이혼 또는 별거
- ⑤ 미망인 수혜자의 재혼

수당금액은 자산조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연금수급자 배우자의 최대 수당액은 OASP와 GIS 최대급여의 합산액과 같다. 미망인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9) 첫 1달러의 감액은 연간 부부합산소득이 (12×매월 기본OAS연금액+48달러)를 초과할 때부터 시행된다.

2) 캐나다·퀘벡年金制度(CPP/QPP)

캐나다연금제도와 퀘벡연금제도는 납입자와 가족의 소득을 퇴직, 장애 및 사망시 보장해 주는 社會保險制度이다. 급여혜택의 종류에는 퇴직연금, 장애연금, 장애자 자녀혜택 및 유족연금 등이 있다.

1965년에 처음 제정되어 그 다음해인 1966년 시행된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왔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간 消費者價指數에 따른 생활비용 증가를 연금급여에 반영·조정
- ② 남녀 및 유족 모두에게 동등한 年金給與惠澤 부여
- ③ 연금급여혜택은 65세 이후의 퇴직 및 고용여부와 무관
- ④ 이혼시 부부합산 연금적립의 분할

1987년 1월부터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안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 ⑤ 보다 신속적인 年金開始年齡 설정으로 60세부터 연금수급 가능
- ⑥ 장애연금급여의 상향조정
- ⑦ 배우자의 재혼시에도 유족연금의 지속적인 지급
- ⑧ 부부간의 퇴직연금 분할수급 가능
- ⑨ 별거(동거인 포함)시에도 연금급여혜택의 분할 가능

연금개시연령은 65세부터이나 60세 이후부터 연금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65세 미만 급여 지급시는 매달 0.5%씩 감액된다. 70세까지 연금개시연령의 연장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年金給與額이 매달 0.5%씩 증액된다. 이로 인한 最大 調整額은 30%선에 머물고 있다.

1992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3개의 주요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 ① 새로운 향후 25년간의 고용주-근로자 각출료표 도입
- ② 급여의 자녀혜택 증가
- ③ 연금수급 신청의 지체로 인한 급여혜택 지급의 不可項目 폐지

캐나다연금제도와 퀘벡연금제도는 거주지에 따라 두 개의 다른 제도로 제정되었으나 내용상으로는 거의 같다. 규모는 거주주민의 수에 따라 캐나다 연금제도가 퀘벡연금제도의 3배 정도이다.

가입대상자는 18세부터 70세까지의 모든 所得者(자영업자 포함)이며 가입은 義務的이다. 단, 연간 일정기본소득 이하의 소득자, CPP법에 따른 퇴직 및 장해연금 수급자와 일정한 종교단체는 예외에 포함된다. 연금에 대한 각출은 最低所得(the year's basic exemption : YBE)과 最大所得(the year's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 YMPE)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YBE는 대체로 YMPE의 10% 수준이다. 1995년 기준 YMPE는 3만 4,900캐나다달러이며 YBE는 3,400캐나다달러이다(<表 IV-7> 참조). 해당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表 IV-7> 캐나다·퀘벡年金制度

	최고급여수준 (1995년 지급개시 기준)		수급자수 (1995년 3월)		지급액 (1995년 3월)	
	캐나다연금 (캐나다 달러)	퀘벡연금 (캐나다 달러)	캐나다연금 (명)	퀘벡연금 (명)	캐나다연금 (백만캐 나다달러)	퀘벡연금 (백만캐 나다달러)
퇴직연금(65세 이상)	713.19	713.19	2,230,722	719,666	854.7	248.0
장해연금	854.74	853.15	296,623	45,148	214.1	35.5
유족연금(65세 미만)	392.24		216,683	82,347	62.9	42.7
(65세 이상)	427.91	427.91	511,779	174,566	112.1	37.2
소 계			728,462	256,913	175.0	79.9
장해자 자녀급여	161.27	50.95	105,575	9,080	21.4	0.7
고아급여	161.27	50.95	93,507	31,093	16.8	1.8
사망급여(일시불)	3,490.00	3,490.00	8,643	3,398	21.5	7.8
합 계			3,463,532	1,065,298	1,303.5	373.7

資料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Social Security Statistics*, 1995.

① 퇴직급여 : $1/2(\text{지난 3년간 평균 YMPE}) \times 0.25$

② 장애급여 : (퇴직급여 $\times 0.75$) + 일정액

일정액은 319.85캐나다달러(1995년 기준)

③ 유족연금급여 : ㉠ 65세 미만 : (퇴직급여 $\times 0.375$) + 일정액

일정액은 124.79캐나다달러(1995년 기준)

㉡ 65세 이상 : (퇴직급여 $\times 0.60$)

④ 사망급여 : $YMPE \times 0.10$

각출료는 1966년부터 1986년까지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월보수액의 1.8%씩 3.6%를 각각 부담해 왔으나, 1987년부터 1996년까지는 매년 0.2%씩 증액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부담이 각각 0.1%씩 늘고 있다. 1995년 현재 2.7%씩 모두 5.4%를 납부하고 있다. 1994년 이후 5년간의 각출료는 <表 IV-8>과 같다.

<表 IV-8> 캐나다 年金制度의 釐出率

(單位 : %)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1994	2.6	2.6	5.2
1995	2.7	2.7	5.4
1996	2.8	2.8	5.6
1997	2.925	2.925	5.85
1998	3.05	3.05	6.10

資料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Overview: Income Security Programs*, 1994.

財源의 대부분은 雇用主와 勤勞者로부터의 각출로 마련되며 나머지는 CPP기금의 이자소득으로 충당한다. 財政收支를 위해 정부는 매 5년마다 각출금의 수준을 調整하여 잉여금으로 향후 2년간의 지급총액을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CPP의 행정부문은 OAS와 같이 人的資源開發省(HRD)의 所得保障制度局에서 담당하고 있다.

노령보장연금(GASP)과 소득보장보족제도(GIS)는 무각출제도로

서 급부재원은 조세에 의해 마련되기 때문에 각출단계에서 과세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캐나다·퀘벡연금제도는 고용주 각출분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산입되고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 각출분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된다. GIS를 제외한 모든 공적연금 급부는 일반소득으로 모두 과세소득에 산입된다. 연방소득세의 경우 개인소득수준이 일정의 상한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분에 대해 연금급여를 세금으로 還給(claw-back)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5. 프랑스

프랑스의 公的年金制度는 1910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사회보장법전」에 따라 수혜대상자의 직업별로 각기 다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령·장해·유족연금급여를 지급하는 一般社會保障制度和 농업, 광업, 철도업 종사자와 공무원 및 선원, 자영업자를 위한 별도의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각출금에 의해 조달되고 있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이 외에도 노령근로자수당 등의 무각출 노후보장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적연금과 별도로 근로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성립된 補足制度(協約年金)에의 가입이 義務化되어 있어, 실제로 공적연금과 같은 법적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즉, 프랑스에서는 순수한 私的企業年金이라 할 수 있는 제도와 개념은 없으나 통상 구미 각국에서의 퇴직연금제도에 상당하는 제도로써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補足年金(협약연금)」이라고 하는 準公的年金 성격의 독특한 연금제도가 있다.

보족연금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며 완전한 賦課方式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

는 가입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3종류로 나누어진다.

- ①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AGIRC(전국간부직원퇴직기관연합)
- ② 간부직원 이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UNIRS 등의 ARRCO(보
 족퇴직제도연합)
- ③ 기타 특정지역, 농업단체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합

AGIRC와 ARRCO를 비교하면 양 제도의 공통된 기술적인 특징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勞動組合과 經營者團體와의 협의에 따라 설립되며, 이후의 운영 또한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AGIRC은 1947년 5월 14일, 경영자단체인 프랑스 경영자 전국평의회(CNPF)와 노동조합 대표와의 사이에서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족연금제도의 설립을 목적으로 체결된 전국단체 협약이다. ARRCO는 간부직원 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ARRCO의 최대 가맹기관인 전국근로자퇴직연금기금연합회(UNIRS)에서는 가입자격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자로서, 6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연금에 의한 所得代替率은 약 20%로 공적연금과 함께 퇴직전 소득의 약 70%를 제공하고 있다.

가. 加入對象

一般制度는 일반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特別制度는 직업별로 가입대상자가 결정되고 있다. 무직 가정주부와 장애가족을 간호하는 무직자의 경우는 일반제도의 노령연금부문에 대한 任意加入이 가능하다.

나. 財源調達 및 保險料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근로자로부터의 보험금과 고용주의 납입금 및 일반사회기여기금(CSG)의 기금수입의 일부(2.4%)로부터 충당되고 있다. 1995년 현재 프랑스 근로자는 소득의 6.55%(유족배

우자급여의 경우는 추가로 총소득의 0.1%)를 납부하며 고용주는 총급여지불액의 8.2%를 부담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보험료 납부가 적용되는 최대소득의 상한액은 월 1만 2,610프랑(1993년 7월 이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給與의 種類

1) 老齡年金

노령연금의 급여수급 개시연령은 60세로 37.5년 동안의 가입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가입기간이 부족할 경우는 연금급여가 가입부족기간에 따라 감액된다. 단, 障害發生 또는 子女를 養育하는 女性 勤勞者의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1994년 1월부터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가입기간 충족요건이 40년으로 연장된다. 노령연금은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해외로도 송금되고 있다.

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은 1947년 이후 최대소득의 10년 평균치의 50%이며 과거소득은 賃金上昇率에 따라 再評價된다. 노령연금의 최소급여액은 3만 7,562프랑이며 연령 또는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減額支給된다. 감액급여 수준은 완전급여에 가입 분기수를 곱한 다음 이를 150으로 나눈 수치이다. 최소 60분기의 가입을 만족한 경우는 年 1만 6,010프랑이 지급되며 이 외에는 가입기간의 부족분에 대해 비례하여 감액된다. 65세 이후로 연금의 지급을 연기할 경우는 매분기마다 2.5%씩 증액된다. 모든 연금액은 6개월마다 전국의 평균 임금상승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2) 障害年金

장해연금의 급여지급 대상으로는 60세 미만에 완전장해가 발생하거나 소득능력의 3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가 해당되며 12개월 동안의 제도가입 기간 또는 장해발생 이전 최소 800시간의 근로시간을 충족시켜야 한다.

給與算式은 노령연금의 경우와 동일하고 급여는 부양자녀가 2인

미만시 최소 年 1만 6,010프랑이 지급되며 입원시는 減額支給된다. 최대 장해연금 급여액은 年 7만 4,160프랑이며 장해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3) 遺族年金

사망한 가입자가 老齡年金制度의 연금급여 수급이 가능한 가입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이미 연금 수급자인 경우 배우자와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유족연금 수급자가 장해상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55세 배우자에게는 5년간 사망한 가입자 연금의 52%가 지급되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50세부터 지급되고 있다. 또한 유족연금 수급자인 배우자가 장해인 경우는 나이에 제한없이 급여가 지급된다. 配偶者遺族年金의 최소액은 年 1만 6,010프랑이다.

子女遺族年金의 급여수준은 노령연금의 10%로 유족인 배우자가 자녀의 생모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되고 있다. 또한 사망수당의 명목으로 사망 가입자의 90일간의 급여가 최소 1,498프랑에서 최대 3만 7,830프랑까지 지급되고 있다.

라. 關聯稅制

세제혜택의 적격요건은 사회보장제도 및 보족제도에 대한 각출액의 합계가 사회보장각출 상한액¹⁰⁾ 8배의 19%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보족제도 중 퇴직연금 이외의 보험료가 사회보장 각출상한액 8배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다.

10) 프랑스 사회보장각출 상한액의 추이

(단위: 프랑)	
	상 한 액
1988	120,360
1989	125,280
1990	131,040

資料: 생명보험협회, 『해의생명보험 사업조사보고서』, 1993.

세제혜택 요건이 충족된 경우 고용주 각출보험료는 損金算入(근로자의 급여로 간주하지 않음)이 허용되고 있으며 근로자 각출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세제혜택 요건 불충족시는 고용주 각출보험료는 損金算入(초과분은 근로자에게 급여소득으로 과세)하며, 근로자 각출보험료는 초과부분에 대해서 일반급여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금소득은 일반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수취인 지명의 경우 퇴직 전 사망급부는 예외이며, 과세소득액에 대해 개산경비공제, 급여소득공제, 기타특별공제 등과 같은 공제혜택이 있다.

企業年金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공적연금의 세제혜택 요건과 동일)이 충족됐을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僱用主 각출보험료는 損金算入(근로자의 급여로 간주치 않음)되며, 근로자 각출보험료는 소득으로 간주치 않는다. 세제혜택 요건이 불충족될 경우 고용주 각출보험료는 손금산입되나 限度超過分은 勤勞者에게 給與所得으로 課稅한다. 근로자 각출보험료의 경우는 초과부분에 대해서 급여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적립시 年金積立金에 대해서는 非課稅한다.

연금급여는 일반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수취인 지명의 경우로서 퇴직 전 사망급부는 예외이며, 공적연금과 같이 과세소득액에 대해 개산경비공제, 급여소득공제, 기타특별공제와 같은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6. 獨逸

獨逸의 公的年金은 1889년 「질병 및 노령보호법」의 도입을 시초로 하며 1891년에는 「임금근로자를 위한 노령 및 장해연금제도」의 도입으로 노령 및 장해연금제도가 실시되었고 이후 1911년에 「직원연금법」이 통과되어 모든 勤勞者를 위한 公的年金制度가 確立되었다.

1957년의 연금 대개혁에서는 年金制度의 效率性과 安定性 提高를 위해 기존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또한 賃金上昇에 따른 연금급여의 연동제가 채택되었다. 1972년의 연금개정에서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지급개시연령의 彈力化와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한편 무직주부의 임의가입제도 등이 추가로 채택되었다.

1992년 연금개정은 1970년대 이후의 출생률 감소, 급진전되는 노령화로 인한 인구비율의 변화와 사회·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개정의 주요목적은 연금제도의 단순화와 투명성 및 재정 의 건실화를 위하여 구조의 再調整을 통한 公的年金의 連續性과 安定性을 提高하는 데 있다. 연금재정의 지급능력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산투자자에 대한 대상범위를 제한하게 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연금연령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연금급여의 부분지급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독일의 공적연금제도는 가입자의 직업에 따라 일반 육체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자연금보험, 사무직 종사자를 위한 사무직연금보험, 광업근로자를 위한 광산노동자 연금보험과 수공업종사자를 위한 수공업자연금보험 및 무작출에 의한 공적부조 성격의 농업자노령부조제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연금보험규정(the Social Code)은 단일화되어 있다.

가. 財源調達 및 保險料

재원의 대부분은 각출금으로 조달되며 나머지는 연방정부로부터의 財政補助金과 年金基金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으로 충당하고 있다. 근로자의 각출률은 1992년의 경우 보수액의 8.85%이며 1993년은 8.75%, 1994년부터는 9.3%이다¹¹⁾. 고용주 또한 근로자와 동일한

11) 1993년 각출률이 감소한 이유는 실업보험률이 1992년의 6.3%에서 6.5%로 인상한 데 있다.

酬出金を 납부하고 있다. 즉 근로자 1인당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각출금을 합한 금액이며 자영업자와 임의 가입자는 단독으로 이에 상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병가수당 수혜자는 각출금의 2분의 1만 부담하고 있다. 1994년 기준 월보수액이 610마르크(New German State의 경우는 450마르크) 미만인 경우는 고용주가 각출금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연간 급여비용의 약 2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나. 給與의 種類

연금혜택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다.

1) 老齡年金

노령연금의 연금 수급개시연도는 65세 이상으로 5년 이상의 가입기간 충족시를 원칙으로 하나 63세의 경우도 35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만족하는 경우는 연금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彈力的으로 運營되고 있다. 이 같은 조기수급자의 경우는 월급여의 0.3%씩 연간 급여의 3.6%가 감액되며 65세 미만의 퇴직자는 월 530마르크 미만의 소득자만이 완전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반면 연금 수급개시연도를 65세에서 67세로 3년 연기할 경우에는 월급여의 0.5%씩 연간 6%가 증액된다. 2001년부터는 여자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도도 65세로 연장된다.

部分給與는 부분퇴직자에게 적용되며 급여의 액수는 급여신청액 수과 수급신청 1년전 소득 또는 납부금의 최소수준 등에 따라 완전급여의 3분의 2, 2분의 1, 3분의 1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된다. 노령연금의 급여는 국가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한해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노령연금의 급여산정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결정된다.

$$\text{급여액} = 1.5 \times \text{근로자의 평가임금} \times \text{가입연수}$$

評價賃金(assessed wages)은 가입기간 동안의 근로자 소득이 전국의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최근의 기초산정기준수치를 곱한 것이며 최근의 기초산정기준은 매년 전년도 of 전국 평균임금에 따라 변동한다.

2) 障害年金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으로는 일반장애자 또는 근로장애자로서 所得能力을 50% 이상 喪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급조건으로는 총 60개월의 가입기간과 최근 5년 동안 36개월간의 납입기간을 두고 있다.

一般障害의 경우는 노령연금과 같이 근로자의 평가임금에 가입연수를 곱한 액수의 1.5%가 지급되나 勤勞障害의 경우는 1.5% 대신 1%가 적용된다.

3) 遺族年金

遺族年金에는 미망인 연금(widow's or widower's pensions), 고아 연금(orphan's pensions)과 교육연금(education pensions) 등이 있으며 적격요건 충족시 연금수급권이 부여되고 있다. 즉, 연금납부자가 최소 5년간의 연금납부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연금지급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유족연금은 처음 3개월까지 사망한 가입자의 일반장애연금의 100%를 지급하고 3개월 이후부터는 일반장애연금의 60%를 가입자의 배우자가 45세 이상 또는 자녀 양육시에만 지급하며 이 외에는 25%만 지급하고 있다.

고아연금은 一般障害年金의 10%에 상당하는 급부금이 지급되며 양부모가 없는 완전고아의 경우는 20%를 지급한다.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고아에게도 實習期間(apprentice period)에는 연간소득이 1천마르크 미만인 경우는 유족연금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사망급여수당은 가입자 사망시에 2,100마르크, 가족 사망시에는 1,500마르크가 각각 일시불로 지급된다.

다. 關聯稅制

고용주 각출보험료의 경우 전액 손금산입되며, 근로자 각출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한다. 연금급부 가운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금급부 중 이자부분 점유율 계산은 수급개시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0마르크는 필요경비로 간주하여 이자분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表 IV-9> 獨逸의 年金 受給開始年齡別 利子所得課稅 比率
(單位: %)

수급개시연령	이자부분 점유율
50세	41
55세	35
60세	29
65세	24
70세	19
75세	14
80세	10

資料: VDR, *All About Pension: The German Statutory Pension Insurance at a Glance*, 1994.

7. 스웨덴

1913년에 전국적으로 강제적인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연금혜택은 基礎年金 및 補足年金과 部分年金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사회보험청(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에서 담당한다.

가. 加入對象

基礎年金의 가입대상으로는 국내거주자 또는 국내 근로자가 포함

된다. 소득과 관련된 補足年金은 연간소득이 기초액(base amount) 이상의 모든 勤勞者와 自營業者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93년 현재 기초소득액은 3만 4천크로나이다(1993년부터는 기초액에서 2%씩 감액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급여가 산정되고 있다).

나. 財源調達

基礎年金基金은 社會保障稅(1992년 기준 7.45%)와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되며 補足年金基金은 고용주 및 자영업자로부터의 각출금,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된다. 기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데 그 금액은 대략 최저생계비의 2분의 1로 노령연금은 기초액의 96%로 정해진다. 1993년부터 기초액에서 2% 감액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급여가 지불되고 있다. 즉 노령연금의 실질가치가 일률적으로 2% 감해진 것이다.

다. 給與의 種類

1) 基礎年金

基礎年金은 스웨덴에 거주하는 勤勞者와 非勤勞者에게 모두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거주 스웨덴인과 국내거주 외국인도 受給權을 가질 수 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이 포함되며 이에 더하여 부가연금과 주거수당 등이 추가 지급될 수 있다.

기초연금의 노령연금액은 독신자의 경우 기초액의 96%, 부부의 경우 1인당 78.5%이다. 遺族年金에는 조정연금과 미망인연금, 아동연금 등이 있으며, 扶助年金은 기초연금수령자 가운데 보족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액수가 매우 작은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노령연금수급자에 대한 부가연금액은 기초액의 54%이다. 주거수당은

자치시·구에 따라 그 액수가 다르며 노령연금, 부가연금, 주거수당 등을 합하였을 때 그 수준은 기초액의 200% 정도이다.

<表 IV-10> 스웨덴 基礎年金의 收入 및 支出推移

(單位：百萬SEK, %)

	수		지출	각출료율
	사회보장세 각출	중앙정부 보조금		
1985	32,953	11,497	44,450	9.45
1986	38,482	9,062	47,544	9.45
1987	41,761	7,883	49,644	9.45
1988	44,750	7,993	52,743	9.45
1989	50,015	6,918	56,933	9.45
1990	45,963	15,019	60,982	7.45
1991	47,975	18,830	66,805	7.45
1992	47,707	22,064	69,771	7.45

資料：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of Sweden, *Social Insurance Statistics—Facts*, 1993.

2) 補足年金

보족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기초액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text{노령연금액} = \text{평균연금점수}(\text{연금점수가 가장 높은 15년간의 점수}) \times \text{기초액} \times 60\%$$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연수는 3년이고 완전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년 동안 가입하여야 하며, 30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부족기간 1년에 대하여 30분의 1씩 감액한다. 199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는 157만명에 달하고 보족연금 수급자수는 122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3) 其他年金

기타연금으로는 部分年金과 賃金保障保險 등이 있으며 部分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5세 이전에 부분적으로 퇴직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며 이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주당 최소 17시간에서 최대 35시간의 노동을 해야 한다.

<表 IV-11> 스웨덴 補足年金의 收入·支出 및 基金狀態

(單位: 百萬SEK, %)

	수 입		지 출		연말기금	기금률	각출료율
	각 출	이자수입	보족연금	관리비			
1985	35,172	28,535	42,116	336	266,611	6.3	10.0
1986	40,193	34,675	48,418	375	292,686	6.0	10.0
1987	45,030	36,648	53,801	399	320,064	5.9	10.2
1988	50,008	41,014	60,558	512	350,016	5.7	10.6
1989	59,864	44,248	69,178	540	384,410	5.5	11.0
1990	78,927	46,423	77,406	582	431,772	5.5	13.0
1991	83,145	54,780	87,861	702	480,734	5.4	13.0
1992	83,796	54,211	96,381	666	498,775	5.1	13.0

資料: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of Sweden, *Social Insurance Statistics—Facts*, 1993,

<表 IV-12> 스웨덴 基礎年金 및 補足年金의 老齡年金 受給者數와 支給額

	지급자수(천명)		1인당 평균지급액(SEK)		연간총지급액(백만SEK)	
	기 초	보 족	기 초	보 족	기 초	보 족
1985	1,480	994	19,104	30,472	27,965	28,840
1986	1,503	1,307	20,363	33,792	30,320	33,550
1987	1,518	1,071	21,391	36,654	32,020	37,550
1988	1,532	1,104	22,501	39,722	34,210	42,320
1989	1,544	1,136	24,299	44,111	37,225	48,390
1990	1,554	1,166	25,836	48,172	39,890	54,270
1991	1,562	1,193	27,991	53,533	43,400	61,840
1992	1,569	1,220	29,264	57,327	45,500	67,760

資料: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of Sweden, *Social Insurance Statistics—Facts*, 1993,

8. 濠洲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대륙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대부분이 빈곤계층에 속하여 연금제도가 일찍부터 도입되었다. 호주연방성립(1901년) 후 1908년에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제도가 제정되어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이 1909년과 1910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이외에도 未亡人年金(1942년), 失業保險(1945년), 疾病保險(1945년) 등 다수의 제도가 입법화되었다. 1970년대 초반에는 대대적인 사회보장개혁이 이루어지는 등 연금관련제도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가. 財源調達

濠洲의 公的年金制度는 무각출의 社會保險制度和 자산조사에 따른 社會扶助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급여의 지출과 관련된 비용은 정부의 일반재정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 연금급여의 수급자는 연금청구일 현재 호주국민이거나 영주권을 가진 자로 평소 거주지가 호주인 자이어야 한다. 공적연금과 관련된 모든 행정 및 정보와 기타 서비스는 호주의 Department's Network of Regional and Area Offices를 통해 이루어진다.

1994년 6월 30일 현재 연금수급자 수는 1993년에 비해 5.05%(7만 6,627명)가 증가한 159만 2,309명이며 노령연금 수급자의 30% 이상이 부분급여를 지급받는다. 연금급여 지출총액은 1992~1993년 103억 2,400만호주달러에서 1993~1994년 114억 2,400만호주달러로 10.7% 증가했다. 이와 같은 급여지출 총액의 증가는 노령연금 수혜인구 증가 외에 이자율 감소로 인한 기타소득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給與의 種類

1) 老齡年金

호주국민 및 장기거주 노령자에게 일정수준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급여 신청시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요건으로는 계속적인 국내 영주기간이 10년 또는 총영주기간 10년 초과시는 국내에서 계속 5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자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국 전에 연금급여가 개시된 수급자에게는 해외로도 감액된 급여가 송금된다.

2015년부터는 여자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연장된다. 정부는 여자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연장을 통해 여성의 근무연령을 연장하는 한편 여성에 대한 제반 年金惠澤의 폭을 擴大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OECD 국가들의 방침이기도 하며 여성의 퇴직시기가 연장되어 연금지급에 대한 비용절감의 효과도 동반하게 된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에게도 배우자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在鄉軍人省으로부터 군인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급하지 못한다. 노령연금의 급여액은 未婚인 경우 주 156.05호주달러가 지급되며 既婚夫婦에게는 주 255.30호주달러가 지불된다.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주 평균급여의 2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금급여의 실제가치는 CPI(소비자물가)의 움직임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에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연금급여율은 미혼·기혼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며 賃借補助(rent assistance)와 僻地手當(remote area allowance), 調製手當(pharmaceutical allowance), 通話手當(telephone allowance)이 있다.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는 현금 이외에도 부가적인 편의 및 혜택 그리고 기타 상품과 일정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임차보조는 주당 42.00호

주달러까지 부양자녀 수와 임차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부양자녀 급여는 가족수당에 포함되고 있다. 벽지수당은 미혼인 경우에는 주당 7.00호주달러, 기혼부부에게는 12.00호주달러가 지급되고 있으며 각 자녀당 3.50호주달러가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개인의 연금의 소득 중 연금급여의 혜택과 관련하여 自由所得範圍(free area)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7월에 자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금수급자가 연금의 소득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연금외 소득이 독신자의 경우 매주 45달러까지, 부부는 78달러 한도 내에서 연금급여가 감액되지 않으며 한도초과시는 연금외 소득 매1달러당 연금급여혜택이 50센트씩 감액된다. 단 부양자녀 한 명당 한도액은 주당 12달러씩 추가적으로 상향조정된다.

2) 配偶者年金

配偶者年金은 다른 연금수급권이 없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부인에게 生計補助를 위해 지급된다. 배우자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혼부부이고 남편이 노령연금 수급자이며 본인의 연금수급권이 없어야 한다. 질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남편과 별거를 하면 배우자연금의 지급이 중지된다. 배우자연금의 수급권자는 호주에 거주하는 국내거주자라야 한다. 1991년 11월 12일부터 배우자연금은 본인과 그 배우자의 연령이 21세 미만이며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는 지급이 중단되고 있다. 이는 젊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영구히 떠나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1995년 7월 1일부터 배우자연금의 새로운 수혜대상자는 없으며 기존의 배우자연금 수급자에게 지불되던 연금만이 계속 지급된다.

配偶者年金 수급자가 1993년의 3만 2,671명에서 1994년에는 3만 5,981명으로 10.1% 증가하였는데 노령연금자 수의 증가와 비례하고 있다. 1992~1993년 지급액이 2억 2,240만호주달러이고 1993~1994년에는 2억 5,960만호주달러로 16.7% 증가하였다. 이는 수급자 수

의 증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노령연금 지급액의 증가를 뜻한다. 배우자연금 수급자 수는 노령연금 수급자 수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자연금 급여는 기혼여성 본인의 노령연금 급여율과 동등한 기준에서 지급되어 왔으나 199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대부분 새로운 대상자들에게 부모수당(부양자녀가 없을 경우) 또는 자녀수당(1995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로 최근 근로경험이 없는 자에 한해)으로 배우자수당을 대체하여 지급된다. 나머지에 해당하는 소수의 새로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障害補助年金, 求職者手當 또는 雇傭을 통해 배우자연금을 대체하게 된다.

3) 障害年金

장해연금의 수급 대상자는 남자 16~65세, 여자 16~60세로 장해 발생시 국내에 거주한 경우는 최소 거주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장해연금 신청시는 국내거주를 필수로 하고 있다. 장해연금의 지급도 노령연금의 경우와 같이 資産調査에 의해 결정된다. 장해연금의 급여수준은 노령연금과 동일하다.

4) 遺族年金

사망자의 배우자가 혼자 자녀를 부양할 경우는 홀어머니연금이 지급되며 사망한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시에도 자녀를 부양할 경우에는 유족연금급여의 혜택이 주어진다. 遺族年金의 경우는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 영주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유족연금의 급여액은 미혼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급여수준과 동일하다. 미망인 연금은 부양자녀가 없어도 1987년 7월 이후 50세일 경우는 급여혜택이 부여되며 이 외에도 연금수급자 사망후 자산조사에 의한 장례식 수당이 14주 동안 지급된다. 유족연금의 경우도 해외로 송금이 減額支給된다.

다. 關聯稅制

공적연금급부는 기본적으로 소득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연금소득

과세에 대한 세금의 特別稅額還拂(rebate)은 호주인 배상금과 사회보장연금(예를 들면, 노령연금 수령자와 서비스연금 수령자 그리고 배상금 수령자)에 대해 과세되는 과세 대상자에게 유용하며, 1993~1994년의 연금수령자의 경우는 세금환불의 적용대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부부 연금수령자
- ② 배우자가 질병으로 생계를 꾸리지 못하여 질병연금을 받는 경우
- ③ 독신 연금수령자

1992~1993년 연금급부금에 대한 세액환불 수준은 독신자의 경우 972달러, 기혼자는 654달러, 그리고 질병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연금수령자일 경우는 920달러로 정하고 있다. 세금환불은 所得限度(income thresholds)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매1달러당 12.5센트씩 감액된다. 1992~1993년의 연금환불 수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기혼부부연금은 과세 없이 연금에 대해 추가로 주당 76호주달러를 받는다.
- ② 독신연금 수령자는 과세 없이 연금에 대해 추가로 주당 43호주달러를 받는다.

연금수령자의 세금에 대한 환불은 정착수당, 구직수당, 질병수당, 특별급부와 재향군인 자녀교육제도하에서 지불되는 수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社會保障制度는 1898년 노령연금을 시초로 하여 1911년에 미망인연금과 1924년에 시각장애자연금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1936년에는 장애연금법이 制定·施行되었다. 현행 國民年金制度(national superannuation)는 1990년에 改正되었다. 뉴질랜드의 사회보

장제도는 모든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부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 공무원 및 광부를 위한 특별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가. 財源調達

財源은 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액 지원되며 정부는 일반조세 수입으로 병가수당, 산모수당, 실업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불한다.

나. 給與의 種類

1) 老齡年金

노령연금 수급자는 뉴질랜드 거주자로 20세 이후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50세 이후에 5년 이상 계속 國內에 居住해야 한다. 노령연금의 현재 수급개시연령은 62세이나 2001년부터는 65세로 연장된다. 노령연금은 자산조사 또는 퇴직여부에 상관없이 급여가 지급된다. 노령연금급여에 적용되는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老齡年金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독신자는 주당 234.14뉴질랜드 달러, 부부는 348.16뉴질랜드달러씩 급부된다(1995년 현재). 연금급부상 부적격(unqualified) 배우자를 가진 기혼연금수령자는 타소득수준에 대한 자산조사 없이 부부급여의 2분의 1을 지급받으며 자산조사 후 기타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夫婦給與 전액을 급부받게 된다. 연금급여소득은 일반소득으로 과세된다. 資產調査를 필요로 하는 기타 급여혜택의 수급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자산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빈도조사에 따른 사회부조로는 거주수당과 장해수당 및 특별빈민수당 등이 있다.

2) 障害年金

年金給與 수준이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된다(시각장애자는 제외). 장애연금의 수급자격은 完全障害者 또는 勤勞能力을 상실한 자로 10년 동안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1995년 현재 최대 급부수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독신자는 주당 168.14뉴질랜드달러 이하(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210.19뉴질랜드달러)
- ② 기혼부부는 주당 280.58뉴질랜드달러 이하
- ③ 18세 미만 수급자는 주당 136.23뉴질랜드달러 이하

시각장애자 외의 독신장애자의 경우 연간 2,600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급부가 감액된다. 단,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상한액이 3,120뉴질랜드달러로 증가하며 부양자녀에 대해서는 追加給與가 급부된다. 이 외에도 기타 빈도조사에 따른 주거수당, 집수리비용의 가불, 직업트레이닝 관련 성과수당, 취업수당, 장애수당 및 특별빈민수당 등이 마련되어 있다.

3) 遺族年金

연금수급 대상에는 사망자의 배우자와 고아가 포함되며 최근 3~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순지불액은 140.29뉴질랜드달러까지인데 연간소득이 2,600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할 경우는 급부가 감액된다. 단,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상한액이 3,120뉴질랜드달러이다(자산조사가 적용됨). 18세 미만으로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고아(full orphan)일 경우는 자산조사가 제외되며 주당 84.17뉴질랜드달러까지 지불된다.

사망한 노령연금 수령자와 장애연금 수령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4주 동안의 수당을 일괄지불한다. 자산조사에 의한 장례비용은 1천뉴질랜드달러까지 일괄지불한다. 또한 기타 빈도조사에 따른 공적부조가 제공되고 있다.

다. 關聯稅制

기본적으로 소득세로 공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年金所得은 일반소득으로 과세된다. 1964년 사회보장법하에서는 뉴질랜드 퇴직연금과 자산조사대상 급부(income-tested benefits)를 제외한 연금급여소득은 稅額控除된다.

공제되지 않는 자산조사 대상급부는 개인급부, 소년소녀가장수당(independent youth benefit), 구직수당, 질병수당, 직업훈련수당, 실업수당, 미망인연금과 긴급수당을 말한다.

자산조사와 무관한 補助金으로는 장례와 관련한 사망후 일괄지불금(lump sum payment of death), 숙박보조금, 임차보호수당과 장애수당 등이 포함되며 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V. 主要國의 公的年金制度 國際比較

前章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 주요 선진국의 公的年金制度의 導入時期는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 독일과 뉴질랜드의 경우는 공적연금제도의 도입시기가 1800년대말로 거슬러 올라가며, 영국, 프랑스, 스웨덴과 호주는 1910년경에 公的年金制度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캐나다는 1927년에, 미국은 대공황 이후인 1935년에 각각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戰後인 1941년에 勤勞者年金保險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1973년에 國民福祉年金法이 제정되어 老後所得保障을 위한 국민연금의 초석이 마련되었으나 제도의 시행은 1988년부터 비로소 이루어졌다.

本章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의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老齡化에 따른 公的年金의 危機를 주요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表 V-1>에서는 主要國의 公的年金制度를 내용별로 정리하였다.

1. 財源調達方式

공적연금제도의 재원조달 방식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같이 寄與原則에 따른 保險料 收入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積立方式과 租稅(目的稅)의 성격을 띤 社會保障稅의 收入으로 연금급여 지출을 충당하는 賦課方式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재원조달에 있어서 미국, 일본 및 스웨덴에서는 公的年金基金의 積立率(funding ratio), 즉 給與支出의 現在價値에 대한 연금기금의 造成率이 100% 미만인 部分積立方式으로 운영하는 반면 영국, 캐

나다, 프랑스, 독일과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는 賦課方式으로 운영하고 있다(<表 V-1> 참조).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年金支출을 위해 따로 근로자 또는 고용주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정부의 一般歲入으로부터 연금급여 및 관련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제도의 도입 초기(1935년)에 적립방식을 채택하였으나 1939년부터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초기의 年金受給世代에게 보다 많은 급여혜택의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급자격요건의 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과다한 給與支출에 의한 收給不均衡과 인구의 老齡化로 재정상의 문제가 대두되자 1983년 재정운영 방식을 部分積立方式으로 전환하였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基礎年金을 제공하는 국민연금제도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所得比例年金인 근로자연금제도로 크게 나누어진다. 國民年金은 無醜出制度의 福祉年金으로 시작되었으나 가입 대상자의 확대와 더불어 基礎年金을 제공하는 社會保險으로 발전하였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일반국민으로부터의 보험료와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및 勤勞者年金制度로부터의 기초부문에 대한 각출료 이전 등으로 조달되고 있다.

캐나다의 基礎年金인 老齡保障制度(OAS)는 無醜出年金으로 일반 조세수입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며, 所得比例年金인 캐나다·퀘벡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의 각출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의 공적연금제도는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一般社會保障制度 이외에 직업별로 구분되어 있는 다양한 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공적연금제도의 재원은 근로자와 고용주로부터의 醜出金收入으로 충당되며 정부의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단,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無醜出 老後保障制度로서 老齡勤勞者手當이 정부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 이 외에도 근로자의 가입이 의무화된 準公的年金의 성격을 지닌 補足協約年金이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운영 방식은 1957년에 財政의 效率性

과 安定性 提高를 위해 기존의 積立方式에서 賦課方式으로 전환되었다. 독일의 공적연금제도는 가입자의 직업에 따라 세분되어 있으나 年金保險規程은 單一化되어 있다. 公的年金의 財源은 대부분 각 출금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연방정부로부터의 지원(연간 급여비용의 약 20%)과 연금기금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스웨덴 공적연금제도의 基礎年金部門의 재원은 社會保障稅와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조달되며 補足年金部門은 고용주와 자영업자로부터의 각출금과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된다.

<表 V-1> 主要國의 公的年金制度

(單位: 年, %)

	재정운영 방식	완전노령 연금수혜 납입기간	연금급여의 평가기초소득	최대 임금 대체율	연금급여의 연동여부
한 국	적립	20	최종소득	35	물가
미 국	부분적립	35	취업기간의 소득	41	물가
일 본	부분적립	40	취업기간의 소득	30	순임금
독 일	부과방식	40	취업기간의 소득	60	순임금
프랑스 ¹⁾	부과방식	38	12년간의 최고소득	50	물가 및 총임금
영 국	부과방식	50	취업기간의 소득	20	물가
캐나다 ²⁾	부과방식	40	취업기간의 소득	25	물가
스웨덴 ³⁾	부분적립	30	15년간의 최고소득	60	물가

註: 1) 기초연금제도는 물가와 연동되나, 소득비례연금제도는 총임금에 따라 연동됨.

2) 소득비례연금제도만 해당됨.

3) 급여증액계수는 납입기간에 반비례함.

資料: 문형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전실화를 위한 구조개선방안』,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1995.

Sheetal Chand, and Albert Jaeger, "Aging Populations and Public Pension Schemes," Washington, D.C.: IMF, Dec. 1996.

Paul Van den Noord and Richard Herd, "Pension Liabilities in the Seven Major Economie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142, Paris: OECD, 1993.

2. 加入對象者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公的年金制度인 國民年金制度의 강제 가입 대상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18~59세의 一般國民들이며 임의 가입대상자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와 60~64세의 농어민이 포함된다. 1995년 7월부터 60세 미만의 농어민과 지방 자영업자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가입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1998년부터는 도시자영업자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 외에도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각각 가입대상으로 하는 特殊職業年金制度가 있다.

美國도 社會保障法 制定 당시에는 가입대상자가 민간근로자로 제한되었으나 점차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일정수입(1995년 기준 年所得 630달러) 이상의 모든 근로자와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단, 목사, 외국정부와 국제기관 종사자 및 가사노동자와 주·지방 공무원 등은 임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英國의 公的年金制度인 國民保險制度는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거주자로 규정짓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週所得이 58 파운드 이하의 근로자, 연간소득이 최저수준 이하인 자영업자와 무직자는 가입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가 民間部門의 積立年金基金에 가입한 경우는 年金基金에 납부하는 보험료와 급여 지급수준이 國民保險制度의 所得比例部門을 능가할 때 국민보험제도의 소득비례부문에 대한 적용 제외가 허용된다.

日本의 公的年金制度의 基礎年金部門인 國民年金制度는 20~50세의 전국민(60~64세인 자와 20~64세의 해외거주자는 임의 가입자로 규정짓고 있다)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득비례부문인 勤勞者年金制度는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厚生年金制度和 특수직역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4가지의 共濟組合年金制度로 구성되어 있다. 1942년 일본의 연금제도 도입 당시에는 가입대상 범위를 남자 노동자

로 제한하였으나 이후 자영업자와 기타 근로자들까지 가입대상이 되면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가 성립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基礎年金을 지급하는 老齡保障制度(OAS)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所得比例年金인 캐나다 퀘벡연금제도는 연간 최저소득(3,400캐나다달러) 이상의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단, 임시피용자는 제외).

프랑스의 公的年金制度는 직업별로 일반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一般社會保障制度和 가입대상자의 직업별로 농업, 광업, 철도업 종사자와 공무원 및 선원과 자영업자를 위한 特別制度를 각각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또한 準公的年金의 성격을 지닌 補足協約年金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성립되며 모든 근로자의 가입이 의무화되고 있다. 補足協約年金制度는 가입대상자(간부직원, 간부직원 외 근로자, 기타 특정지역 또는 농업단체직원)에 따라 3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간부직원 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補足協約年金인 全國勤勞者退職聯合基金은 가입자격으로 최소 1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지며 최고 가입연령을 64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가입이 의무화된 基礎年金制度의 적용대상자에는 국내 거주자와 고용에 관한 규정기간을 충족한 국내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所得比例年金인 補足年金制度는 기초소득 이상의 소득을 가진 국내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이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로 국내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補足年金의 適用對象이 된다.

濠洲의 公的年金制度는 호주국민과 외국인 장기거주 노령자에게 일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대상은 호주의 일반국민과 장기거주자 등이다. 뉴질랜드의 國民年金制度 가입대상은 일반국민이며 特別制度로서 공무원과 광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각각 마련되어 있다.

3. 受給資格要件

公的年金給與의 受給資格要件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表 V-2> 참조) 제도별 보험금 납입기간에 따른 연금수급권 또한 국가별로 상이하다(<附表 I-1> 참조). 우리나라 國民年金의 完全老齡給與(노령연금의 100%)에 대한 수급자격요건은 60세 이상으로 제도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남녀간의 수급개시연령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60~64세로 직업이 있는 경우는 가입기간 20년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추계제도에 의해 급여가 감액된다. 또한 60세 이상인 경우로 가입기간이 15~19년인 가입자와 55~59세인 가입자로 가입기간 20년을 넘는 경우도 급여가 감액된다. 이 외에 1988년 1월 1일 현재 45~59세인 가입자로 이후 보험료를 5년간 납입한 경우도 감액된 급여가 지급된다.

美國의 경우는 完全老齡給與의 수급을 위해서는 40분기 이상의 가입기간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完全老齡年金의 수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예외적으로 62세 이상인 자가 完全老齡年金의 수급자격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감액(기본연금액의 20%가 감액)된 노령연금의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또한 65세 이후로 연금수급개시를 연기할 경우는 70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는 연금액이 매년 3%씩 증액되어 기본연금액의 115%를 지급받게 된다. 미국은 1983년의 연금개혁에 의해 2003년부터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상향조정하였는데, 이는 인구의 고령화 전망에 따른 연금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英國의 경우 公的年金은 남녀간의 受給開始年齡에 차이가 있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남자의 경우는 65세, 여자의 경우는 60세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수급을 위한 보험료 납입요건은 1975년 이전에는 최소 50주이며, 1975년 4월부터 1978년 4월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은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週最小保險料의 50배, 1978년 4월 이

후부터는 週最小保險料의 52배로 규정되어 있다. 수급을 위한 보험료 납부기간은 총근로기간의 10분의 9로 남자의 경우는 49년, 여자의 경우는 44년이 이에 해당되며, 교육 또는 실직 등으로 인한 비납부기간도 납부기간으로 인정·포함시켜 주고 있다. 육아 및 장애자와 경로자 간호로 인한 보험료 비납부기간은 완전연금을 위한 납부기간요건에서 그 기간만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연금수급을 위해서는 최소한 완전연금급부를 위한 보험료 납입기간의 25%를 충족해야 하며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日本 國民年金制度의 老齡基礎年金의 급여 수급개시연령은 1994년의 연금 개정시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으나 所得比例部門인 勤勞者年金의 수급개시연령은 60세(여자는 58세)를 유지하고 있다. 完全老齡基礎年金의 수급을 위해서는 25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요구되나 경과적 조치에 의해 가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규정에 의해 特例老齡年金이 지급된다. 또한 가입기간 충족시 65세 이전에도 수급이 가능하나 급여가 감액(60세 수급시는 42%, 64세는 11% 감액됨)되며, 65세 이후로 연금수급을 연기할 경우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초과한 연수에 따라 가산(12%~88%)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勤勞者年金의 경우 60~64세의 재직자의 월임금과 80%의 연금급여의 합이 20만엔을 초과할 때에는 연금급여의 20%가 감액되며 월임금이 34만엔을 초과할 때에는 연금급여의 100%가 전액 감액된다.

캐나다의 기초연금인 老齡保障年金은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고용이나 퇴직과는 상관없이 65세부터 사망시까지 연금급여가 지급된다. 최대연금액인 完全老齡年金 給與의 수급요건은 40년의 국내영주 기간으로 규정짓고 있다. 18세 이후 최소 10년간 국내에 영주한 경우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이 부여되며 국내거주 연수에 따라 급여가 차등지급(매년당 최대 연금액의 40분의 1씩 지급된다)된다. 所得

比例年金인 캐나다·퀘벡연금의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남녀 모두 65세이나 60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며 65세 이전에 연금을 조기수급할 경우는 매달 0.5%씩 급여가 감액된다. 또한 70세까지 연금개시연령의 연장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급여액이 매달 0.5%씩 증액된다.

프랑스 一般老齡年金의 급여지급 개시연령은 60세로 152분기 또는 65세 이상으로 150분기의 납입기간을 충족한 경우에 完全老齡給與가 지급된다. 150분기의 납입기간을 미달할 경우는 미달된 분기당 150분의 1씩 급여가 감액된다. 향후 납입기간이 매년 연장되어 2003년 1월부터 1942년 출생 퇴직자에게는 완전급여의 수급을 위한 160분기의 납입기간이 요구된다. 납입기간이 152분기 미만일 경우는 납입기간 미달분에 대해 비례적으로 감액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급여의 25%를 한도로 급여가 감액된다.

獨逸의 老齡年金에 대한 수급요건은 65세 이상으로 5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원칙으로 하나 63세의 경우도 35년간의 가입기간을 만족시킬 때에는 연금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60세 이상의 경우 최근 18개월 동안의 실업기간과 15년 이상의 가입기간 충족시는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주어진다. 여성의 경우는 40세 이후 10년간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충족하면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부여된다. 부분퇴직에 의한 部分給與制度는 선택에 의해 시행되며 부분연금의 급여액은 급여신청액수와 수급신청 1년 전의 소득 또는 납부금의 최소수준 등에 따라 완전급여의 3분의 2, 2분의 1, 3분의 1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된다.

스웨덴의 基礎年金에 대한 수급요건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자산조사 등이 해당되지 않으며 國內居住 要件을 만족할 경우에 연금급여가 지급된다. 完全給與 受給을 위해서는 16세~64세 동안 40년간 또는 연금 포인트가 부여되는 30년간의 거주기간을 충족시켜야 하며, 거주기간 미달시는 1개월당 40분의 1 또는 30분의 1씩 연

금이 감액지급된다. 스웨덴의 所得比例年金인 補足年金의 老齡年金 給與 受給을 위해서는 3년간의 최소납입기간이 필요하며, 部分年金 給與 受給對象은 60~64세의 파트타임 재직자로 45세 이후 10년간의 소득비례부문의 납입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호주의 公的年金制度의 老齡年金給與 受給對象者는 남자 65세, 여자 60세로 10년간의 계속적인 국내거주 또는 총거주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는 5년간 계속 거주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완전 시각장애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이루어지며, 출국 전에 연금지급이 개시된 수급자에게는 해외로 감액된 급여가 송금된다. 1995년 7월 1일부터 여성의 수급개시연령이 2년마다 6개월씩 연장되어 2015년 7월부터는 65세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남녀의 수급개시연령이 모두 65세로 동일해지게 된다.

1995년 현재 뉴질랜드 公的年金의 老齡年金給與의 수급개시연령은 62세이나 2001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수급자격요건으로는 20세 이후 10년간의 국내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이 중 5년은 50세 이후의 거주기간이어야 한다. 老齡年金은 수급을 위한 자산조사나 퇴직여부에 상관없이 급여가 지급되며, 연금급부상 부적격 배우자를 가진 기혼 수급대상자는 기타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자산조사에 따라 부부급여의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 노령연금급여에 적용되는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초과세가 부과된다.

4. 公的年金 課稅制度

주요국의 공적연금 관련 과세제도는 나라마다 제도와 경제특성상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고용주의 공적연금에 대한 보험료는 損金算入을 통해 全額控除해 주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공적연금에 대한 보험료는 많은 경우 離出時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給付時에 과세하

<表 V-2> 主要國의 人口構造 關聯 統計(1995)

	총인구 ¹⁾	노령인구 비율 ²⁾	부양률 ³⁾	경제활동 인구 ^{4), 5)}	성별법정 연금개시연령		실업률 ^{1), 5)}	연평균 임금 ^{5), 7)}
					남	여		
미 국	263,814	13	53	50	65	65	8,734	25,274
영 국	58,295	16	55	49	65	60	2,919	13,873
일 본	125,506	14	44	53	60 ⁶⁾	58 ⁶⁾	1,660	4,456,272
캐 나 다	28,435	12	49	50	65	65	1,562	31,714
프 랑 스	58,109	16	53	45	60 ⁶⁾	60 ⁶⁾	3,172	101,625
독 일	81,338	16	47	52 ⁶⁾	65	65	1,149	46,514
스 웨 덴	8,822	17	57	49	65	65	356	190,740 ⁶⁾
호 주	18,322	12	50	48	65	60	939	27,703
뉴질랜드	3,407	12	54	49	62	62	157	30,717

註 : 1) 단위 : 1,000명

2) 노령인구 대비 총인구 비율

3) (0~14세와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4) 경제활동인구비율

5) 1993년 기준

6) 1992년 기준

7) 단위 : 각국 화폐

8) 완전연금 급여를 위한 38년간의 가입기간

9) 근로자연금보험, 국민연금의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65세

資料 :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Washington, D.C., 1993.

U.S. Bureau of the Census,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Washington, D.C., 1995.

International Labour Offic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bour Statistics*, Geneva, 1994.

는 방안이 普遍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V-3>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용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손급산입되고 있으나, 근로자의 각출금은 각출시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급부시에는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美國 社會保障制度의 경우도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은 전액 손

금산입되며, 근로자의 각출분은 원천징수에 의해 과세되고 있고 이에 대한 소득공제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근로자에 대한 미국의 공적연금의 課稅原則은 釀出時 과세, 給付時 비과세로 되어 있으나, 1983년의 연금개혁에 의해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계층별로 차등과세되고 있으며 이로부터 징수되는 租稅收入은 社會保障基金으로 전액 적립된다. 미국의 연금과세는 낮은 소득계층의 경우는 잠정소득의 50% 또는 기준금액 초과분의 50% 중 낮은 금액을 과세범위에 포함시키며, 높은 소득계층의 경우는 사회보장급여의 최고 85%까지 포함하고 있다.

英國의 경우도 고용주가 납입한 공적연금에 대한 각출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며 근로자 부담의 각출금에 대한 稅制惠澤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1965년 이전에는 근로자의 각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하였으나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에 대한 세제혜택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釀出時와 給付時 모두 所得稅가 부과되고 있다.

日本의 경우는 勤勞者의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납부금은 社會保險料의 控除對象에 포함되어 全額 공제된다. 그리고 기업이 납부한 보험료도 전액 손금산입된다. 반면 공적연금의 소득은 일반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캐나다의 경우 기초소득연금인 老齡保障年金과 所得保障補足年金은 무각출제도로써 이에 대한 개원은 一般租稅를 통해 마련되므로 각출시에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세제혜택 또는 과세와 관련이 없다. 그러나 연금소득은 소득보장보족연금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所得比例年金인 캐나다·퀘벡 연금제도의 경우는 근로자의 각출분과 고용주의 납부금 모두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세제혜택의 適格要件 충족시 고용주와 근로자의 각출분에 대해 손금산입과 소득공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세

제혜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고용주의 각출보험료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반면 근로자의 각출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의 초과분에 대해서 일반소득으로 과세된다.

獨逸의 경우도 대부분의 국가와 같이 고용주의 각출보험료는 전액 손금산입되고 근로자의 각출분도 소득공제되고 있다. 그러나 연금소득과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연금소득 가운데 해당 利子部分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며 年金 受給開始年齡에 따른 이자부분 占有率이 差等適用된다. 또한 이자부분에서 200마르크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濠洲와 뉴질랜드 모두 연금의 재원이 일반재정에서 조달되므로 각출에 대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세제혜택 또는 과세와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호주의 경우 연금급부시 소득과세가 적용되며 적용대상에 따라 差等的으로 세금을 환불해 주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으며 연간소득이 일정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추가적으로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表 V-3> 公的年金의 課稅制度에 대한 國際比較

	제 도	각 출 시	금 부 시
한 국	국민연금	고용주: 전액 손금산입 종업원: 소득과세 (소득공제 혜택없음)	비과세
미 국	노령·장해· 유족연금 (OASDI)	고용주: 전액 손금산입 종업원: 사회보장세로 과세 (소득공제 혜택없음)	낮은 잠정소득계층과 높은 잠정소득계층에 따라 차등과세
영 국	국민연금	고용주: 전액 손금산입 종업원: 소득과세 (소득공제 혜택없음)	전액과세
일 본	기초연금 후생연금	본인부담: 사회보험료 공제 기업부담: 전액 손금산입	전액과세
캐 나 다	노령보장제도	비과세	과세소득에 산입
	캐나다·퀘벡 연금제도	고용주: 전액 손금산입 종업원: 전액 소득공제	
프 랑 스	일반제도 특별제도 농업제도 자영업제도	· 세제혜택 요건 충족시 고용주: 손금산입 종업원: 소득공제 · 세제혜택 요건 불충족시 고용주: 전액손금산입 종업원: 초과분은 소득과세	과세 단, 수취인지명의 경우 퇴직 전 사망급부는 예외
독 일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고용주: 전액손금산입 종업원: 소득공제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
호 주	노령연금 배우자연금	비과세	연금급부금에 대한 세액환불이 기혼자와 독신자에게 차등으로 지급(초과소득한도액에 1.25센트/1달러)
뉴질랜드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비과세	소득세(연간 소득한도 초과시는 초과분에 대해 25% 추가로 과세)

資料: 한도숙 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과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내부자료, 1997.

한도숙 외, 「외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세제」, 한국조세연구원, 1995. 12.

VI. 最近 世界的인 年金改革에 관한 論議와 示唆點

본장에서는 1995년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Averting the Old Age Crisis*(1995)에서 제시한 老後所得保障과 관련된 일련의 과제와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요약·정리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老後所得保障制度에 대한 역할과 정책과제, 정책대안 및 이에 따른 선택기준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특정국가별 연금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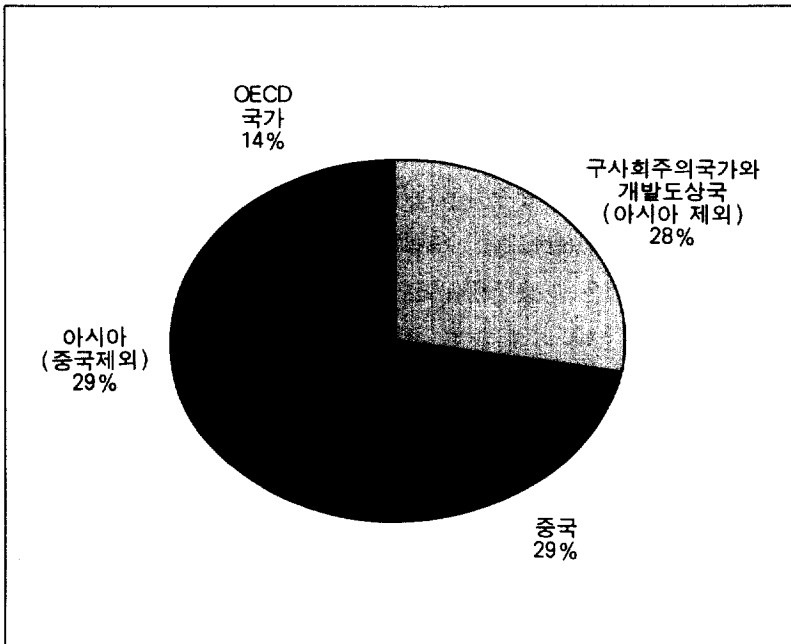
1. 人口의 老齡化

전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노령인구를 위한 老後所得保障制度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世界銀行, IMF, OECD, UN, 國際社會保障學會(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등을 비롯한 국제기관과 각국은 老後所得保障制度에 대한 위기 극복방안을 현안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세계적 인 노령인구 비율의 급증은 기대수명의 연장과 출산감소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에 있으며, 이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과 같은 전통적인 비공식 노후부양체계의 약화로 인해 공적노후보장제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1995년)는 전세계적인 노령화 현상과 더불어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노령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990년 현재 전세계 인구의 약 9%인 5억명 가량이 60세 이상의 노령인구이며, 2030년에는 노령인구가 약 3배 증가한 14억명이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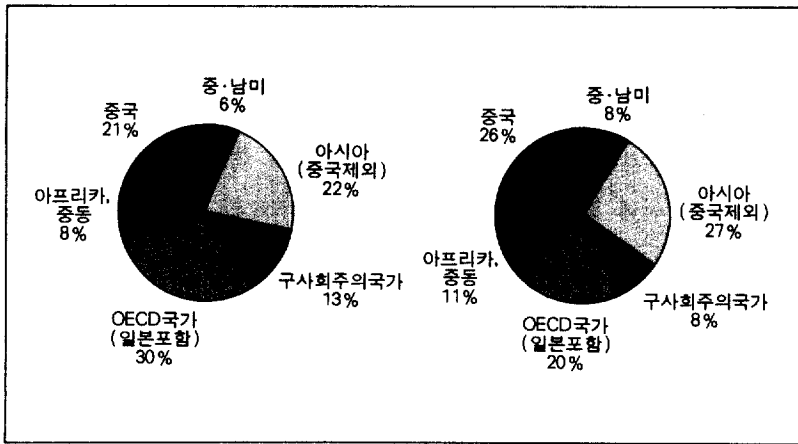
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노령인구 증가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들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반 이상이 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약 4분의 1 정도가 중국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圖 VI-1], [圖 VI-2] 참조). 이같이 향후 노령화의 증가현상이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가속되는 원인으로서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출생률의 감소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인구의 노령화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노령화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이 당면할 재정부담은 현재의 선진국들의 경우보다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圖 VI-1] 1990~2030年代까지 世界老齡人口(60歲 以上)의 增加率 分布



資料 : The World Bank, *Aveting the Old Age Crisi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圖 VI-2] 世界의 地域別 老齡人口(60歲 以上) 分布(1990, 2030)



資料 : The World Bank, *Aveting the Old Age Crisi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2. 全世界的인 老後所得保障 問題

老後所得保障은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문제의 심각성이나 양상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각국의 노령화 정도와 현재의 인구구성 및 老後所得保障制度의 정착단계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개혁방안 또한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노령화를 이미 경험하였으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公的年金制度의 成熟期를 맞이하여 재정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국들의 公的年金制度는 지난 30여년간 노령인구에게 많은 연금급여를 지급해 왔으며, 이는 노령인구의 빈곤을 줄이는 데 큰 몫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老後所得保障制度의 유지를 위해서는 향후 20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인상과 연금급여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지속적인 근로세대에 대한 세금인상과 노

령인구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감소는 현재 年金支出의 財源을 조달하고 퇴직 후 이에 상응하는 연금혜택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현역 근로세대와 이미 연금혜택을 누리고 있는 노령인구간의 세대간 갈등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근로세대의 노동공급과 저축 및 자본형성의 감소로 인한 심각한 경제불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公的年金制度의 범위를 노후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基礎年金으로 국한하고 중·상위 소득층의 노후 소득 수준의 유지에 대한 요구는 기업연금과 개인저축 등의 私的年金制度의 도입으로 대체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대부분 아직 노령화로 인한 노후 소득보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으나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붕괴 및 비공식적인 노후부양체제의 약화와 더불어 기대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감소 등이 인구의 노령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 주어진 과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감안한 公式的인 老後所得保障制度를 확립·발전시키는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과 舊社會主義國家에서는 오래 전에 도입한 公的年金制度의 재원조달 및 운영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제도 존속의 위기에 처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연금의 조기수급과 과다한 급여지급을 위한 높은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보험료에 대한 租稅回避를 야기시키게 되는 등 제도의 적용회피를 조장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남미 노동시장에서 비공식부문의 확대는 이 같은 현상을 잘 반영해 주는 것으로서 노동시장의 왜곡을 가져왔으며 이는 생산성의 감소와 함께 보험료의 인상은 물론 장기적인 저축과 자본축적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약속된 연금급여의 지급을 위한 재원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年金支出 費用을 줄이기 위해 높은 물가인상률을 급여에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年金의 實質價値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칠레는 1980년대 초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제도의 구조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최근 다른 남미국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개혁의 문턱에 와 있다. 또한 몇몇 舊社會主義國家들도 이 같은 제도개혁을 고려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와 같은 제도의 전면적인 구조개혁은 세대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구제도의 기 존세대들을 수용하는 가운데 근로세대들의 근로의욕과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기본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老後所得保障에 대한 政府의 役割

가. 政府介入의 正當性

전세계 노령인구의 절반 이상 가량이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 등에 의한 非公式的인 老後所得保障制度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Palacios(1994)). 경제가 발전하여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과 가족의 핵가족화가 이루어져 이로 인한 非公式的인 老後所得保障制度의 약화와 기대수명 연장에 의한 노령인구의 증가는 더욱 더 公式的인 老後所得保障制度의 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

경제의 여러 부문에 있어서 전통적이고 非公式的인 體制가 붕괴 되면 시장제도라는 公式的인 裝置가 이를 대체하여 왔다. 그러나 老後所得保障 部門에 한해서는 선진국을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도 政府의 介入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政府介入은 민간자본시장과 보험시장의 위험성에 대해 노후소득보장과 소득 재분배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다. 즉, 각 개인에게 전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일임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점이 따르게 된다. 개인은 近視眼的인 眼目에 의해 충분한 노후대비저축을 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을 부양하는 사회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며, 많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경우 資本市場의 未發達과 巨視經濟與件의 不安定 등으로 적절한 개인별 노후저축수

단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道德的 解弛, 保險의 逆選擇과 개인 상호관계로 인해 고령·장해·투자실패 및 인플레이와 경제불황 등의 위험을 배제해 줄 수 있는 노후소득에 대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保險市場失敗를 낳게 된다. 그리고 情報의 非對稱性의 존재로 인해 개인들은 민간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의 장기적 지불능력이나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평가하기 어려워 노후를 위한 적절한 투자결정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근로기간중에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이 같은 다양한 이유를 바탕으로 노후소득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며 政府主導의 公的인 老後社會保障制度가 널리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제도 또한 그 자체의 비효율성과 소득의 재분배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나. 政府의 役割 및 主要 政策代案

1) 政府의 役割

세계은행(1995)에 의하면 전세계 근로자의 약 40%가 政府主導 또는 政府後援의 老後所得保障制度에 가입하고 있으며 노령인구의 약 30%가 이 같은 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있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 정부의 GDP 대비 공공지출의 증가는 1인당 소득증가와 함께 증가해 왔으며 이 같은 공공지출의 증가와 노령인구 비율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50년간의 공적연금에 대한 공공지출 비용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老後所得保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과세나 소득이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民間年金基金의 監督, 強制的인 老後貯蓄의 시행과 年金給與支給의 보장, 年金關聯 稅制惠澤의 제공, 금융기관에 대한 法的裝置의 마련 및 物價安定을 통한 임의 저축의 장려 등 다양하고 광범

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老後所得保障에 대한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는 노령인구에 대한 급여의 증가나 정부개입의 범위에 대한 정책의 제시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老後所得保障制度의 적용방법의 모색에 있다.

政府主導의 公的年金制度는 연금기금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 저축 및 보험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은 대부분 사전에 급여액 또는 보험료를 확정짓는 確定給付型 또는 確定醜出型을 취한다. 財源調達에 있어서는 현 근로인구로부터의 조세에 의존하는 賦課方式과 수급자의 과거 저축으로부터 축적된 기금에 의해 年金支出이 이루어지는 積立方式 등이 있다.

다음의 다섯 가지 연금관련 정책과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관련 정책대안들을 구별하는 기준이며 이들의 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① 제도적용의 강제성의 여부 및 그 적용범위
- ② 소득재분배와 저축의 상대적 중요성 및 이 두 가지 기능의 결합 또는 분리 여부와 분리시 별도의 재정운영 방식의 채택 여부
- ③ 예상 밖의 결과에 대한 위험의 부담 : 연금수급자 또는 사회의 다른 계층
- ④ 부과방식 또는 적립방식에 따른 제도의 재정운영 방식
- ⑤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를 통한 공적연금의 관리운영

2) 財政 및 運營制度의 代案

老後所得保障制度의 재정조달과 운영 및 관리제도면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가능하겠으나 가장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대안은 3층체제의 확립으로 賦課方式에 의한 公的年金制度和 企業年金制度 및 個人의 貯蓄과 個人年金制度를 포함한 사적연금제도를 들 수 있다.

가) 公的賦課方式制度

근로자의 強制加入에 의한 賦課方式은 가장 보편적인 公的年金制度로서 고소득 국가의 대부분과 중소득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시행

되고 있다. 이 같은 公的年金制度의 시행과 재원조달 및 운영 전반이 중앙정부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진다. 이 같은 賦課方式 公的年金制度의 큰 특징은 보험수리적으로 보험료와 연계되지 않는 確定給與를 지급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와 정부의 일반세수입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된다.

나) 企業年金

企業年金制度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연금제도로 고용주가 우수한 인재의 고용 및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마련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대해 세금혜택이 부여되며 재정적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감독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確定給付型과 部分積立型 企業年金이 많이 채택되었으나 최근에는 確定釀出型과 基金積立比率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및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40% 이상이 企業年金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아직도 企業年金의 적용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 個人貯蓄 및 個人年金制度

개인저축 및 개인연금제도는 完全積立方式의 確定釀出型制度로서 각 개인이 근로기간 동안 노후대비를 위한 임의의 저축을 하는 것이다.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으므로 각 개인은 저축에 대한 투자위험의 부담을 갖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같은 노후대비를 위한 임의의 저축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국가에서 이 같은 개인연금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 의해 가입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個人年金制度에는 정부가 직접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와 경쟁방식에 의해 여러 민간회사가 관리 운영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強制貯蓄方式의 個人年金制度를 채택하고 있으며, 칠레를 비롯한 일부 남미 국가에서는 민간운영방식의 強制的인 個人年金制度가 이미 시행 또

는 도입단계에 있다.

3) 年金制度의 選擇基準

이 같은 세 가지 老後所得保障制度의 양상은 정부가 이들 제도를 채택, 장려, 감독하는 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제도에 대한 효과는 제도에 대한 적용기피와 호응도 그리고 다른 저축에 대한 驅逐效果 및 근로공급의 감소 등 각 개인의 반응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개인의 반응 여하에 따라 각 제도가 노동시장과 자본시장 및 정부의 재정수지와 소득재분배에까지 널리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금제도의 선택 및 운영에 대한 평가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세계은행(1995)은 老後所得保障制度가 經濟成長의 手段과 社會安全網(social safety net) 裝置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노령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 ① 저축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근로소득의 일부를 노후소득으로 이전
- ② 왜곡된 세대내(intrageneration) 재분배와 의도하지 않은 세대간(intergeneration) 재분배를 배제하는 가운데 평생 빈곤층의 노령자에 대한 부가적인 소득재분배

③ 특히 노령자들에게 해당되는 위험에 대한 보험 제공

그리고 동시에 老後所得保障制度는 다음과 같이 경제전반에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수의 제도는 이 같은 평가기준을 만족시키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실과 이상간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① 고용감소, 저축감소, 과도한 재정부담, 자본분배의 왜곡과 과도한 운영비용 및 조세회피와 같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비용의 최소화
- ② 경제적·인구통계학적 또는 노후소득보장 자체의 예상된 변화를 고려한 장기적 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제도의 유지

- ③ 제도 및 정책의 투명성 보장을 통해 근로자, 시민, 정책입안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정치적 선택에 의한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적 결과로부터의 보호

4. 多層體系의 老後所得保障制度 確立

老後所得保障制度의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저축, 소득재분배와 보험기능간의 상대적 중요성과 각각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있다. 저축은 개인의 평생소득을 고르게 유지시켜 주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젊고 소득이 높을 때 노후에 감소할 소득을 대비해 소비의 일부를 유보시키게 된다. 소득재분배기능은 한 개인의 평생소득을 다른 개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다. 만약 저소득 근로자로 하여금 노후대비를 위해 충분한 저축을 하게 한다면 이들은 빈곤선 이하로 전락하게 된다. 보험기능은 여러 가지 위험의 가능성으로부터 개인의 노후소득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경기불황 또는 잘못된 투자,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질가치의 하락 및 예상보다 긴 실질수명으로 인한 저축액 부족 또는 公的年金制度의 실패 가능성 등의 위험으로부터 노후소득을 보장해 준다. 그러므로 정부는 老後所得保障制度의 선택에 있어 위의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각각에 대해 알맞는 역할을 제공하여야 한다.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 다양한 재정운영 및 관리방식을 갖춘 多層體系의 老後所得保障制度의 도입을 권장하며 제도별로 저축, 재분배, 보험 등 老後所得保障制度의 3대 기능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 不充分한 一層 單一制度로서의 公的年金制度

많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은 정부의 운영·관리하에서 所得比例 確定給與를 지급하는 賦課方式의 공적연금 재원을 근로소득세로

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이같이 지배적인 하나의 公的年金制度에 위에서 논의한 3가지 기능을 모두 부담지우고 있다. 公的年金制度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소득계층간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며 저축기능을 통해 고임금자의 가입을 촉진하는 가운데 규모와 범위의 경계를 통해 낮은 관리비용으로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구축하였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공적연금의 시행이 세계 제2차대전 이후 노령인구의 빈곤을 크게 감소시키는 데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같은 3가지 기능을 모두 추구하는 公的年金制度는 효율성과 소득재분배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구성이 아직 젊고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노후의 높은 급여를 약속하지만 인구가 노령화되고 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이 같은 높은 급여의 지급은 근로자들에게 인상된 보험료를 요구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고소득 근로자에게 적절한 임금대체율을 보장하면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賦課方式의 確定給付型制度는 보험료에 따라 보험수리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은 높은 보험료를 높은 세금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같은 높은 보험료는 제도의 적용기피를 통한 조세회피를 야기시켜 強制的인 公的年金制度의 취지를 무너뜨리게 된다. 이러한 적용기피 현상은 公的年金制度의 재정수지 악화와 노동력의 비공식부문 유입을 조장하게 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제한된 정세능력과 불완전한 노동시장 및 많은 비공식부문이 존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쉽게 나타난다.

1층의 단일제도로서의 公的年金制度는 부과방식의 재정운영으로 세대별로 집단 전체의 급여와 보험료를 분리하게 되고, 최초 적용세대에게 보험료의 부담없이 높은 소득이전을 제공함으로써 제도 도입 당시 젊은 근로세대는 높은 보험료에 비해 소득이전의 손해를

보게 되는 등 세대간의 불공평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이 같은 賦課方式의 公的年金制度는 자본시장의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 제도 도입 최초의 노령세대는 저축을 초과하는 연금급여를 지급받게 됨으로써 국가소비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저축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의 몇 세대들도 개인의 저축 대신 사회보장세의 납부를 통한 노후소득의 보장을 기대하게 되어 저축의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強制的인 積立方式에 의한 公的年金制度는 자본의 축적을 가능케 하여 資本貧國의 경우는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이 매우 유익할 것이다. 노후대비를 위한 강제적 저축제도는 장기저축을 자발적인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키게 되며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는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촉진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賦課方式의 公的年金으로 인한 이 같은 자본축적 기회의 상실은 미래세대에 대한 소득의 상실과 또 다른 세대간의 소득이전을 의미한다.

인구의 노령화 및 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조기퇴직, 높은 급여율, 정치적 조작을 가능케 한 제도의 설계는 거대한 賦課方式의 公的年金制度를 유지하는 데 예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지출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다른 공적재화를 위한 재원조달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높은 세금으로 인한 또 다른 왜곡현상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이 제도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나. 다른 單一制度의 問題點

다른 단일제도 또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많은 국가, 특히 아프리카의 單一 積立基金制度의 경우는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에만 투자가 허용되어 연금기금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같이 낮은 이자율의 기금이용이 유용함에 따라 정부는 기금을 비생산부문에 투입하게 되며 이들 기금에 대한 정부의 이용은 노동에 대한 숨겨진

과세와도 같다. 또한 정부에 대해 막대한 금융자산의 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연금기금에 대한 민간부문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기금의 증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企業年金이나 個人貯蓄制度 또한 노후보장에 대한 단일제도로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아직까지 이 같은 기업연금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단일제도로 채택한 국가의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企業年金制度는 정부운영의 公的年金과는 달리 자본시장 효과를 동반하지만 원활한 노동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企業年金制度는 사회적 기준과 목적보다는 고용주에 의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제한된 근로경험의 소유자나 잦은 이직자들은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완전적립방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나 보험회사의 지급불이행 시 근로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민간운영의 老後對備 個人貯蓄制度는 자본시장에 유익하고 노동시장에 최소한의 왜곡을 가져다 주며 정치적 또는 근로자로부터의 조작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저소득층의 노후빈곤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며, 연금시장의 부재시에는 투자에 대한 낮은 수익이나 생명의 연장으로부터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다. 各 制度에 대한 機能의 結合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단일제도의 도입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세계은행은 老後所得保障 關聯 貯蓄機能과 再分配機能을 분리하여 재정 및 관리방식이 다른 제도에 각각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조세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첫번째 단계의 公的年金制度和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두번째 단계인 完全積立方式의 企業年金을 병행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그 이상의 노후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세번

제 단계인 個人貯蓄制度에 의존하는 3층체제의 老後所得保障制度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단계의 公的年金制度의 제한된 목적은 노후의 빈곤완화와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험기능의 수행에 있다. 정부의 세금지원을 받는 이 제도는 시행 직후부터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며, 빈곤계층에 대한 소득재분배와 더불어 낮은 투자이익이나 경제불황, 인플레이 및 민간시장 실패 등으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보험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公的年金制度에 보다 명확하고 제한된 목적만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지출을 위한 세금인상으로부터 나타나는 제도에 대한 적용기피 또는 노동배분의 왜곡과 세대내 또는 세대간의 과도한 소득이전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公的年金制度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 ① 資産調査制度(means-tested program): 모든 연령의 빈곤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기준을 노령자의 근로능력의 감소를 감안하여 급여와 연령을 연계시킴.
- ② 強制貯蓄制度(mandatory savings pillar): 최저 연금급여를 보장하는 강제적인 저축제도임.
- ③ 定額給與制度(flat benefit program): 기초적인 또는 고용관련의 정액급여제도로 보다 광범위한 계층에 대한 보험기능을 제공함. 단, 다른 소득보장제도와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적은 규모로 운영되며, 기존의 정부운영하의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부과방식으로 운영함.

老後所得保障의 3층구조 중 두번째 단계로는 強制的인 民間運營의 積立方式制度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전체인구의 모든 계층에 대해 소득유지 및 저축 기능을 담당하며 급여와 비용의 연계를 통해 公的年金制度下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 왜곡을 피할 수 있게 한다. 두번째 단계인 강제적인 民間完全積立制度의 성공은 1층 公的年金制度에 대한 의존도 및 수요를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2층제도는 強制的인 個人貯蓄方式과 企業年金制度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강제적 제도의 경우는 정부의 신중한 감독이 필수적이다.

老後所得保障制度의 세번째 단계에는 任意的인 企業年金이나 個人貯蓄制度가 포함되며 이는 추가적인 노후소득과 保險機能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老後所得保障制度의 3가지 기능 중 所得再分配와 貯蓄機能은 분리시키더라도 保險機能은 세 단계의 각 층에서 공동으로 제공함으로써 위험분산을 통해 보다 나은 보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 強制的 制度의 政策代案別 選擇事項

강제적인 老後所得保障制度에는 다양한 정책대안별 선택사항이 있다. 公的年金의 경우 소득비례급여의 지급과 정액 또는 자산조사 급여의 지급 중에서 어떤 급여방식을 채택하는가는 중요한 정책사안이다. 所得比例給與制度의 경우는 정치적인 지지도가 높기는 하나, 고소득 근로자에게는 높은 급여를 제공함과 동시에 저소득 근로자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높은 세금과 더불어 최초의 급여수급 세대에게 지급되는 과다한 소득이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같은 이유에서 所得比例給與制度는 소득재분배가 제도의 기능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公的年金制度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공적연금의 급여제도의 선택에 대한 나머지 정책대안으로는 定額給與制와 資産調査給與制를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에는 제도의 부담능력과 징수능력 및 소득재분배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定額給與制의 경우는 행정관리가 용이한 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資産調査給與制는 행정관리비용이 낮을 경우 빈곤계층에 대한 소득재분배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이미 강제적인 저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자산조사제도

의 한 변형인 最低年金保障制度(minimum pension guarantee)의 채택이 가장 바람직한 公的年金制度 給與의 유형일 것이다.

強制積立制度의 경우 정부는 운영관리면에서 政府主導의 公的運營方式과 民間運營方式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정부에 의한 대부분의 公共管理基金은 일반적으로 공개시장에서보다 수익성이 낮은 국공채나 준정부기관의 발행채권에 투자됨에 따라 높은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낮은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競爭的으로 운영되는 民間管理基金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기금관리자를 임명하며, 시장수익률보다 낮은 수익을 수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기금이 정부의 수입으로 도용되는 가능성도 낮추게 된다. 또한 이 같은 제도의 장점으로서는 투자위험과 수익성을 고려한 최적의 투자가 가능한 증권과 채권투자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국제적 투자에 의한 위험분산 및 관리전문기술 등으로부터 최대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¹⁾.

이 외에는 強制的인 民間管理基金制度는 새로운 금융제도의 발달과 장기저축의 유동성 제고는 물론 이들 자본을 가장 생산적인 부문에 배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등 경제 전체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強制的 積立方式의 老後所得保障制度가 민간에 의해 운영·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民間管理基金制度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는 個人貯蓄方式 또는 企業年金方式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다. 고용주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企業年金制度는 시장과 정부가 강제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도 임의적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임금으로부터 원천공제가 용이하고 단순한 기록관리

1) 세계은행(1995)의 1980년대 11개국의 공공관리기금과 4개국의 민간관리기금의 연평균투자수익률 비교에 의하면 민간관리기금이 공공관리기금보다 수익성면에서 월등히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및 저렴한 관리비용을 수반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강제 가입 규정 및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 企業年金은 고용주에 의해 가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중·고소득 근로자들에게만 가입을 하도록 하고 逆進的인 세금지출과 기금부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외에도 이직시 급여의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의 보장문제, 자유로운 노동이동의 제한으로 인해 경제구조의 개편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個人貯蓄方式은 가입대상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급여의 합산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왜곡을 수반하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民間積立方式制度로는 企業年金方式보다 선호되어야 할 것이다. 단, 이미 기업연금제도가 정착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강제적인 개인저축제도로의 전환은 불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강제적인 개인저축제도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는 제도의 도입에 앞서 시장 및 감독능력에 대한 평가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즉, 은행제도와 주식 및 자본시장이 연금기금의 요구에 따라 발전할 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제도 도입에 있어 필수조건인 것이다. 또한 정부는 근로자를 투자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투자회사의 재정에 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5. 特定國家別 年金改革에 대한 政策提案

세계각국은 위에서 논의한 多層體制의 老後所得保障制度를 목표로 새로운 체제의 확립 또는 기존체제의 개혁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모든 국가의 궁극적 목적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처해 있는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多層體制의 老後所得保障制度의 확립에 대한 접근방법 및 시기는 상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계은행(1995)에서는 세계각국을 인구구성과 국민소득 및 公的 老後所得保

障制度의 발달수준에 따라 ① 젊은 인구구성의 저소득국가 ②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국가 ③ 광범위한 公的年金制度가 확립된 노령화한 국가 등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며 각 국가별로 적절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절에서는 우리나라의 老後所得保障制度에 대한 개선방향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보다 노령화를 먼저 경험한 국가와 우리나라와 같이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의 정책제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老齡化가 급속히 進行되는 國家

현재 인구구성은 젊으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국가들로서는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출산율의 감소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급속한 노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이 있다. 이들 국가들은 強制的인 積立基金制度의 도입을 서둘러야 하나, 이에 앞서 정부의 監督能力, 銀行制度, 제2의 政府債券市場의 확립과 함께 새로운 적립기금제도의 요구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積立基金制度의 재정 건설도에 대한 강력한 감독 및 규제들을 마련하고 適正保險料率의 결정과 더불어 企業年金 또는 個人貯蓄方式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2層體制의 도입은 시간을 요하므로 정부가 제도적인 능력을 초과하여 추진할 경우 무리가 따르게 된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을 너무 늦추게 되면 중·고소득 근로자들로부터 지배적인 所得比例 公的年金의 도입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된다.

公的年金制度는 所得再分配를 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老後所得의 수준유지 또는 貯蓄의 요구는 民間運營에 의한 積立基金制度를 통해 충족시켜 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후에 제도의 구조조정에 있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는 공적연금의 財源을 勤勞所得稅로부터 適當함으로써 消費稅의 非效率性和 비적용계층에서 적용계층으로의 所得移轉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나, 점차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적용이 일반화되고 정부의 소득세와 소비세에 대한 徵收能力이 강화되면 보다 넓은 稅源으로부터 公的年金制度의 財源을 조달하고 所得再分配 機能의 提高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公的年金制度가 發達한 老齡化한 國家

이들 국가는 이미 노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適用對象이 광범위한 상당한 수준의 公的年金制度에 대한 扶養率의 증가로 향후 30년간 급여의 지급을 위한 지출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분류에는 OECD, 東유럽 몇몇 南美國家들이 포함되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老後所得保障制度에 대한 절박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老後所得保障制度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經濟成長에 방해가 되며 근로자에게 높은 세금과 낮은 수익을 제공하는 高費用의 公的年金에 의존하기보다는 強制的인 多層制度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 같은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전환의 첫번째 단계는 公的年金制度 改革의 단행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① 退職年齡의 상향조정
- ② 早期退職에 대한 보상 및 退職時期의 延長에 따른 불이익 철폐
- ③ 過多한 給與의 하향조정
- ④ 給與構造의 定額化를 통한 貧困減少 機能의 강화
- ⑤ 稅率의 감소와 稅源의 확대

전환의 두번째 단계는 適正保險料의 설정과 監督體制의 확립을 통해 2층제도의 구축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공적인 전환은 다음의 3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① 2층의 強制的 制度에 公的年金制度에 대한 保險料의 일부를 移轉시키는 등 公積연금의 규모를 점차 줄임.
- ② 公積연금급여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은 인상하고 인상분은 2층제도에 배분.
- ③ 완전히 새로운 制度를 도입함에 있어 舊制度하에서 발생한 年金급여에 대한 책임은 모두 지급함. 새로운 制度의 설계를 통해 妥善한 社會保障에 대한 負債費用의 계산과 이를 政治的·經濟的으로 수용할 수 있는 社會保障負債에 대한 資源조달 방안을 모색함.

몇몇 OECD 국가는 위의 첫 2가지의 방안의 채택을 통해 漸進的인 轉換을 꾀하고 있으며 南美의 몇 국가들은 急進的인 세번째 방안을 이미 도입하였다.

6. 政策的 示唆點

위에서 논의된 다층체제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여러 制度의 적절한 結合을 통해 저축과 소득재분배 및 보험기능의 수행을 가능케 하며 단일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최소화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므로 다층체제의 노후소득보장의 도입을 위한 연금개혁의 시기나 접근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는 3층체제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인구의 노령화와 과다한 급여지출로 인해 1층 公積연금 制度의 財政上의 收給不平等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改善하기 위한 다양한 給與支出의 縮小와 保險料 收入의 增大方案이 채택되고 있다. 또한 2층 기업연금에 대한 성공여부는 적절한 보험료의 설정과 민간운영기금에 대한 정부의 監督機能 강화에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경우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한 收給不均衡으로 인한 재정상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제도의 수급불균형은 과도하게 책정된 급여수준과 낮은 보험료를 및 인구구조의 변화가 그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문제는 다양한 政策調合에 의해 완화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대안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제도내에서의 급여관련 지출의 축소와 수입의 증대를 통한 재정의 健全性 유도이며, 둘째는 제도 자체의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제도의 재설계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꾀하는 첫번째의 점진적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第IV章과 第V章에서 언급하였듯이 선진국들은 공적연금 재정의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 조기퇴직에 대한 감액급여 지급, 수급개시연령의 연장에 따른 증액급여의 혜택부여, 재직자 노령연금제도의 실시 및 일정액 이상 소득의 연금수급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 등 수급요건의 강화를 통한 給與支出의 縮小 노력과 더불어 가입적용 대상의 확대 및 보험료율의 인상을 통한 收入增大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의 급여지급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 같은 제도내의 조정을 통해 수급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금급여의 지급이 일단 시작되면 급여의 하향조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또한 年金課稅의 도입문제도 연금급여가 시작되기 이전에 마무리지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미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表V-3> 참조). 이 같은 연금과세제도 도입의 장점으로 는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근로자나 고용주의 제도에 대한 적용기피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되며, 보험료율 인상시 국민들

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급여에 대한 과세로부터의 수입을 연금기금에 적립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건실화 제고에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조치의 시행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은행의 권고와 같은 2층구조의 강제적인 민간운영제도하의 기업연금의 도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제성을 띤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은 자본시장 및 금융제도의 선진화를 전제로 하므로, 정부는 이에 부응하는 환경 조성 및 감독능력의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VII. 國民年金制度 改善方案 시뮬레이션

1. 模型

본 연구에서 사용할 模型은 Auerbach & Kotlikoff(1987)의 모형을 변형시킨 것으로서 I 세대가 공존하는 세대중복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이다. 인생의 각 단계에서 개인은 다음 연도까지 생존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死亡危險(mortality risk)). 예를 들어 한 사람이 i 세와 $i+1$ 세 사이에 생존할 확률은 S_i 로 나타내기로 한다. 유아기에서의 이 사람은 소비자 혹은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단 성년이 되면 이들은 時間配分(勞動供給)과 貯蓄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각 연도에 이들에게는 한 단위의 시간이 주어지며 이는 e_i 단위의 노동투입으로 변환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e_i 는 연령에 따른 人的資本(human capital)의 蓄積狀態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각 개인의 선호는 시간분리적이고 2계 미분가능하며, 강볼록한(time separable, twice continuously differentiable, strictly concave)여가와 소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t 년도에 태어난 각 개인의 평생동안의 기대 효용은 $E_t \sum_{i=0}^{\infty} \beta^i U(C_{i,t+i-1}, l_{i,t+i-1})$ 로 나타낸다. 이때 β 는 할인율을, C 는 소비수준, l 은 여가수준을 나타낸다. 또한 $S^i (= \prod_{j=0}^{i-1} S_j)$ 는 i 살까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될 시장구조는 完全 競爭的인 市場이다. 각 연도에는 勞動市場과 生産物 市場이 열려 노동과 생산물의 가격이 결정된다. 또한 이 경제에는 死亡者財產分割市場(annuity market)이 존재하며, 이 시장에서 사람들은 동세대에 속하는 사람들과 다음과 같

은 내용의 계약을 맺게 된다. 만일 한 세대내의 일부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생존자들이 사망한 자의 재산 또는 부채를 동등하게 나누어 가진다. 이는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본 연구의 초점이 국민연금제도에 의한 세대별 부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설정한 것이다. 위에서 가정한 사망자재산분할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사망자의 재산이 전 세대로 분배될 경우 발생할 세대간의 부의 재분배 효과는 본 연구의 초점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제에 존재하는 기업은 規模不變(constant returns to scale) 生産函數로 표현되는 技術을 이용하여 노동과 자본의 형태를 띤 생산요소를 소비재 및 자본재로 변환시킨다. 본 모형에서는 기술진보의 유형을 勞動添加型(labor-augmenting) 技術進歩로 가정하였다. 구체적인 생산함수의 형태와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가정은 아래에서 행할 것이다¹⁾.

정부의 연금에 대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연금재정을 책임진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금가입자, 고용자의 기여분으로 형성된 기금을 운용하며, 또한 연금지급을 책임진다. 정부가 일정수준의 나이 미만(여기서는 60세 미만)의 연금가입자와 그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年金保險金을 받으며 또한 이들 연금가입자들이 일정수준의 나이(60세)에 도달하면 老齡年金을 지급하기 시작하고 이는 연금가입자의 사망시까지 계속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할 年金給與의 種類는 完全老齡年金, 在職者老齡年金, 그리고 遺族年金에 국한한

1) 본 연구의 기본가정하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특별한 규정 없이 단순히 시간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향상만을 가정할 경우, 생산성 향상의 또 다른 면인 기존의 기술과 지식의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률이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부근에서 정점에 달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55세에 정점에 달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는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다. 연금각출의 고용자 기여분과 법정퇴직금으로부터의 기여금은 고용비용의 형태로 간주하여 근로자에게 모두 전가된다고 가정한다.

정부의 연금재정 운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고용자와 피고용자로부터 거두어들인 보험료로 형성된 기금을 시장이자율과 동일한 수익률을 가진 채권을 구입하여 운영하며²⁾ 또한 연금재정에 적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정부가 시장이자율과 동일한 수익률을 가진 정부 채권을 발행하여 적자분을 충당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연금재정의 부채는 조세수입으로 매기간 그 前期까지 축적된 부채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상환한다³⁾.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행해질 것이다. 이때,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조세의 종류에는 消費稅(consumption tax), 資本所得稅(capital income tax), 勞動所得稅(labor income tax) 및 所得稅(income tax)로 구성된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_{t+1} = D_t(1+r_t) + PB_t - PC_t - T_t \quad (1)$$

이때 D_t : t기의 정부의 부채

PC_t : t기에 고용자와 근로자가 지불한 연금보험금 총액

T_t : t기의 정부의 조세수입

PB_t : t기의 연금지급분

특히 T_t 는 만일 연금재정이 적자로 돌아섬으로써 정부부채가 발생할 경우, 그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거두어들이는 租稅收入이다.

2) 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이 시장이자율과 동일하다는 가정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21세부터 39년간 연금보험료를 지불하고 60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는 가정과 더불어 연금기금의 고갈 시기를 상당기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들 가정에 대한 수정은 차후에 고려할 예정이다.

3) 이 가정은 한국의 공적연금의 한 형태인 군인연금의 경우 연금지급을 위한 재원의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관행에서 착안하였다.

$$PC_t = SST_t \sum_{i=60}^T W_{it}(1-l_{it}), (I_0=21, \bar{I}=59) \quad (2)$$

$$\begin{aligned} T_t &= (\tau_{kt} + \tau_{yt})r_t k_t + (\tau_{lt} + \tau_{yt})w_t N_t + \tau_{ct} C_t \\ (k_t &= \sum_i \mu_{it} a_{it}, N_t = \sum_i \mu_{it} e_i (1-l_{it}) \\ C_t &= \sum_i \mu_{it} C_{it}) \end{aligned} \quad (3)$$

이때 SST_t : 연금 각출률

τ_{kt} : 자본소득세율

τ_{yt} : 소득세율

τ_{lt} : 노동소득세율

τ_{ct} : 소비세율

μ_{it} : t기에 i세 되는 사람의 인구 수

a_{it} : t기에 연령이 i가 되는 세대가 보유하는 자산

C_{it} : t기에 연령이 i가 되는 세대의 소비량

l_{it} : t기에 연령이 i가 되는 세대의 여가소비량

r_t : t기의 이자율

w_t : t기의 임금률

이러한 환경하에서 연령이 i인 세대가 t기에 직면하는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1+\tau_{ct})C_{it} + i_{it} &= a_{it}(r_t - (\tau_{kt} + \tau_{yt})r_t) \\ &\quad + (1-l_{it})e_i w_t (1 - \tau_{lt} - \tau_{yt} - SST_t) + pb_{it} \end{aligned} \quad (4)$$

$$pb_{it} \begin{cases} = SM_{it} \text{ 만일 } i < 60 \\ = \bar{M}_{it} + SM_{it} \text{ 만일 } i \geq 60 \end{cases} \quad (5)$$

식 (5)는 t년도에 연령이 i인 사람의 年金受給額을 의미한다. 각 개인은 연금수급연령 60세 이전에는 遺族年金만 지급받으며 연금수

급연령부터 사망시까지 유족연금과 함께 아래에서 규정될 完全老齡年金 혹은 在職者老齡年金을 지급받게 된다.

$$\bar{M}_{it} = \begin{cases} M_{it} & \text{만일 } l_{it} = 1 \\ M_{it}(0.5 + 0.1(i - \bar{I})) & \text{만일 } l_{it} < 1 \end{cases} \quad (5-1)$$

식 (5-1)은 완전 老齡年金과 在職者 老齡年金에 대한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만일 연금수급연령에 이르러 정기적인 노동소득이 없을 경우 基本年金額을 모두 수령할 수 있으나 정기적인 노동소득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의 일정부분만을 수령할 수 있다는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를 반영한 것이다.

$$M_{it} = \left[\frac{\sum_{i=l_0}^{\bar{I}} \mu_{iret(it)} (1 - l_{iret(it)}) W_{ret(it)} e_i}{\sum_{i=l_0}^{\bar{I}} \mu_{ret(it)}} + 0.75 \frac{\sum_{p=ret(it)-(I-l_0)+1}^{ret(it)} (1 - l_{ip}) W_{pe} e_{ip}}{\bar{I} - l_0} \right] \times 0.2 \times (0.5 \times (\bar{I} - l_0)) \quad (5-2)$$

이때 $i' = p - ret(it) + \bar{I}$ 이며, $ret(it)$ 는 t 년도에 연령 i 인 세대가 은퇴한 연도를 의미한다. 식 (5-2)는 국민연금의 基本年金額의 算定公式를 나타내고 있다. 기본연금액은 크게 <表 III-2>에서도 볼 수 있듯이 均등부분과 所得비례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식 (5-2)의 첫번째 부분은 均등부분을 나타내며 두번째 부분은 所得비례부분을 나타낸다.

$$SM_{it} = rsm_{it} \sum_{i=l_0+1}^{\bar{I}} 0.6 \mu_{it} (1 - s^i) \bar{M}_{it} \quad (5-3)$$

이때 rsm_{it} 는 유족연금 총액 중 t 년도에 연령이 i 인 사람들에게 귀속될 비율을 의미한다. 식 (5-3)은 연금은 遺族年金에 대한 규정을

수식화한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상에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될 연금액의 일정부분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모형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입하는 모든 세대들이 2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가정하였기 때문에 연금액의 60%가 유족들에게 지급되도록 규정하였다⁴⁾.

또한 유족연금의 연령별 소득계층별 귀속에 대한 가정, 즉 rsm_{it} 에 대한 가정은 유족연금의 수급액에 대한 1995년도 자료를 토대로 가정하였다.

$$SST_t \begin{cases} = 0 \text{ 만일 } i > 60 \\ = sst > 0 \text{ 그 외의 경우} \end{cases} \quad (6)$$

$$i_{it} = s_i a_{i+1, t+1} - (1-\delta) a_{it} \quad (7)$$

$$a_{i_0, t} = 0 \quad (8)$$

$$a_{i+1, t} \geq 0 \quad (9)$$

이때 i_{it} 는 t 기의 i 번째 세대의 투자량이며 δ 는 감가상각률이다.

식 (7)은 사망자재산분할시장의 존재가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은 양의 자본을 다음 기에 소유하기 위해, 사망자재산분할시장이 없을 때보다 적은 양의 투자를 하도록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식 (8)은 각 개인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함을 의미하며 식 (9)는 사망시에 부채를 남기지 못함을 의미한다. 만약 소비자의 선호를 一定相對危險回避 效用函數(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utility function)에 내재된 CES 함수(nested CES 함수)로 정의한다면 위의 예산제약에 입각한 각 세대들의 t 기와 $t+1$ 기 사이의 소비와 노동공급

4) 유족연금의 수준은 현행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사망한 연금가입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경우는 연금액의 40%, 15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50% 그리고 20년 이상일 경우 60%로 규정되어 있다 (1995년 개정).

에 대한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은 식들에 의해 요약될 수 있다(부호의 간편성을 위하여 세대를 표시하는 하첨자는 생략하기로 한다).

$$(1+\tau_{\alpha})c_t = [(1+r_t(1-\tau_{kt}-\tau_{yt}))\beta]r [\nu/\nu_{t-1}](1+\tau_{\alpha-1})c_{t-1} \quad (10)$$

$$l_t = [(1+r_t(1-\tau_{kt}-\tau_{yt}))\beta]r [\nu/\nu_{t-1}]^{-\rho} (w^*/w^*_{t-1})^\rho l_{t-1} \quad (11)$$

$$\nu_t = [1+\alpha^\rho(w^*/\tau_{\alpha})^{(1-\rho)}]^{[\rho-\gamma]/(1-\rho)} \quad (12)$$

$$w^*_t = w_{et}(1-\tau_{yt}-\tau_{lt}-sst_t) + \dot{\mu}_t \quad (13)$$

$\dot{\mu}_t$ 는 여가의 소비량이 1보다 작을 경우는 0이며 1일 경우 양의 값을 가진다. 식 (13)은 여가 1단위의 기회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식 (10), 식 (11)과 식 (12)를 종합하면 만일 期間間 代替彈力性(intertemporal substitution elasticity: γ)이 期間內 代替彈力性(intra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ρ)보다 작을 경우에는 세후 실질임금률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량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욱 빨리 증가하게 되고 여가의 경우 더욱 천천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 模型 켈리브레이션

가. 人口 파라미터와 世代別 勞動生産性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경제에 존재하는 각 개인은 최대한 80세까지 생존할 수 있으며, 각 세대는 1년 단위로 나누어진다. 또한 모형에서 각 개인이 21세가 되기까지는 소비자 혹은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가정함에 따라, 해당 세대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이라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될 인구의 연령별·연도별 변화에 대한 예측은 통계청(1991, 1993, 1994a, 1994b, 1996)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는 시점은 1985년으로 잡고 新生兒 수의 경우는 통계

청이 행한 신생아에 대한 2030년까지의 推計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간한 생명표(1985~2030)를 바탕으로 死亡率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연령별·연도별 인구수를 계산하였다. 2030년 이후의 경우는 2030년 수준의 신생아 출산 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인구분포를 추정하였다⁵⁾. 각 世代別 勞動生産性은 노동부가 발행한 「1991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를 바탕으로 Welch(1979)의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치는 $\ln(e_i) = 8.532 + 0.0222i - 0.00031i^2$ 이다(여기서 i 는 근속 연수를 말함).

<表 Ⅶ-1> 우리나라 人口의 將來 展望(1990~2090)

	총 인 구		인 구 구 성 비			부 양 비 (%)		
	(천명)	증가율 ¹⁾	0~14	15~4	65~	계	0~14	65~
1990	42,869	0.87	0.258	0.692	0.050	44.5	37.3	7.2
2000	46,789	0.60	0.211	0.720	0.068	38.8	29.4	9.4
2010	49,683	0.18	0.191	0.715	0.094	39.9	26.8	13.1
2020	50,578	-0.11	0.160	0.715	0.125	39.9	22.4	17.5
2030	50,014	-0.48	0.145	0.667	0.183	49.9	22.4	27.5
2040	47,648	-0.92	0.145	0.627	0.228	59.5	23.1	36.4
2050	43,452	-0.99	0.137	0.619	0.244	61.6	22.2	39.4
2060	39,339	-1.04	0.141	0.621	0.238	60.9	22.7	38.3
2070	35,463	-1.06	0.140	0.614	0.246	62.8	22.8	40.0
2080	31,910	-1.07	0.137	0.618	0.245	61.9	22.2	39.7
2090	28,676	-	0.140	0.618	0.242	61.8	22.7	39.1

註: 1) 해당연도부터 다음 10년간 평균 증가율임.

資料: 통계청(1993).

- 5) 이는 다소 제한적인 가정이나 이 논문에서 행할 시뮬레이션 방법의 성격상 경계가 일정한 균계상태(steady state)로 수렴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정되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2080년과 2010년의 총인구 비율이 통계청(1993)에서 추계한 수치와 거의 같으므로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生産函數

기업의 규모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생산기술은 Cobb-Douglas 생산함수로 표현된다. 이러한 생산함수 체계에서는 資本所得分配率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민계정에 나타난 勞動分配率이 최근 GNP의 약 60%임을 감안하고 또한 고정자본 소모분이 약 GNP의 10%임을 감안하여 자본소득 분배율을 NNP의 약 33%로 가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勞動添加型(labor-augmenting) 技術進步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인 要素生産性 向上率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기본가정하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률을 0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한 이유는 만일 일정 수준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가정할 경우 노년층의 임금을 지나치게 고평가할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술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경제하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은 老年層의 技術이 이미 老化되어 그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년층의 임금은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일정수준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가정할 경우, 각 개인이 인생의 출발기에 노년기의 임금을 수준을 너무 높게 예상하여 최적화 행위를 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로 나타난 경제의 자원배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勞動生産性 向上率을 3%로 가정한 경우를 상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행할 것이다. 노동생산성 향상률을 3%로 잡은 이유는 장기적인 노동생산성 향상률이 이 수준을 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러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평균적인 노동생산성 향상률이 2%를 상회하지 못하며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21세기의 우리 경제에 관한 예측에 대한 연구에서도 2010년대에 이미 노동 및 자본을 포함한 총요소 생산성 향상

률이 3%를 상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

다. 選好 파라미터

각 개인들의 선호체계는 CES 효용함수로 표현된다.

$$\text{즉, } \frac{1}{1-1/\gamma} \left\{ [C^{-1/\rho} + a_i l^{-1/\rho}]^{1-1/\rho} \right\}^{-1/\gamma} \text{ 로 표현된다.}$$

시간에 대한 割引率 β 는 Hurd(1989)에서 따와서 1.011로 가정하였다. 이 경제에는 죽음에 직면할 위험이 있으므로 각 개인이 느끼는 실제적인 할인율은 i 번째 세대일 경우 βS_i 이다. 따라서 이 경우 청년기에는 이 할인율이 매우 낮고 (경우에 따라 βS_i 1보다 큰 경우도 있음) 노년기에는 매우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危險回避係數의 逆數로는 1/5로 정했으며 ρ 의 값은 Auerbach & Kotlikoff(1987)를 따라 0.83을 선택하였다. 消費에 대한 餘暇의 強度를 나타내는 α 의 경우 2.1의 값이 선택되었는데 이 값들을 바탕으로 초기 均衡상태(Initial Steady State) 경제에서 나타난 자본과 국내총생산의 비율이 약 4.53%, 이용 가능한 시간에서 노동공급에 투입한 시간의 비율이 약 31.1%, 그리고 貯蓄率은 NNP의 약 26.4%로 나타났다. 만약 勞動生産性向上率이 陽의 값을 가지는 경우, α 의 값은 연령이 21세인 경우 2.1의 값을 지정하고 기타 연령에 대해서는 均衡成長經路(balanced growth path)와 일관성 있게 값을 조정하였다.

위에서 가정한 계수치들은 엄격한 추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서 행할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에서 이 수치들에 입각한 시물레이션의 결과가 얼마나 계수치에 따

6) 한국개발연구원, 「신경제 장기구상」 참조.

라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라. 政府의 年金 및 租稅政策

앞 장에서도 설명했듯이 정부는 年金財政이 적자가 생겼을 때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조세를 징수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매기에 얼마만큼의 부채를 상환하며 또한 각 세원에 대해 필요한 政府租稅收入(required tax revenue)을 어떠한 비율로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연금재정의 고갈로 인해 정부부채가 발생한 경우 每期 부채의 전부를 상환한다고 가정하며, 租稅徵收의 稅源別 配分은 1996년 국세 예산을 기준으로 소득세, 소비세, 자본소득세, 노동소득세수를 비교하여 그 비율을 정하였다. 소득세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소비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본소득세에는 상속세와 자산재평가세가 포함되었다⁷⁾.

이를 바탕으로 구한 각 세목별 세수비중은 消費稅가 53.2%, 所得稅가 43.1%, 資本所得稅가 3.7%이다. 이렇게 주어진 각 세목별 비중을 가지고 매기마다 必要政府收入에 따라 각 세목별 세율을 정부가 매기간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⁸⁾.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세대별 후생분석을 연구대상으로 삼

7) 소득세와 자본소득세, 노동소득세를 동시에 고려한 이유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의 자본과 노동에 대한 귀속의 정도에 관한 실증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본 혹은 노동에 대한 귀속의 정도가 불확실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소득세로 정의하여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동시에 과세된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8) 각 세목에 대한 세율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 정부는 각 세목별 세원의 규모를 파악하고 각 세목에 할당된 必要租稅收入(required tax revenue)을 징수하기 위한 각 세목별 세율을 결정한다. 이때 물론 정부의 이러한 세율에 대한 결정이 초래하는 一般均衡效果도 아울러 감안하여 정부가 각 세목별 세율을 정한다고 가정한다.

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금보험료에 대한 명시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年金保險料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켰다. 즉,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 가입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表 III-2>에서 나타나 있듯이 연금보험료는 1993년까지는 노동소득의 3%,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6%, 그리고 1998년부터는 9%로 가정하였다.

또한 여기서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을 完全老齡年金, 在職者老齡年金과 遺族年金으로 국한하였다. 遺族年金은 1995년도에 이루어진 유족연금 급여의 연령별 분포자료를 이용하여 유족연금 지급의 연령별 지급분포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연금수급 연령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될 유족연금급여는 <表 VII-2>에 나타난 1995년도 연령별 유족연금의 분포를 기준으로 연령별로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직 국민연금 급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연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족연금 수급의 분포를 가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본다⁹⁾. 특기할 만한 사항은 반환일시금의 경우 국민연금제도 실시 초기에는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반환일시금 지급의 시기 문제, 즉 국민연금가입자의 조기 은퇴 및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조기 탈퇴에 대한 결정을 무시하였다. 이는 모형에서 나타난 年金基金의 枯渴時期를 상당히 늦출 수도 있음을 밝혀 둔다¹⁰⁾.

-
- 9) 유족연금이 전 세대에 균등하게 지급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시뮬레이션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와 질적인(qualitative) 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의 가정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 10) 연금기금의 수준에 대한 추계는 이뿐만 아니고 보험수리적 연구(actuarial study)에서 가정하는 이자율 수준 및 실제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식에도 영향을 받는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연금운용은 고용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에 나뉘어 이루어지며 부문별 수익률이 다르고 시기에 따라 각 부문의 비중이 바뀌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힘들므로 모형에서 나타난 연금기금의 수준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여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3. 年度別 遺族年金 受給現況

<表 VII-2> 遺族年金 遺族類型別 年齡別·性別(月平均) 支給額 現況(1989~1995)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총 계	계	753,359	3,058,373	6,600,975	12,942,729	20,480,548	28,981,397	39,127,945
	남	27,350	105,725	237,543	537,865	1,028,257	1,426,865	2,040,708
	여	726,009	2,952,648	6,363,432	12,404,864	19,452,291	27,554,532	37,087,237
5세미만	계	866 (0.11)	7,333 (0.23)	25,107 (0.38)	45,218 (0.34)	64,228 (0.31)	85,508 (0.29)	93,019 (0.23)
	남	590 (2.15)	5,312 (5.02)	17,612 (7.41)	30,318 (5.63)	39,571 (3.84)	45,020 (3.15)	40,475 (1.98)
	여	276 (0.03)	2,022 (0.06)	7,495 (0.11)	14,900 (0.12)	24,658 (0.12)	40,488 (0.14)	52,543 (0.14)
5~9	계	5,130 (0.68)	21,040 (0.68)	42,960 (0.65)	99,688 (0.77)	182,537 (0.89)	288,815 (0.99)	420,330 (1.07)
	남	2,481 (9.07)	12,452(11.77)	22,741 (9.57)	56,065(10.42)	96,231 (9.35)	155,284(10.88)	228,898(11.21)
	여	2,649 (0.36)	8,588 (2.90)	20,218 (0.31)	43,623 (0.35)	86,306 (0.44)	133,531 (0.48)	191,432 (0.51)
10~14	계	13,288 (1.76)	37,921(12.39)	97,071 (1.47)	181,982 (1.45)	330,407 (1.61)	450,232 (1.55)	608,659 (1.55)
	남	5,748(21.01)	17,927(16.95)	50,867(21.41)	97,788(18.18)	186,251(18.11)	248,292(17.40)	333,755(16.35)
	여	7,540 (1.03)	19,993 (0.67)	46,204 (0.72)	84,194 (0.67)	144,156 (0.74)	201,940 (0.73)	274,904 (0.34)
15~19	계	11,441 (1.51)	47,223 (1.54)	116,414 (1.76)	244,867 (1.89)	424,719 (2.07)	592,877 (2.04)	824,330 (2.10)
	남	696(24.48)	23,337(22.07)	55,512(23.36)	126,246(23.47)	235,416(22.89)	312,250 (1.13)	448,866 (2.99)
	여	4,745 (0.65)	23,886 (0.80)	60,903 (0.95)	118,621 (0.95)	189,303 (0.97)	280,427 (1.01)	375,464 (1.01)
20~24	계	8,950 (1.18)	26,067 (0.85)	33,537 (0.50)	51,522 (0.39)	58,796 (0.28)	84,924(0.29)	78,307 (0.20)
	남	-(-)	-(-)	-(-)	5 (0.0009)	1,142 (0.11)	8,172 (0.57)	9,084 (0.44)
	여	8,950 (1.23)	26,067 (0.88)	33,537 (0.52)	51,517 (0.41)	57,654 (0.29)	76,752 (0.27)	69,223 (0.18)
25~29	계	63,637 (8.44)	206,200 (6.74)	346,758 (5.25)	599,290 (4.63)	798,067 (3.89)	888,226 (3.06)	1,026,376 (2.62)
	남	-(-)	813 (0.76)	677 (0.28)	-(-)	-(-)	-(-)	7,161 (0.35)
	여	63,637 (8.76)	205,388 (6.95)	346,081 (5.43)	599,290 (4.83)	798,067 (4.10)	888,226 (3.22)	1,019,216 (2.76)

<表 VII-2>의 繼續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30~34	계	119,549(15.86)	452,948(14.81)	889,479(13.47)	1,585,804(12.25)	2,261,832(11.04)	2,792,496 (9.63)	3,186,181 (9.14)
	남	-(-)	-(-)	373 (0.15)	2,124 (0.39)	2,214 (0.21)	1,597 (0.11)	1,025 (0.05)
	여	119,549(16.46)	452,948(15.34)	889,107(13.97)	1,583,680(12.76)	2,259,617(11.61)	2,790,900(10.12)	3,185,157(8.58)
	계	119,355(15.84)	520,054(17.00)	1,099,200(16.65)	2,100,625(16.23)	3,118,736(15.22)	4,435,888(15.30)	5,661,222(14.46)
35~39	남	-(-)	1,105 (1.04)	1,856 (0.78)	-(-)	-(-)	171 (0.01)	1,879 (0.09)
	여	119,355(19.92)	518,949(17.57)	1,097,343(17.24)	2,100,625(16.23)	3,118,736(16.03)	4,435,717(16.09)	5,659,344(15.25)
40~44	계	130,532(17.32)	567,097(18.54)	1,166,904(17.67)	2,219,761(17.15)	3,290,355(16.06)	4,563,589(15.74)	6,283,493(16.05)
	남	-(-)	-(-)	936 (0.39)	1,506 (0.27)	2,322 (0.22)	642 (0.04)	697 (0.03)
	여	130,532(17.97)	567,097(19.20)	1,165,968(18.32)	2,218,255(17.88)	3,288,033(16.92)	4,562,947(16.55)	6,282,796(16.94)
	계	131,557(17.46)	549,948(17.98)	1,221,688(18.50)	2,318,868(18.69)	3,542,318(17.29)	5,006,472(17.27)	6,429,558(16.43)
45~49	남	1,197 (4.37)	1,775 (1.67)	1,188 (0.50)	2,063 (0.38)	2,830 (0.27)	4,714 (0.33)	4,423 (0.21)
	여	130,360(17.95)	548,193(18.56)	1,220,500(19.17)	2,316,805 (1.86)	3,539,488(18.19)	5,001,758(18.15)	6,425,135(17.32)
50~54	계	103,232(13.70)	410,609(13.42)	988,102(14.96)	2,046,762(15.81)	3,495,695(17.06)	4,969,854(17.14)	6,816,844(17.42)
	남	63 (0.23)	1,093 (1.03)	3,380 (1.42)	5,516 (1.02)	5,962 (0.57)	8,514 (0.59)	7,180 (0.35)
	여	103,169(17.92)	409,516(13.86)	984,722(15.47)	2,041,246(16.45)	3,489,734(17.93)	4,961,340(18.00)	6,809,664(18.36)
	계	22,084 (2.93)	129,985 (4.40)	402,648 (6.09)	966,513 (7.46)	1,823,876 (8.90)	3,010,235(10.38)	4,640,340(11.85)
55~59	남	-(-)	399 (0.57)	4,134 (1.74)	4,433 (0.82)	3,715 (0.36)	7,734 (0.54)	12,503 (0.61)
	여	22,084 (3.04)	129,586 (4.38)	398,514 (6.26)	962,080 (7.75)	1,820,162 (9.35)	3,002,501(10.89)	4,627,837(12.47)
60~64	계	11,855 (1.57)	42,129 (1.37)	85,654 (1.29)	253,225 (1.95)	522,291 (2.55)	900,532 (3.10)	1,571,541 (4.01)
	남	5,914(21.62)	20,608(19.49)	33,904(14.27)	97,248(18.08)	159,686(15.52)	198,462(13.90)	261,406(12.80)
	여	5,940 (0.81)	21,522 (0.72)	51,750 (0.81)	155,977 (1.25)	362,605(35.26)	8,702,071 (2.54)	1,310,136 (3.53)
	계	11,884 (1.57)	39,799 (1.30)	85,453 (1.29)	228,604 (1.76)	566,690 (2.76)	911,948 (3.14)	1,487,743 (3.80)
65세 이상 또는 그 이상	남	4,660(17.03)	20,906(19.77)	44,363(18.67)	114,555(21.29)	292,917(28.48)	436,013(10.56)	683,357(33.48)
	여	7,224 (0.99)	18,893 (0.63)	41,090 (0.64)	114,049 (7.87)	273,773 (1.40)	475,935 (1.72)	804,386 (2.16)

註 : () 안은 전체 중 구성비임.

資料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호.

4. 政策 시뮬레이션 및 計算方法

본 연구에서는 8가지 경우를 상정하기로 한다. 첫번째 경우는 국민연금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경제를 상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는 연도는 1985년으로 잡았다. 이 경우를 상정한 이유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고 순수하게 人口構造의 變動으로 초래될 生産要素 供給變動에 따른 生産要素價格 變動의 效果만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효과와 세대별 후생의 재분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두번째의 경우에서는 現行 國民年金制度下에서의 資源分配 및 世代別 福利水準을 살펴본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연금기금이 고갈되고 정부의 부채가 발생하면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 조세를 징수한다. 이때 매년 상환할 부채의 양은 부채의 전부로 가정한다. 이러한 負債償還方式을 채택한 이유는 연금기금이 이미 고갈된 軍人年金財政의 赤字分을 一般會計에서 충당하는 현재의 정부의 행태를 國民年金 基金枯渴時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기 위해서이다.

가까운 장래에 닥칠 국민연금 재정의 위기 요인으로 人口의 老齡化와 國民年金制度 自體의 構造的인 問題를 들고 있다. 후자의 문제점은 연금보험료 수입과 연금급여의 불균형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재정의 위기극복 대안은 年金保險料 水準의 引上과 年金給與 水準의 下向調整 방식 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수준 인상의 부류에 속하는 대안으로 연금보험료 인상과 연금재정 운용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행한 시뮬레이션의 세번째 경우는 年金保險料를 2010년부터 勞動所得의 13%로 引上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

네번째의 경우에서는 연금재정의 운용방식을 賦課方式으로 전환

하는 정책대안을 상정한다¹¹⁾. 이 방식은 현재 미국의 社會保障制度의 골격이 되고 있는 제도이며 가장 간단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재 취업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社會保障稅(payroll tax)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때의 세율은 매년 연금지급액과 사회보장세 수입을 동일하게 하는 수준에서 정해진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자원을 청년세대에서 노년층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다. 만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체인구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노년층의 비중에 비해 증가할 경우에는(구체적으로 말해 인구증가율이 시장실질 이자율과 생산성 증가율의 합보다 높을 경우) 부과방식의 도입은 보험가입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나 만일 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한 후생의 감소가 예상되며 그 부담이 미래에 태어날 세대에게 전가될 것으로 본다. 또한 여기서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은 부과방식하에서는 근로자들이 연금 보험료 각출시에 자신들이 지불하는 보험료가 자신의 은퇴시에 받을 연금수급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즉,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여금이 미래에 받을 연금의 수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이는 다소 제한적인 가정이나, 실제 복잡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한 노년층의 인구와 청년층의 인구비율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年金保險料支給과 年金의 受給에 확연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부과방식하에서 청년층이 부담해야 하는 社會保障稅의 水準은 연금급여를 받을 老年層의 人口와 사회보장세를 부담할 青年層의 人口 比率에 의해 좌우되는 반면 年金給與의 水準은 연금가입자 자신의 年金加入期間의 平均賃金率과 退職當時의 平均賃金率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연금보험금 각출 수준과 연금급여 사이의 부분적인 연결고리의

11)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시기는 2030년으로 가정한다.

존재에 입각한 시뮬레이션은 향후의 과제로 넘길까 한다.

연금보험료 수준의 상향조정에 속하는 대안들로 연금보험료 인상과 연금재정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면, 연금급여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으로는 연금과세 실시, 소득추계제도 강화, 연금수급 연령의 상향조정을 들 수 있다.

年金課稅는 연금을 일종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 및 학계의 일부에서 제기된 국민연금 재정운용 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대안은 미래의 세대들에게 국민연금재정의 부담을 지나치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대안이다. 이때 가정한 年金課稅率은 10%로 하였다¹²⁾.

본 연구에서 다른 所得推計制度의 強化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득추계제도인 在職者老齡年金制度의 強化를 의미한다. 현행의 재직자노령연금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연령이 65세 미만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급여 수준이 基準年金額×(0.5+0.1×(연령-60))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상정한 소득추계제도의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일 연금수급자의 연령이 70세 미만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급여의 수준을 基準年金額×(0+0.1×(연령-60))으로 규정한다. 이 대안의 의미는 소득추계제도가 적용되는 연령이 확대되고 지급받는 연금급여의 수준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연금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는 대안 중 마지막으로 고려할 것은 年金 受給開始年齡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연금과세의 실시, 소득추계제도의 강화 그리고

12) 연금소득에 대한 유효세율은 연금각출료에 대한 소득공제의 정도, 과세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의 범위와 연금소득세율 등에 의해 결정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모든 연금과세의 규정들에 의해 결정된 연금소득세율이 연금급여를 받을 때로 일반화된 세율로 정의된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에서 10%의 세율을 가정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다만 본 절에서는 연금과세 효과의 질적인 면을 보고자 한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 등 각각의 대안을 실시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대안의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의 특정한 규정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할 마지막 대안으로 일종의 政策調合을 상정하고 있다. 이 정책조합에서는 年金課稅率을 5%로 정하고, 年金 受給開始年齡을 62세로 상향조정하며, 소득추계제도도 在職者老齡年金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만일 연금수급자의 연령이 70세 미만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급여의 수준을 $\text{기준연금액} \times (0.5 + 0.5/7 \times (\text{연령} - 60))$ 으로 규정한다. 이 대안의 의미는 소득추계제도가 적용되는 연령이 확대되고 지급받는 연금급여의 수준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행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계산은 Auerbach & Kotlikoff(1987)에서 사용한 Gauss-Seidel방법을 사용하였다¹³⁾.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면 먼저 초기의 균제상태와 말기의 균제상태¹⁴⁾를 구한 다음 그 사이 연도들의 자원배분 경로(transition path)의 경우는 이들 두 균제상태를 연결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의 資源配分이 經濟의 運動法則(law of motion)과 일관성 있는 경로를 찾아 나가는 방법이다.

13)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uerbach & Kotlikoff(1987) chapter 4를 참조.

14) 말기의 경제는 본 모형의 가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균제상태에 수렴하게 된다. 본 모형에서는 2030년 이후의 출산율은 2030년도 수준으로 유지되므로 2030년도부터 80년이 경과하면 인구구조가 균제상태에 수렴한다. 또한 국민연금 각출료와 연금급여 수준도 이 시점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되어 있어 국민연금 재정적자 수준도 안정되며 또한 국민연금의 부채수준도 每期 조세수입으로 적자분을 보전하므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경제전체는 자동적으로 균제상태에 수렴하게 된다.

5. 結果 解析

본 연구에서 행한 시뮬레이션은 1985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후 150년간의 경제변수에 대한 모의실험을 한 것이다. 각 연도에 태어난 세대들의 후생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각 세대의 후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초기 균제상태에서 평생을 산 세대가 평생 동안 누린 복리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5년의 상태를 초기의 균제상태로 정의하고 이 연도에 태어난 세대를 세대 1로 정의한다. 다음으로, 이 초기의 균제상태에서 평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를 통해 누려 온 福利水準을 富로 환산하고¹⁵⁾, 각 연도에 출생한 사람들이 평생동안 누려 온 복리수준 또한 富로 평가한 다음, 이를 전자와 비교하였다¹⁶⁾.

첫번째 상정한 경제, 즉 국민연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에서는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生産要素價格의 變化效果를 잘 나타내고 있다. <表 VII-3>에서 볼 수 있듯이 老年層과 青年層의 比率의 변화에 따라 貯蓄率이 변화하고 있다. 전자의 비율이 최고에 달하는 2040년경에 저축률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저축률의 하락은 라이프 사이클 모형에서는 노년층의 소비성향이 청년층의 소비성향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저축률의 변화에 따라 총자본량은 2030년경에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총노동공급은 약 2020년경에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이들의 비율에 따라 임금률도 변하고 있다. 각 세대들이 평생 동안 사용 가능한 자원의 양은 이들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의 임금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2020년경에서 2080년 사

15) 초기 균제상태에서는 평생을 산 세대는 위에서 정의한 세대의 개념에 의하면 세대 -54이다.

16) 복리수준을 평가하는 富의 수준은 CES 효용함수가 동조적(homothetic)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이에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 36은 1986년부터 2040년 사이에 생존하는 세대 2와 비교하여 평생 동안 생존 가능한 자원의 양이 상당히 높아 전자가 富로 환산한 평생 후생수준이 후자의 그것에 비하여 약 2% 높음을 [圖 VII-2]에서 볼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勞動供給과 貯蓄率의 減少이다. 年金保險金 賦出은 연금가입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연금가입자들은 이를 노동소득에 대한 追加的인 租稅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공급이 줄어들고 세후 임금률을 하락시키므로 장기적으로 태어날 세대들의 사용 가능한 자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貯蓄性向이 큰 청년층들의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로 인해 저축률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資本蓄積을 저해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세전 임금률을 낮추고 이자율을 상승시키므로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에게 사용 가능한 자원의 현재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미래세대의 복리수준을 낮추는 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表 VII-5>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 자체만 보아도 국민연금 도입초기의 세대를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연금보험금 지불의 현재가치가 연금수급액의 현재가치를 상회하여 복리수준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의 감소에 따른 貸金率의 低下 및 利子率의 上昇이 연금소득의 현재가치를 하락시킨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대 80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보다 초기 균계상태의 평생복리 수준의 약 6.5%의 厚生費用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에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약간의 혜택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表 VII-5>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급여의 현재가치와 연금각출금의 현재가치가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에 있어서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비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에

기인한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먼저 장기적인 利子率의 上昇으로 인해 年金醜出金에 비해 年金保險料의 現在價値가 높게 평가되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에는 연금각출금의 불입기간이 비교적 짧은 반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기간이 길어지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연금급여는 완전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급여가 시작되는 2008년에 60세가 되는 세대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들 세대(세대 -15)의 경우는 20년간 연금각출금을 불입하고 그 이후의 세대들은 차차 긴 기간 연금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은 21세부터 59세까지 39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불입하고 60세부터 사망시까지 연금급여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금제도로 인한 후생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¹⁷⁾.

연금보험료 납부액과 연금급여의 비율이 장기적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또 다른 이유는 年金給與算式 중 均等分の 존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 세대들의 연금급여 수준은 이러한 균등분의 존재로 인해 각 세대의 隱退時期의 國民年金 加入者들의 平均賃金에도 영향을 받는다. 국민연금 도입으로 인한 장기적 임금률 하락은 연금급여 수준의 하락을 가져오며 이러한 현상은 국민연금의 내부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사료된다.

또한 현행 제도의 경우는 인구구조의 변동, 즉 老年層의 比重增加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 및 신규가입자의 감소로 장기적으로 연금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데 본 연구에서 행한 시뮬레이션에 의하

17) 연금가입 기간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검토가 차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면 2042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⁸⁾.

이러한 연금재정의 위기를 해결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계에서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대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年金保險金을 引上하는 부류와 年金給與를 下向調整하는 부류로 대별된다.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안으로는 연금각출률을 인상하는 방안과 연금재정 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2010년부터 年金醜出率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은 현행의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9년 늦추는 역할을 한다.

[圖 VII-1]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부터 현행 방식하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연금기금(혹은 負(-)의 부채)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방식하에서보다 정부저축이 월등히 높아 경제 전체의 저축률이 현행 방식을 상회하고 있다. 자본축적 상태도 오랜 기간 현행 방식하에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임금률 수준도 오랫동안 현행 방식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세대(세대 45부터 세대 62)의 후생수준이 현행 방식하에서의 후생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의 후생이 현행 방식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資本의 水準이 下落하고, 勞動에 대한 追加的인 課稅의 性格을 띠고 있는 연금각출률의 인상은 노동공급 수준의 하락을 가져와, 이 방식하에서의 후생수준이 현행 방식하에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금기금이 고갈되기 이전에, 연금재정의 운용방식을 賦課方式으로 轉換하자는 정책대안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정한 것이 네 번째 경우이다.

18)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기는 기존의 연구에서 추정된 그것보다 늦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에서는 반환 일시금과 장해연금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表 VII-3> 政策代案別 資源配分 [60世代(21~80歲)]

(gr=0 $\gamma=0.20$ $\rho=0.83$ $\alpha=2.1$)

	국민연금부채					현행방식					연금자출률인상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1985	102.7	13.65	1.000	6.54	26.46	102.7	13.64	1.000	6.54	26.43	102.7	13.64	1.000	6.54	26.43	102.7	13.65	1.000	6.54	26.46
1995	138.1	17.08	1.024	6.24	22.23	140.1	16.78	1.035	6.10	23.67	140.5	16.82	1.035	6.10	23.93	140.3	16.78	1.035	6.10	23.77
2015	197.8	20.30	1.089	5.50	18.65	191.3	19.83	1.085	5.54	16.89	195.5	19.55	1.098	5.41	17.81	190.9	19.84	1.084	5.55	16.91
2025	211.9	20.27	1.114	5.25	14.66	190.3	19.74	1.085	5.54	11.28	195.7	19.67	1.096	5.43	13.29	190.2	19.83	1.083	5.56	11.76
2030	212.6	19.83	1.124	5.16	12.80	182.0	19.19	1.079	5.61	7.39	187.7	19.22	1.090	5.50	9.98	183.1	19.39	1.078	5.62	8.56
2045	195.8	17.73	1.135	5.06	5.88	145.0	15.42	1.076	5.64	0.68	147.7	16.82	1.052	5.90	3.24	147.8	14.50	1.105	5.34	0.94
2060	176.9	16.10	1.133	5.08	6.89	117.5	14.44	1.026	6.21	4.18	118.6	14.28	1.033	6.13	3.89	114.1	14.44	1.016	6.33	5.53
2085	158.5	14.87	1.122	5.18	8.82	96.3	13.77	0.976	6.88	8.44	95.5	13.71	0.975	6.89	8.06	90.1	13.87	0.953	7.22	11.02
2134	155.8	14.80	1.117	5.23	10.01	97.52	13.74	0.981	6.81	9.57	95.5	13.71	0.975	6.89	9.58	94.2	13.84	0.967	7.00	12.62
	연금과세					급여개시연령상향조정					소득추계제도강화					정책조합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1985	102.7	13.65	1.000	6.54	26.46	102.7	13.65	1.000	6.54	26.45	102.7	13.65	1.000	6.54	26.46	102.7	13.64	1.000	6.54	26.43
1995	140.3	16.79	1.035	6.10	23.77	140.8	16.82	1.036	6.10	23.99	141.0	16.84	1.036	6.09	24.11	141.0	16.85	1.036	6.09	24.13
2015	193.3	19.89	1.088	5.51	17.27	196.7	20.01	1.092	5.47	18.01	198.8	20.07	1.095	5.44	18.42	198.3	20.06	1.094	5.45	18.34
2025	194.1	19.84	1.090	5.49	12.01	199.7	20.02	1.097	5.42	13.25	203.8	20.13	1.103	5.36	14.02	202.4	20.09	1.101	5.38	13.76
2030	186.7	19.31	1.086	5.53	8.37	193.1	19.52	1.095	5.45	9.89	198.3	19.65	1.102	5.38	10.92	196.3	19.60	1.099	5.40	10.48
2045	150.5	15.82	1.080	5.59	1.30	156.2	17.03	1.067	5.73	3.20	163.2	17.22	1.079	5.61	4.96	160.0	17.13	1.074	5.66	4.11
2060	123.5	14.57	1.040	6.04	4.35	128.3	14.61	1.052	5.90	4.24	134.4	14.70	1.066	5.74	4.29	131.6	14.65	1.060	5.81	4.26
2085	101.7	13.88	0.991	6.66	8.38	105.0	13.93	1.001	6.54	8.17	110.2	13.99	1.015	6.35	7.97	107.7	13.95	1.008	6.43	8.05
2134	102.1	13.85	0.993	6.63	9.64	104.7	13.93	1.000	6.55	9.63	108.7	14.01	1.010	6.41	9.66	106.7	13.96	1.005	6.48	9.64

<表 VII-4> 政策代案別 適用稅率 比較 [60世代(21~80歲)]

(gr=0 $\gamma=0.20$ $\rho=0.83$ $\alpha=2.1$)

(단위 : %)

	국민연금부채				현행방식				연금각출률 인상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소비세율	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연금각출률	소비세율	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연금각출률	소비세율	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연금각출률	소비세율	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연금각출률
198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95	0	0	0	0	0	0	0	6.00	0	0	0	6.00	0	0	0	6.00
2015	0	0	0	0	0	0	0	9.00	0	0	0	13.00	0	0	0	9.00
2025	0	0	0	0	0	0	0	9.00	0	0	0	13.00	0	0	0	9.00
2030	0	0	0	0	0	0	0	9.00	0	0	0	13.00	0	0	0	9.00
2045	0	0	0	0	7.12	6.37	1.68	9.00	0	0	0	13.00	0	0	0	34.46
2060	0	0	0	0	6.56	5.66	1.47	9.00	5.44	4.71	1.22	13.00	0	0	0	27.97
2085	0	0	0	0	6.08	5.01	1.03	9.00	4.60	3.81	0.99	13.00	0	0	0	27.05
2134	0	0	0	0	5.32	4.33	1.13	9.00	3.92	3.20	0.93	13.00	0	0	0	24.98
	연금과세				급여개시연령 상향조정				소득추계제도 강화				정책조합			
198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95	0	0	0	6.00	0	0	0	6.00	0	0	0	6.00	0	0	0	6.00
2015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2025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203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2045	5.15	4.58	1.19	9.0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2060	5.55	4.78	1.24	9.00	4.92	4.24	1.10	9.00	4.11	3.54	0.92	9.00	4.55	3.92	1.02	9.00
2085	5.03	4.15	1.08	9.00	4.39	3.63	0.94	9.00	3.57	2.95	0.77	9.00	3.98	3.29	0.86	9.00
2134	5.41	3.58	0.93	9.00	3.78	3.07	0.80	9.00	3.03	2.46	0.64	9.00	3.43	2.79	0.73	9.00

본 연구에서는 연금재정 운용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2039년으로 가정하였으며 그때까지 적립된 기금을 그대로 국민연금재정이 운용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연금재정 운용방식의 하나인 부과방식의 특징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들의 연금재정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전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방식과 부과방식의 또 다른 차이점은 연금재정 운용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연금재정의 재원 전체가 勞動所得에 대한 課稅의 性格을 띠는 청년층의 보험금 각출금 납입에서 충당되는 반면, 현행 제도의 경우는 재원이 연금보험금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세원으로 분산되어 조달된다는 것이다¹⁹⁾. 이러한 각 세목별 세율의 차이는 <表 VII-4>에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우리가 Harburger의 삼각형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필요한 재원을 여러 稅源으로부터 分散·徵收하는 것이 경제행위의 왜곡을 줄이는 길이라는 직관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소비과세의 경우는 노동소득과세와 럼-섬 조세(lump-sum tax)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노동소득세보다 효율적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²⁰⁾. 따라서 <表 VII-3>과 [圖 VII-1]에서 알 수 있듯이 거시경제 수준에서의 자원분배의 차이는 많지 않으면서도 후생비용의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²¹⁾.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금급여를 하향조정하는

- 19) 보험각출률을 인상하는 대안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
- 20) 소비세가 럼-섬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소비성향이 높은 노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은 여생이 짧으므로 소비세 변동에 의한 소비행위의 변화가 비교적 적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 21) <表 VII-3>에서 볼 수 있듯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을 때보다 현행 방식의 국민연금제도하에서 장기적인 저축률이 오히려 낮다. 이는 연금기금의 고갈시 부채상환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현행 방식하에서는 소득세와 자본소득세를 통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반면 부과방식으로 재정운용방법을 전환하였을 때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류에 속하는 대안으로 年金課稅의 실시, 年金 受給開始年齡의 上向調整, 所得推計制度의 強化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대안들의 공통된 성격은 연금재정 부담의 상당부분을 미래세대에서 현재의 세대로 이전시키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원을 소비성향이 높은 노년층 및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에서 소비성향이 낮은 청년층 및 미래세대로 이전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저축률을 향상시켜 미래세대의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表 VII-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경우의 저축률과 장기적인 자본축적률이 현행 제도하에서보다 높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추정된 미래세대의 후생의 향상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들의 후생비용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재 세대의 후생의 향상이 미미한 데 비해 미래세대의 부담이 상당히 큰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하겠다. 따라서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年金保險料를 引上하는 代案들보다는 年金給與를 下向調整하여 경제주체들의 經濟行爲의 歪曲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연금급여 수준의 하향조정 정도를 더 할수록 미래세대의 후생이 증진되는 현상이 목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방식하에서의 國民年金의 財政運營 方式이 完全積立方式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世代間의 資源再配分을 초래하여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에 왜곡을 가져온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²²⁾.

본 연구에서 다룬 마지막 경우인 정책조합 상황하에서도 같은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다른 정책대안과의 차이점은 연금급여 수준의

22) 특기할 만한 사항은 소득추계제도의 노동공급에 대한 왜곡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소득추계제도는 국민연금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연금 수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동공급의 왜곡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왜곡의 정도는 국민연금제도의 다른 요소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향조정 정도에 따라서 세대간 후생 재분배의 정도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모델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선택된 여러 파라미터들, 특히 期間間 代替彈力性(γ)과 期間內 代替彈力性(ρ)은 엄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에 의해 얻어진 추정치가 아니라 현실 경제에서 관찰되는 거시경제 변수와 흡사한 수치가 시뮬레이션에 의해 산출될 수 있게 조정된 것이다. 따라서 파라미터들의 수치의 변동에 의해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기간간 대체탄력성과 기간내 대체탄력성은 자본축적과 노동공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파라미터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經濟成長率의 變動이다. 본 연구의 기본 가정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률을 0으로 설정하였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현행의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현재의 저연령층이나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로부터 현재의 고연령층 혹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들에게 자원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즉 연금재정의 부담을 현재세대로부터 미래세대로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이러한 미래에 생존할 세대의 부담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表 III-2>에 나타난 연금급여산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 세대들이 지급받을 연금급여의 수준은 과거 자기 자신의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뒤에 태어난 세대들의 노동소득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勞動生產性 向上은 각 世代의 年金給與水準을 上昇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表 VII-7>에서 요약된 것과 같이 파라미터와 노동생산성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행하였다.

<表 VII-5> 年金政策의 厚生效果 比較 [60世代(21~80歲)]
 (gr=0 $\gamma=0.20$ $\rho=0.83$ $\alpha=2.1$)

(단위 : %)

세 대	후 생 효 과							
	국민연금부재	현행 방식	연금각출률 인상	부과방식으로 전환	연금과세	급여개시연령 상향조정	소득추계제도강화	정책 조합
-59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0	100.00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20	99.80	99.55	99.53	99.55	99.54	99.54	99.53	99.53
-18	99.76	99.45	99.43	99.45	99.44	99.44	99.43	99.43
-10	99.66	99.65	99.60	99.66	99.58	99.47	99.40	99.45
1	99.77	99.23	99.05	99.24	99.13	98.96	98.85	98.93
20	100.78	98.83	98.32	98.90	98.92	98.91	98.90	98.95
60	101.85	94.17	94.74	90.89	95.14	96.19	97.23	96.77
80	101.79	93.53	93.12	90.44	94.41	94.89	95.62	95.29
150	101.56	93.86	93.26	91.29	94.59	94.97	95.56	95.27

<表 VII-6> 年金受給과 釀出金の 比較 [60世代(21~80歲)]
 (gr=0 $\gamma=0.20$ $\rho=0.83$ $\alpha=2.1$)

세 대	연금수급의 현재가치/연금각출금의 현재가치							
	국민연금부재	현행 방식	연금각출률 인상	부과방식으로 전환	연 금 과 세	급여개시연령상향조정	소득추계제도강화	정 책 조 합
-20	0	1.324	1.344	1.322	1.193	0.988	0.851	0
-15	0	1.017	0.984	1.016	0.918	0.763	0.659	0.741
-5	0	0.806	0.762	0.805	0.730	0.609	0.527	0.592
25	0	0.446	0.359	0.402	0.404	0.337	0.296	0.330
45	0	0.425	0.277	0.252	0.385	0.318	0.275	0.309
60	0	0.400	0.264	0.113	0.368	0.304	0.265	0.298
120	0	0.343	0.223	0.101	0.318	0.263	0.231	0.256

<表 VII-7> 敏感度 分析

	파 라 미 터 값			
기본가정	gr=0	$\gamma=0.20$	$\rho=0.83$	$\alpha=2.1$
가정변형 I	gr=0	$\gamma=0.25$	$\rho=0.83$	$\alpha=2.1$
가정변형 II	gr=0	$\gamma=0.1$	$\rho=0.83$	$\alpha=2.1$
가정변형 III	gr=0	$\gamma=0.20$	$\rho=0.3$	$\alpha=2.1$
가정변형 IV	gr=0.03	$\gamma=0.2$	$\rho=0.83$	$\alpha=2.1$

민감도 분석의 결과 <附錄 II>의 表와 [圖 VII-2]와 [圖 VII-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파라미터 값이 변동하더라도 위에서 제시된 결과와 政策的 含意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행과 같은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몇몇 세대들에게는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지만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에게는 후생의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금급여를 하향조정하는 대안이 연금보험료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부류의 대안보다 나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위에서 제시한 기본가정의 결과와 다른 점은 기간별 대체탄력성과 기간내 대체탄력성의 값에 따라 자본축적 상태와 노동공급 상태의 변화에 의해 全般的인 厚生費用의 水準이 기본가정하에서의 경우와 달리 산출된다는 것이다. 期間間 代替彈力性이 높아질수록 저축률이 상승하여 자본축적량이 증대됨으로써 경제 전반적으로 임금률이 상승하고 이자율이 하락하여 각 세대의 개인이 사용 가능한 자원의 현재가치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효과 측면에서도 연금급여의 현재가치와 연금보험료의 현재가치의 비율이 상승하여 국민연금제도의 후생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다.

期間內 代替彈力性의 變化는 勞動供給의 變化를 통해 전반적인 후생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 파라미터의 값이 하락하면 노동공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서 임금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이자율이

상승하여 각 개인이 평생동안 사용 가능한 자원의 가치를 하락시키며 또한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효과면에서도 연금급여의 현재가치와 연금보험료의 현재가치간의 비율을 하락시켜 국민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후생비용을 상승시킨다²³⁾.

勞動生産性 向上은 미래에 생존할 세대의 厚生을 增大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연금제도에 의한 世代間 厚生의 再分配 程度를 深化시키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금급여 수준의 하향조정 에 의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들의 후생감소가 노동생산성 향상률이 상승할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으나, 앞 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민감도 분석에서 상정한 노동생산성 향상률 3%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률의 상한선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민감도 분석에서 상정한 노동생산성 향상률의 형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경우에 나타난 일부 세대들의 후생비용의 증가를 놓고 기본가정하에서 도출한 정책함의를 뒤엎기는 힘들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幼年期에 대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부모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子女 扶養費用이 줄어들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소년층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예산의 삭감, 예를 들어 教育豫算의 削減을 도모할 수 있어 노년층 생활의 보조를 위한 지출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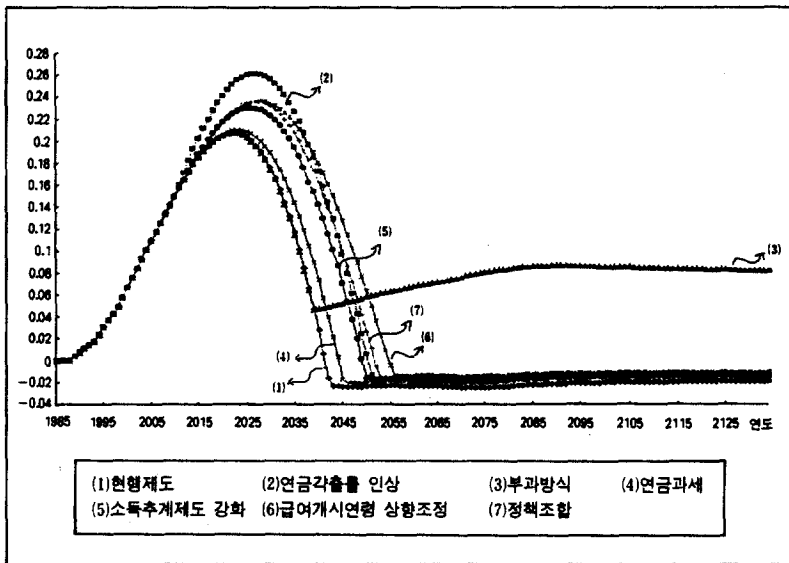
두번째로, 부과방식하에서는 국민들이 연금보험료 납입수준이 연금수급 수준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23) 각 경우에 따라 임금률을 비교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초기의 경제상태의 임금률이 1로 표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민감도 분석에서 나타난 각 경우의 임금률은 이자율과 임금률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보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민감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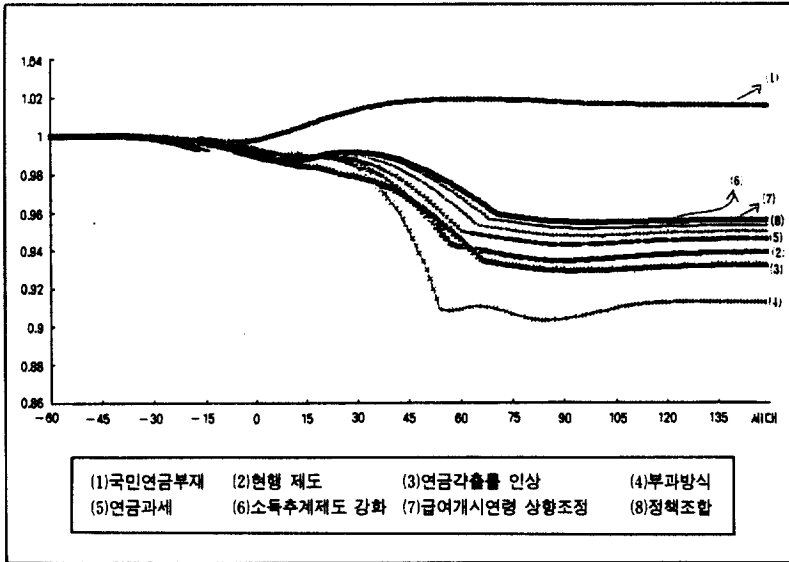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政策代案의 效果를 비교할 때 세대간의 후생의 재분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政策代案의 有效性을 비교·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세대간의 후생의 재분배라는 공평성의 측면을 떠나 순수한 효율성의 측면에서 정책대안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일정시점까지 출생한 세대들에게 일정수준의 복리(초기 균계상태의 수준)를 보장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의 후생수준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lump-sum 재분배(lump-sum redistribution)를 할 수 있다면 이들 세대들의 복리 수준을 비교하여 政策代案들의 效率性을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Auerbach & kotlikoff(1987)의 LSRA(lumpsum redistribution authority)의 응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圖 VII-1】 國民年金基金 推移($gr=0, \gamma=0.2, \alpha=2.1, \rho=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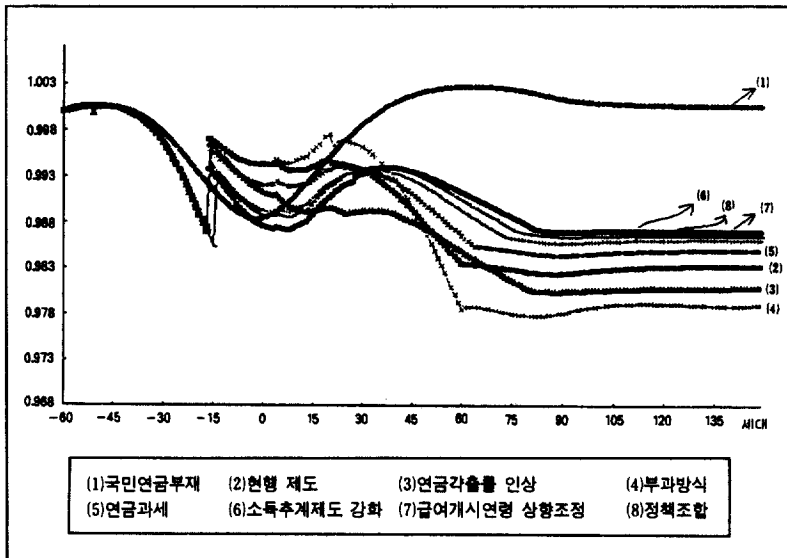
[圖 VII-2] 國民年金의 世代別 厚生效果(I)

($gr=0, \gamma=0.2, \alpha=2.1, \rho=0.83$)



[圖 VII-3] 國民年金의 世代別 厚生效果(II)

($gr=0.03, \gamma=0.2, \alpha=2.1, \rho=0.83$)



VIII. 國民年金制度的改善方向 및 政策的 示唆點

우리나라보다 老齡化를 먼저 경험한 先進國들은 公的年金의 收給 不均衡으로부터 발생하는 財政難을 해결하기 위해 年金보험료 수준의 인상 및 年金급여의 하향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보다 점진적인 政策調合 형태의 年金改革을 통해 年金재정의 健實性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年金보험료 수준의 인상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단순한 年金보험료의 인상 외에도 賦課方式으로의 轉換과 이에 따른 社會保障稅의 引上을 들 수 있으며, 年金급여의 하향조정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年金급여액의 減額, 年金所得課稅의 실시, 所得推計制度의 強化 및 年金受給年齡의 상향조정 등이 있다.

보다 급진적인 年金개혁으로는 제도의 재설계를 통한 전면적인 構造調整을 들 수 있다. 이는 칠레를 비롯한 南美國家들이 채택한 방안으로 公적연금제도의 民營化를 통한 完全적립방식의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公적연금재정의 불안정성 및 비효율성을 극복해 나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 남미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근로자에게 높은 세금과 낮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高費用·低效率 부과방식의 公적연금으로부터 民間운영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完全적립방식으로 제도의 기본구조를 전환하였다¹⁾.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第Ⅲ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年金급여와 年金보험료 수입의 不均衡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第Ⅶ章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1) 이는 第Ⅵ章에서 논의한 세계은행이 제시한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제의 강제적인 2층구조의 확립방안 중의 한가지이기도 하다.

상당한 수준의 연금각출료의 인상이나 연금급여 수준의 하향조정이 없이는 국민연금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본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25% 수준의 연금각출률이 유지되지 않는 한 향후 국민연금재정의 균형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지나친 연금각출률의 인상은 노동공급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라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며 이에 따른 후생비용을 증대시키게 된다. 반면, 연금급여 수준의 하향조정은 연금재정부담의 상당부분을 미래세대에서 현세대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이 같은 연금급여의 하향조정은 消費性向이 높은 老年層에서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勤勞世代로 자원이 이전됨에 따라 장기적인 貯蓄率의 인상을 통한 資本蓄積의 增大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급여의 감소는 이미 높은 급여를 기대해 온 노년층으로부터 많은 抵抗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현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年金賦出率의 引上과 함께 年金給與 水準의 下向調整 및 受給要件의 強化 등을 조화시키는 政策調合 方案의 채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조의 再設計를 통한 재정의 안정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기존의 연금수급에 대한 既得權의 안정과 관련된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財政難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年金改革의 基本方向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현 제도의 基本的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급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長期的인 財政의 安定化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給與算式에서 均等部門과 所得比例部門을 분리하여, 所得

2) 제 VII 장에서 행한 시뮬레이션 중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을 때 장기적으로 25% 가량의 연금보험각출률 수준에서 연금재정의 균형이 유지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再分配 기능을 수행하는 균등부문은 基礎年金化하여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소득비례부문은 完全積立方式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방법은 가장 急進的인 방법으로 국민연금의 民營化를 통한 완전적립방식 운영에 의해 연금기금재정의 效率性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本章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3가지 기본방향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關聯代案의 改善方向과 政策的 示唆點을 제시하고자 한다.

1. 最近 論議되고 있는 國民年金 改革의 基本方向

가. 現行 體制의 維持

국민연금의 개선방향 중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은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수급불균형의 극복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예로는 年金 受給開始年齡의 延長, 給與 水準의 下向調整, 保險料의 引上 등을 들 수 있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마다 1세씩 段階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完全老齡 年金 수급자가 급여수급 개시 후 5년의 경과시점인 2013년부터 조정하여 2033년 이후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연장된다. 급여수준의 하향조정안은 현행 제도하에서 40년 가입시 賃金代替率을 70%에서 40% 수준으로 조정하며, 이는 가입 1년당 임금대체율을 1%씩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현행 급여구조는 유지하는 가운데 均等部門과 所得比例部門의 조정을 통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각출과 연금급여간의 衡平性을 도모하고 현행 보험료(9%)를 追加的으로 인상(3~6% 정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대안들은 기본적으로 현행 修正積立方案의 재정운영의 틀을 유지하면서 積立率의 증대와 支出의 감소를 통한 재정의 건실화를

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이 현행 국민연금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은 既存의 加入者를 보호하고 제도의 개편에 따른 經過措置의 필요 없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제도개혁에 따른 副作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基礎部門과 所得比例部門의 分離

국민연금의 均衡부문인 기초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賦課方式에 의한 基礎年金制度和 積立方式에 의한 所得比例年金의 도입을 통해 현행 국민연금의 所得再分配機能 제고와 貯蓄 및 保險機能의 강화와 함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基礎年金의 가입대상은 18세 이상의 全國民으로 1인 1연금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며, 所得比例年金은 勤勞者의 경우 가입이 義務化되며 自營業者에 대해서는 任意加入을 검토하고 있다. 총급여수준은 40%의 임금대체율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이 중 기초연금은 임금대체율의 15%, 소득비례연금은 25%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현행 제도하에서의 연금급여의 수준을 인하함으로써 연금재정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이다. 基礎年金의 財源調達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급여지출에 필요한 보험료 징수와 세대간 보험료 격차의 폭을 줄이기 위해 追加保險料의 징수를 통한 支拂準備金의 基金造成을 필요로 한다. 또한 所得比例年金의 財源調達을 위해서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의 轉換과 더불어 기존의 국민연금기금을 積立基金에 移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국민연금의 기초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의 분리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저축의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각 제도가 담당한 役割이 效率的으로 수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초연금체제의 도입은 현행 職域年金과의 連繫를 가능하게 하여 轉職에 따른 연금수급

관련 不利益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완전적립방식의 소득비례연금의 도입은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世代間의 衡平性 제고와 適用制外의 도입을 통한 私的年金의 活性化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 國民年金의 民營化

국민연금의 재정운영에 대한 民營化는 이미 칠레를 비롯한 南美國家들에서 채택되고 있는 제도로서 재정이 完全積立方式으로 운영되며, 確定된 保險料를 납부하는 確定醜出制度和 確定된 給與를 제시하는 確定給付制度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확정각출제도의 경우는 제도의 도입시부터 個人的 年金計座의 既納付額과 향후 醜出金을 기초로 기금운영수익에 따라 급부액을 산정하며, 확정급부제도는 給與算定公式과 期間別 기금운영수익에 따라 각출률이 정해진다.

국민연금 재정운영의 민영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점으로 완전적립을 통한 세대간의 衡平性 제고와 경쟁에 의한 收益率 提高를 통한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들 수 있다. 저축의 활성화를 통한 장기 자본시장의 구축 또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자본시장의 현실과 연금개혁의 시급함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민영화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 案으로 사료된다. 국민연금 민영화의 成敗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 주식시장의 발달에 따른 자본시장의 안정, 정부의 감독능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外換危機에 따라 국내외적인 신뢰도가 하락하여 이를 회복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 改善方向

本節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3가지 基本方向 중 채택이 가능한 2가지 기본방향의 틀 내에

서 각기 적용될 수 있는 6가지의 細部的인 政策代案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연금재정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연금개혁의 정책대안들은 연금각출률의 인상 및 재정운영의 부과방식으로의 전환과 같은 연금재정의 收入增大와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 소득추계제도의 강화, 연금소득과세 및 다른 정책대안과의 조합 등을 포함한 재정의 支出費用의 縮小로 요약될 수 있다.

가. 年金財政의 收入增大

1) 年金賦出率의 引上

第Ⅶ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연금재정의 收入增大를 위한 연금각출률의 인상이나 연금재정 운용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의 대안들은 未來世代的 厚生費用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年金保險 賦出率을 일정수준 引上하는 방안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연금보험료 收入과 연금급여 支出의 균형을 달성하는 데도 미흡할 뿐더러 일정 세대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厚生費用을 증대시킨다. 즉,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금재정의 收給不均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5% 수준의 높은 연금각출률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금각출률의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2) 財政運營方式의 賦課方式으로의 轉換

연금재정방식을 賦課方式으로 轉換하는 방안은 단기적으로 연금재정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고 노동생산성 향상률의 정도에 따라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생존할 세대들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후생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통한 연금수입의 증대는 먼 미래에 생존할 세대들의 후생비용을 증대시키므로 완전부과방식의 도입에 의한 국민연금의 운영은 세대간의 형

평생 문제를 감안할 때 채택되기 곤란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인구의 노령화를 이미 경험한 구미 여러 나라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완전부과방식에만 의존하는 국민연금제도로의 전환은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향후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부담을 안겨 주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年金給與 支出費用의 縮小

1) 受給開始年齡의 上向調整

연금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채택될 수 있는 연금급여 수준의 하향조정의 부류에 속하는 대안으로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는 각 개인이 최대 80세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死亡率이 下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통계청에서 추계한 것보다 기대수명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평균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 기간이 늘어날 것이며,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공적연금이 이미 성숙된 선진국의 경우도 연금급여의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노령자의 노후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최대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방향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도 단계적인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과 함께 期待壽命의 延長에 따른 老齡勞動者의 勞動供給을 增大시키는 방향으로 國家經濟政策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2) 所得推計制度의 強化

소득추계제도는 현행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在職者老齡年金의 형태로 도입되어 있다. 재직자노령연금은 연금 수급개시연령 이후에도

정기적인 노동소득이 있는 경우에 기준연금액의 일정부분만을 지급한다는 규정이다. 이러한 재직자노령연금제도의 강화는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대안으로 부각되는 반면 각 경제주체들의 은퇴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경제주체의 勞動供給의 歪曲이 초래하는 부작용과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기여도를 비교분석한 후에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소득추계제도의 강화가 초래하는 勞動供給의 歪曲보다는 연금재정 건전성 제고의 厚生增大 效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안의 채택여부는 향후 勞動市場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이 있는 연후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年金所得에 대한 課稅

국민연금급여에 대한 과세는 기타 우리나라의 老後所得保障制度에 대한 租稅政策의 整備와 연관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는 國民年金과 각종 特殊職域年金을 포함한 公的年金制度和 退職金制度 및 個人의 任意的인 貯蓄에 의한 個人年金制度로 구성된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제도를 포함한 公的年金의 경우 각출시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으나 연금수급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으며, 退職金의 경우는 기업이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반면 퇴직금지급시 각종 소득공제의 형태로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個人年金의 경우는 각출시에도 일정한도(연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받으며 연금수급시에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老後所得保障制度에 대한 租稅政策의 衡平性 提高와 國民年金財政의 健全性 提高 및 退職金의 企業年金化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年金課稅制度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 같은 연금과세제도의 정비에 따른 연금과세의 도입은 국민연금의 급여가 본격화되는 2008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다. 이에 대한 최근 각계의 다수의 의견이 각출 당시 年金保險金에 대한 所得控除를 허용하고 年金受給時 課稅하는 방안으로 모아지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현행의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을 감안하여 연금에 대한 실효세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기는 힘들며,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獨立된 代案으로서의 연금과세의 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와 連繫 및 衡平性과 效率性 측면에서 정책의 도입 및 과세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재정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연금과세 방안은 다른 政策代案과의 調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4) 政策調合

本節에서 검토된 여러 대안들 중 年金 受給開始年齡의 上向調整, 所得推計制度의 強化 그리고 年金課稅의 實施는 연금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주체들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대안들은 다른 政策代案과의 調合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年金財政의 收給均衡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年金課稅의 경우는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의 정도를 감안할 때 급격한 유효세율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인구의 老齡化에 따라, 노년층들의 政治的 影響力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연금급여의 하향조정 방안인 年金 受給開始年齡의 延長 및 所得推計制度 強化와 年金課稅를 급격하게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본 연구의 제Ⅶ장에서 제시된 형태의 정책조합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政策的 示唆點

우리나라의 現行 국민연금제도는 향후 人口構造의 변화에 따른 收給不均衡으로 인해 年金財政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현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2020년경에 財政이 赤字로 전환되며 2030년경에는 기금의 고갈현상이 전망되고 있어 급여지급이 본격화되는 2008년 이전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민연금의 재정상의 문제는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을 과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전반에까지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공적연금의 財政赤字 및 基金枯渴 문제는 이미 공적연금의 成熟期를 맞이한 先進國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재정문제가 社會 및 巨視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의 재정문제가 경제 및 사회전반에 미칠 波及效果에 대비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기 이전에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制度의 改善이 시급하다고 본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중에서는 現行 制度의 基本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收給不均衡을 해소하는 방안과 현행 국민연금의 基礎部門과 所得比例部門을 分離·運營하는 방안이 가장 合理的인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연금의 民營化 方案은 필수적으로 국내 金融市場 및 株式市場의 發達과 信賴 그리고 정부의 이들에 대한 監督機能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安定度나 주식시장의 信賴性의 실추로 인해 국민연금의 民營化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최근 타결된 IMF의 救濟金融協商에 의해 국내의 취약한 금융시장의 全面的인 開放이 앞당겨짐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함을 고려할 때 市場經濟에서의 자유로운 競爭에 바탕을 둔 국민연금의 민영화 방안은 시의적절하지 못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공적연금의 成熟期에 접어든 대부분의 선진국의 연금개혁 또한 기존의 제도에 대한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적 수급불균형의 해소와 所得再分配, 保險 및 貯蓄 등 공적연금의 3대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漸進的인 개혁을 기본방향으로 채택함으로써 연금개혁에 따른 副作用을 最小化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점진적인 개혁정책의 대부분은 연금수입의 증대와 지출의 축소 이외에도 私的年金의 活性化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금수입의 증대조치로는 年金保險料 또는 社會保障稅의 인상 및 加入對象의 확대, 法定加入期間의 연장 등이 있으며, 연금급여 지출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로는 年金受給開始年齡의 연장과 受給資格要件의 강화 및 年金課稅의 도입 등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 이 외에도 몇몇 국가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공적연금으로부터의 정부의 財政負擔을 줄이기 위해 공적연금의 역할을 基礎年金으로 국한하는 등 그 영역을 최소화하는 반면 추가적인 노후소득은 사적연금을 통해 조달하도록 이에 대한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人口構造의 변화를 반영한 世代間의 厚生分析 結果에 의하면 연금재정의 收入增大方案은 재정의 收給不均衡의 해소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한 반면 향후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厚生費用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금지급 지출규모의 축소방안들은 장기적인 貯蓄增大를 통한 미래세대의 후생을 크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재정의 수급불균형의 해소를 위해서는 연금각출률의 인상과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한 연금재정의 수입증대방안보다는 연금급여의 수준을 하향조정하는 대안들의 정책조합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경제전체의 厚生費用을 최소화하고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에 대한 歪曲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의 개

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신속한 연금재정의 수급균형의 달성과 연금급여 수준의 하향조정에 대한 既存 노령계층의 抵抗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금각출률의 인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각출률의 인상조치는 위에서 논의된 연금급여 수준의 하향조정 형태에 속하는 대안들의 정책조합과 均衡을 맞추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未來世代에 대한 厚生費用의 급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經濟全般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60~1985 추계인구」, 1988.
- 김기홍·안종범,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개인연금제도의 도입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3. 7.
- 김용하, 「연금보험의 적정재정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42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4.
-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1991.
- 김용하·민재성, 「연금재정 시뮬레이션과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개발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1991.
- 문형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건실화를 위한 구조개선방안」,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1995.
- _____, 「연금재정의 문제점과 그 대책」, 『93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993.
- _____, 「한국사회보험제도의 연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4.
- 민재성 외, 「공무원연금재정의 장기발전 및 연금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94. 8.
- 민재성 외,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구상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연구보고 86-05, 한국개발연구원, 1986.
- 배준호, 「국민연금 도입연기 정책(1974년)의 경제적 평가」, 『사회보장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1994, pp. 103~133.
- 보건사회부, 「국민연금법령집」, 1989.
- 생명보험협회, 「해외생명보험사업 조사보고서」, 1993. 5.
-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5.

- 통계청, 「1960-2000 시도별 추계인구」, 1994.
 _____, 「생명표」, 각 연도.
 _____, 「인구동태통계연보」, 1994b.
 _____, 「장래인구추계(1990-2021)」, 1991.
 _____, 「장래인구추계(1990-2030)」, 1996.
 _____, 「한국의 인구규모와 구조 -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1993.
- 한국은행 조사제2부, 「국민계정 1994」, 1994.
- 한도숙 외, 「외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세제」, 한국조세연구원, 1995. 12.
- Aaron, H., "The Social Security Paradox,"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s*, Vol. 32, 1996, pp. 371~374.
- Auerbach, Alan and Laurence Kotlikoff, *Dynamic Fiscal Policy*,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Australia Tax Department, *Taxation Statistics 1992~93*, Canberra, 1994.
-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ASDI Trust Fund, *The 1993 Annual Report*, Chicago, 1993.
- Boskin, M. J., "Social Security and Retirement Decisions," *Economic Inquiry*, Vol. 15, January 1997, pp. 1~25.
- Boskin, M. J. and M. D. Hurd, "The Effect of Social Security on Early Retire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0, December 1978, pp. 361~377.
- Burkhauser, R. V., "The Early Accentance of Social Security : An Asset Maximization Approach,"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Vol. 33, July 1980, pp. 482~494.
- Burkhauser, R. and J. Quinn, "The Effect of Changes in Mandatory

- Retirement Rules on the Labor Supply of Old Workers," U. S. Department of Labor, 1980.
- CCH, *Australian Master Tax Guide*, Sydney, 1994, 1995.
- _____, *Canadian Master Tax Guide*, Toronto, 1994, 1995.
- _____, *1995 New Zealand Master Tax Guide*, Auckland, 1995.
- CCH Tax Law Editors, *1995 U.S. Master Tax Guide*, Commerce Clearing House, Inc., Chicago, November 1994, 1995, 1996.
- Chand, Sheetal and Albert Jaeger, "Aging Populations and Public Pension Schemes," Washington, D.C. : IMF, December 1996.
- Commonwealth of Australia, *Guide to The Reform of the Taxation of Superannuation*, May 1988.
- _____, *Security in Retirement*, June 1992.
- _____, *Saving for Our Future*, May 1995.
- Daykin, C. D., *Pension Provision in Britain: A Report to the European Commission by the Government Actuary*, London: HMSO, 1994.
- Denton L. T. and B. G. Spencer, "A Macro-Economic Analysis of the Effects of a Public Pension Plan,"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XIV, No. 4, 1981.
- Fields, G. S. and O. S. Mitchell, "The Effects of Social Security Reforms on Retirement Ages and Retirement Inc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5, 1984, pp. 143~159.
- Gordon, R. H. and A. S. Blinder, "Market Wages, Reservation Wages, and Retirement," *NBER Working Paper 513*, Cambridge, Mass.; NBER, 1980.
- Government Superannuation Fund, *Your GSF (Government Superannuation Fund) Pension or Allowance*, 1994.
- _____, *Retirement Information General Scheme*, 1994.

- _____, *General Scheme*, November 1994.
- _____, *Report of The Government Superannuation Fund Department*, June 1994.
- Gustman, A. J. and T. L. Steinmeier, "The 1983 Social Security Reforms and Labor Supply Adjustment of Older Individuals in the Long Ru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3, No 2, 1985.
- Hall, A. and T. R. Johnson, "The Determinants of Planned Retirement Ag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Vol. 33, No. 2, January 1980.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Basic Facts on Social Security Programs*, Hull, November 1994.
- _____, *Overview—Income Security Programs*, Ottawa, 1994.
- _____, *Inventory of Income Security Programs in Canada*, Hull, January 1993.
- _____, *Social Security Statistics Canada and Provinces, 1968~69 to 1992~93*, Hull, 1994.
- Hurd, M., "Mortality Risk and Bequests," *Econometrica*, Vol. 57, No. 4, pp. 779~813.
- International Labor Offic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bour Statistics*, Geneva, 1994
-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Geneva, February 1996.
- IRS, "Pension General Rule(Nonsimplified Method)," *Publication*, 939, January 1990.
- Kotlikoff, L. J., "Testing the Theory of Social Security and Life Cycle Accumul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9, June 1979.
- McDiarmid, Anne, *Taxation of Superannuation and Disposable Income*

- in *Retirement*, Conference Paper 94/1, Retirement Income Modeling Task Force, Canberra, 1994.
- Natioanl Social Insurance Board of Sweden, *Social Insurance Statistics—Facts*, Stockholm, 1993.
- OECD, *Ageing in OECD Countries : A Critical Policy Challenge*, Social Policy Studies No. 20, Paris, 1996.
- Office of the Superinter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Old Age Security Program*, Second Actuarial Report as at 31 December 1991, Ottawa, December 1991.
- _____, *Canada Pension Plan*, Fifteenth Actuarial Report as at 31 December 1993, Ottawa, December 1993.
- Palacios, Robert, “*International Patterns of Public Pension Coverage*,” Working Paper, Washington, D.C. : World Bank, Policy Research Department, 1994.
- Pellechio, A. J., “Estimation of Labor Supply over Kinked Budget Constraints : Some New Econometric Methodology,” *NBER Working Papers 387*, NBER, August 1979.
- _____, “Social Security and the Decision to Retire,” *NBER Working Paper 734*, August 1981.
- Quinn, J. F., “Microeconomic Determinants of Early Retirement : A Cross—Sectional View of White Married Men,”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12, Summer 1977, pp. 329~346.
- Samuelson, P. A., “The Optimum Social Security in a Life—Cycle Growth Model,”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16, pp. 539~544.
- Tachibanaki, T. and K. Shiono, “Labor Supply of the Elderly : Their Desires and Realities about Full—Time Jobs, Part—Time Jobs, Self—employed Jobs or Retirement,” 『*經濟研究*』,

- Vol. 36, No. 3, 1985.
- The World Bank, *Averting the Old Age Crisi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Understanding Social Security*, Washington, D. C., January 1995.
- _____, *A Brief Description of the U.S. Social Security Program*, March 1995.
- _____, *A Brief History of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March 1995.
- _____, *Disability*, Washington, D.C., March 1994.
- _____, *Retirement*, Washington, D.C., July 1994.
- _____, *Social Security Bulletin: Annual Statistical Supplement*, Washington, D.C., August 1994.
- _____, *Social Security Bulletin: Social Security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Vol. 56, No. 4, Washington, D.C., Winter 1993.
- _____,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93~1995*, Washington, D.C., May 1994.
- _____, *Survivors*, Washington, D.C., January 1994.
- U.S. Bureau of the Census,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Washington, D.C., 1995.
- Van den Noord, Paul and Richard Herd, "Pension Liabilities in the Seven Major Economie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142, Paris : OECD, 1993.
- Welch, F., "Effects of Cohort Size on Earnings: The Baby Boom Babies's Financial Bus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7, No. 5, 1979, pp. S65~S97.

〈附錄 I〉

〈附表 I - 1〉 主要國의 公的年金制度 國際比較

제 도		한 국		
		노령연금	장해연금	
내 용	수 급 자 요 건	60세의 20년 이상 가입자. 60~64세이고 직업이 있을 경우. 금액. 60세 이상이면서 15~19년 동안, 55~59세로서 20년 이상, 또는 1988.1.1 현재 45~59세이며 그 후 5년 동안 납입한 경우에도 각출금이 감액됨.	가입기간 동안 질병이나 상해로 장해가 된 경우로,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최소 1년 이상의 가입자.	최소 1년 이상 가입자 혹은 연금수령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와 배우자 및 자녀(18세 미만의 자녀 및 2급 장해의 경우).
	급부금	전년도 총가입자의 월평균소득과 가입기간 동안 퇴직자 월평균소득을 합한 금액의 2.4배를 지급.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5%씩 증액됨. 부양가족(자녀, 부모 및 배우자)에 대해 추가적 연금혜택을 부여. 물가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조정되며 비과세.	완전장해는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계산되고, 부분장해는 급여액이 40%까지 감액됨.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연금의 60%, 10~19년이면 50%, 9년 이하이면 40%를 지급. 기타 일시상환금, 일시사망급여 및 장례보조금 지급.
	가 입 대 상 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18~59세의 일반국민. 1995. 7. 1부터 60세 미만의 농어민과 지방 자영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5인 미만 사업장의 피용자와 60~64세의 농어민을 포함하는 자영업자 및 보험가입 사업장의 18세 미만 피용자는 임의가입. 공무원과 군인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직역연금 제도로 운영됨.		
재 원 조 달	가입자 : 초기에는 소득의 2%, 1988년 3%로 조정. 1995. 7. 1부터 농어민과 지방 자영업자는 소득의 3% 납입, 소득의 9% 까지 5년마다 3%씩 증가함. 임의가입자는 소득의 6%, 1998년부터 9%. 고용주 : 임금총액의 2%. 1988년 3%로 조정. 정부 : 운영비의 일부와 농어민의 1/3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금보조.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산하 연금관리공단		
제도행태		사회보장제도		
시행시기		1973년 법제정, 1988, 1989, 1994 개정됨.		

<附表 I -1>의 繼續

제 도	미 국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내 용	수급자격전	지급연령은 65세(62~64세는 감액), 2000~2027년에 67세까지 상향 조정됨. 가입자 : 40분기의 납입기간 만료자(1991년 이전에 62세가 된 자는 단축됨). 65세 미만인 자의 연간소득이 8,04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2달러당 1달러씩 감액되고, 65~69세의 연금수령인이 연간소득 1만 1,16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3달러당 1달러씩 감액됨.	사고로 적어도 1년 이상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 혹은 사망자. 가입자 : 21세부터 장해 발생시점까지 매년 1분기씩 최대 40분기의 납입기간을 채워야 함. 또는 장해 발생시점 이전 10년간 20분기. 미성년자와 시각장애인의 경우 자격요건이 완화됨.	사망자가 연금수령인이거나 21세 이후 및 사망연도 이전까지 매년 1분기씩 납입하여 최대 40분기의 납입기간을 만료한 경우, 고אי이거나 적격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미망인은 사망연도 이전 13분기 중 6분기의 납입기간을 채워야 함.
	금부금	1950년부터(이후 21세부터) 62세 혹은 사망시까지 최저소득을 취득한 5년을 제외하고 가입기간의 소득평균에 근거함. 연금은 62세에 지급하며, 65세 미만이면 감액. 65~69세인 자가 은퇴를 연기할 경우 매달 수령액이 증액되고 증액액수는 62세가 된 연도에 따라 달라짐. 연금은 생활비에 따라 자동조정되며, 기타 부양수당도 지급.	1950년부터(이후 21세부터) 장해 발생시점까지 최저소득을 취득한 5년을 제외하고 가입기간 소득평균에 근거함. 생활비 정산에 따라 연동되며, 부양수당도 지급	65세에 사망근로자의 연금 100%를 수령. 60~64세이면 감액되며, 50~59세에 장애를 입게 되어도 감액된 연금 지급. 결혼기간이 10년이면 배우자 혹은 이혼한 생존 배우자에게도 지급하고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근로자 연금의 75%를 지급. 기타 고אי나 부양부모에 대한 급여가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실업구제수당 지급.
	가입대상자	자영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 종사자. 농업 및 국내직종의 임시 종사자와 연간 순수입이 400달러 미만인 자영업자, 그리고 1984년 이전에 고용된 연방공무원 은 제외됨. 주·지방정부 공무원과 성직자는 임의가입. 1991. 7. 1부터 퇴직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미국, 푸에르토리코, 노던 마리아나아일랜드, 버진아일랜드, 괌, 사모아 및 미국인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국외거주자도 대상이 되며, 철도종사자, 연방공무원 및 주·지방정부 공무원들은 별도의 제도에 따름.		
	재원조달	가입자 : 소득의 6.2%, 자영업자는 12.4%. 고용주 : 임금총액의 6.2%. 정부 : 1968년 이전에는 72세 노인에게 특별 월노령급여의 비용 부담. 실업구제수당 전액 보조. 분담금 각출 및 급여지급을 위한 최대소득은 연간 6만 1,200달러. 각출금은 임금수준에 따라 조정됨.		
운영기관	사회보장성(1995. 3. 30부터 행정부의 독립된 정부기관으로 관련 행정부문 담당), 재무부(IRS를 통한 사회보장세 징수, 급여지급, 기금운영)			
제도형태	사회보험제도			
시행기시	1935년 법제정 후 수차례정됨.			

<附表 I -1>의 繼續

		영 국		
제 도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내	수 자 요 건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1975. 4 이전 50주의 각출금 납부나, 1975. 4~1978. 4에는 주 최소분담금의 50배 (이후 52배) 소득에 대해 각출금을 납부하였음. 납부기간은 근로기간(여자는 44년, 남자는 49년)의 약 9/10는 되어야 하며 교육 및 실직기간도 인정됨.	최저소득의 25배 또는 수혜연도 이전의 2년에 걸쳐 최저소득의 50배 소득에 대해 각출금 납부. 수당은 장해발생 후 52주가 지난 뒤 지급. 장해발생시점이 45세인 경우 연령에 대한 보조수당도 지급되며, 기타 중증장애수당, 장애인생활수당, 간호수당, 장애인근로수당, 질병간호수당 등도 지급됨.	사망자가 노령연금의 납입기간을 채웠거나 사망당시 연금수령인이었을 경우. 기타 미망인 자녀양육수당과 부모에 대한 소득보조가 있음.
	급부금	주당 최고 58.85파운드. 부양보조로 주 35.25(성인), 9.85파운드(자녀)를 지급하고 주 35.25파운드의 노인연금과 8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주 0.25파운드의 연령보조수당도 지급. 퇴직연기에 따라 연금이 증액되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소득보조.	주당 57.6파운드에 장해발생연령에 따라 3.8, 7.6, 12.15파운드를 추가지급. 연속적으로 근로능력상실이 있을 뒤 53번째주 혹은 단기 근로능력 상실급여를 지급받은 뒤 최소 28주간 심각할 때 지급. 주 58.85파운드에 부양가족은 주 35.25파운드, 자녀는 9.85~11.05파운드씩 추가지급.	미망인 자녀양육수당으로 주당 58.85파운드에 한 자녀는 9.85파운드, 여러 명은 11.05파운드를 일괄적으로 추가지급. 기타 미망인 연금, 미망인 보상, 복지수당, 소득보조도 실시.
용	가 입 대 상 자	일반국민. 소득이 주 58파운드 이하인 근로자와 연간 최저수준 이하의 수입을 얻고 있는 자영업자 및 무직자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피용자와 고용주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수입과 연계된 연금제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재 원 조 달	가입자 : 근로자는 먼저 주급 58파운드에 대해서 2%, 58~440파운드의 소득의 10%. 소득비례부문의 적용제외의 경우, 58~440파운드의 소득에 대해 8.2%. 자영업자는 주 5.75파운드와 연간소득 6,640~22,880파운드의 7.3%를 납부하며 추가로 주 5.65파운드의 공채를 더 납부할 수 있음. 고용주 :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따라 3~10.2%를 징수. 소득비례 계약 적용제외의 경우 2~10.2% 정부 : 자산조사 관련 사회복지급여 전액과 기타 각출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금액을 부담함.		
운영기관	사회보장기구, 사회보장기금부			
제도형태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제도로 이원화			
시행시기	1908년 노령연금, 1911년 장해보험, 1925년 노령 및 유족보험 등에 대한 법제정으로 시작됨. 현행법은 1992년의 통합입법.			

<附表 I -1>의 繼續

제 도	일 본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수 급 자 적 요 건	<p>국민연금제도 : 65세, 가입기간 25년. 60~64세인 경우 보험통계상의 감액률을 적용하여 지급. 66세 이후에 처음으로 지급받을 경우, 연금은 증액됨.</p> <p>근로자연급보험 : 남자는 60세 여자는 58세, 어업 및 광업종사자는 55세. 가입기간 5년. 직역이 있는 60~64세인 자는 각 출금 감액.</p>	<p>국민연금제도 :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1급장해와 일상생활이 극히 불편한 2급장해로 분류. 20세부터 장해발생시점까지의 2/3기간 동안 각출금 납부.</p> <p>근로자연급보험 : 1, 2급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제도와 동일, 3급장해 해당.</p>	<p>국민연금제도 : 사망자가 사망시점에 연금수령자이거나 가입자였을 경우, 또는 20세부터 사망시점까지의 2/3기간 동안 각출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근로자연급보험 : 사망자가 사망당시에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노령자 연금 및 장해연금의 수령자였을 경우.</p>
내 금부금	<p>국민연금제도 : 480개월의 완납자는 연 78만 5,550엔. 자영업자는 납부월수마다 200엔 추가지급. 60~64세면 감액, 66세 이상은 증액.</p> <p>근로자연급보험 : 월급여의 0.75%에 가입개월수를 곱하여 지급. 60~64세면 가입개월수마다 추가로 월 1,625엔 지급. 배우자는 월 1만 8,833엔, 두 자녀에게 각각 1만 8,833엔, 추가 한 자녀당 6,725엔 지급.</p>	<p>국민연금제도 : 1급은 연간 98만 1,900엔, 2급은 78만 5,500엔. 부양가족 추가보조로 두 자녀에게 각각 연 22만 6천엔, 추가 한 자녀당 7만 5,300엔 지급.</p> <p>근로자연급보험 : 1급은 노령연금의 125%에 부양가족 추가급여, 2급은 노령자 연금의 100%에 부양가족 추가급여, 3급은 연간 최소 58만 9,100엔에 노령자 연금의 100% 지급.</p>	<p>국민연금제도 : 미망인은 연간 78만 5,500엔. 고아는 부양가족 추가보조 지급. 양친 모두 없는 고아는 미망인 연금 78만 5,500엔에 부양가족 추가보조 지급.</p> <p>근로자연급보험 : 가입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75%를 55세 이상의 배우자, 고아, 55세 이상의 부모, 손자손, 55세 이상의 조부모에게 지급.</p>
용 가 입 대상자	<p>국민연금제도 : 20~59세의 일반국민. 60~64세인 자와 20~64세의 해외거주자는 임의 가입.</p> <p>근로자연급보험 : 제조업, 상업 및 어업 종사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및 고용원, 농림수산업 조합의 피용자는 특별제도의 적용을 받음.</p>		
재 원 조 달	<p>국민연금제도 : 가입자 : 고용연계제도에 가입한 피용자 포함, 피용자 및 배우자. 고용주 : 고용연계제도에 각출금을 납부하는 고용주. 정부 : 급여 총당비용의 33~1/3%에 운영비 보조.</p> <p>근로자연급보험 : 가입자 : 30개의 임금계층에 따라 소득의 8.250%를 납부. 광업 및 어업종사자는 9.15%. 특별 추가보험료로 상여금의 0.5%를 납부하고, 적용제의 경우 소득의 3.2%~3.8% 납부. 고용주 : 가입자와 동일. 정부 : 운영비 부담. 분담금 납부 및 급여혜택을 위한 최대소득은 월 59만엔, 최저소득은 9만 2천엔임.</p>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보험기구		
제도형태	국민연금제도와 근로자연급보험의 이원적인 사회보험제도		
시행시기	1941년 근로자연급보험 제정. 1944년, 1959년, 1985년의 개정이 있었음.		

<附表 I -1>의 繼續

캐 나 다				
제 도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내 용	수급 자격 요건	기초연금의 대상이 아 님 소득비례연금: 60세 미만이면 심하거나 장 기간 근로능력을 상실 시, 60~64세는 통상 의 직업을 가질 수 없 을 때 지급. 각출금 납 부기간은 최근 3년 중 2년, 최근 10년 중 5 년, 장해발생 직전에 납부연수의 1/2(최소 3년).	기초연금의 대상이 아 님 소득비례연금: 각출금 의 납부기간이 10년 미 만 혹은 납부해야 할 연수의 1/2(최소 3년 이상)이 되어야 함. 국 외에도 지불가능.	
	급부금	기초연금: 월 381.6캐 나다달러. 소득보조는 일반연금을 합하여 한 사람에게 최대 835.9 캐나다달러, 부부에게 는 1,353.98캐나다달러 까지 지급. 소득연계연금: 가입기 간 평균임금의 25%를 지급. 은퇴 지연시 70 세까지 지연월수에 0.5 %씩 증액. 결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연금수급 권은 균등분배.	소득비례연금: 월 318.26달러에 은퇴연금 의 75% 지급. 자녀보조: 18세 미만 (학생은 25세)의 각 자녀에게 월 161.27달 러 지급.	소득비례연금: 사망자 를 65세로 보고 연금의 65%를 65세 이상의 생존 배우자에게 최고 월 427.91달러, 45세 미만이고 장해 및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81.52달러, 부양자녀가 있으면 295.51달러, 장 해가 있으면 318.26달 러, 55~65세이면 399.59달러에 은퇴연금 의 37.5%를 지급.
	가입 대상자	기초연금: 일반국민(고독자는 연금회수) 소득비례연금: 근로자 및 자영업자(소득이 연간 3,400달러 이상) 임시피용자 및 단시간 고용된 농업노동자는 제외됨.		
	재원 조달	가입자: 기초연금은 소득공제 없음. 소득비례연금은 근로자가 소득의 2.7%, 자영업자는 5.4% 납부. 고용주: 일반연금의 각출금은 없고, 소득비례연금은 임금총액의 2.7%. 정부: 기초연금 및 실업구체보조의 모든 비용부담. 연금제도의 수혜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소득은 연간 3,400캐나다달러, 최대소득은 연간 3만 4,900캐나다달러.		
운영기관	인적자원개발부, 국세청(소득비례 연금보험료 징수)			
제도형태	일반연금과 사회보험의 이원적 체제로 운영됨.			
시행시기	1927년 입법. 현행법은 1951년, 1965년, 1966년 개정.			

<附表 I -1>의 繼續

		프 랑 스		
제 도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내	수급자격요건	65세(장해자나 근로여성 60세)에 150분기, 혹은 60세이면서 152분기 납입자. 납입기간이 150분기 미만이면 연금은 비례적으로 감액됨. 의무납입기간은 매년 증가하여 1942년 이후 출생한 퇴직자는 2003. 1. 1에 160분기까지 증가됨. 152분기 미만이면 비례적 감액외에도 추가적인 연금감액이 있음.	60세 미만, 완전장해이거나 2/3의 근로능력을 상실한 자. 장해발생 이전 12개월의 보험가입 및 최근 12개월중 800시간의 근로시간(12개월의 최초 3개월간 200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이 있는 경우.	사망자가 노령연금이나 장해연금의 보험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사망시 연금수령자였을 경우. 생존배우자 수당: 사망자가 이 기금의 가입자였거나 사망시 기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였을 경우.
	급부금	1947년 이후 소득이 가장 높은 10년간 평균 소득의 50%를 수령. 최소연금은 연간 3만 7,136프랑, 최대연금은 7만 7,580프랑. 60분기이면 연간 최소 1만 6,010프랑이고 그 밖의 경우는 비례적으로 감액됨. 기타 배우자보조, 노령수당, 빈곤수당, 간호수당 등이 지급됨.	완전장해는 최고소득을 취득한 10년간 평균금의 50%를 지급. 최소연금은 연 1만 6,527프랑, 최대연금은 연 7만 7,580프랑. 부분장해는 소득의 30%로 최대 4만 6,548프랑. 기타 간호보조수당, 빈곤수당이 있음.	55세에 가입자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52%를 미망인(자녀가 있는 경우 50세),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 장해자는 연령에 상관없음. 자녀를 갖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전 2년의 결혼기간이 있어야 함. 적격 배우자가 1인 이상일 경우 연금은 비례적으로 분배됨. 최소연금은 연간 16,010프랑.
용	가입대상자	피용자. 농업, 광업, 철도업,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 종사자, 어업종사자, 비농 자영업자, 농업 자영업자 등은 특별제도의 적용을 받음. 비근로 주부(노령연금만 해당), 장해친족을 돌보는 무직자는 임의가입. 가족보조수당을 수령하는 여자는 노령연금에 의무가입.		
	재원조달	가입자: 연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6.55%. 1991년 종합사회보험담금으로 총소득의 1.1%를 추가 부담하고 1993. 7 2.4%로 인상됨 고용주: 임금총액의 8.2% 정부: 부담 안함. 기금자출을 위한 최대소득은 월 1만 2,930프랑(1995. 7 1만 3,060프랑). 장해 및 유족급여는 질병 및 출산프로그램에 의해 기금이 조성됨.		
운영기관	사회노동부, 국민노령연금기금, 국민보건보험기금			
제도형태	사회보험제도 및 강제적 사적(개인)연금제도			
시행시기	1910년에 최초 입법. 1945년, 1967년, 1971년, 1980년 개정.			

<附表 I -1>의 繼續

		독 일		
제 도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내 용	수 급 자 격 요 건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포괄적인 장해자 및 통상 소득의 50%를 상실한 직업장해자. 60개월간 완납하고 지난 5년중 36개월의 납입기간을 채워야 하고, 최소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납입기간은 25년.	사망자가 60개월의 납입기간을 채우거나 사망당시 연금수령자였을 경우. 배우자는 남자인 경우 65세, 여자는 60세에 수령. 신체장해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일찍 수령할 수 있음.	
	금부금	연금계산은 '1년간의 납입기간 평균소득에 상응하는 월연금수령액 (연금가치, 1995. 1 : 46마르크) × 연금지수 1 × 소득포인트 (가입자 연평균소득)'. 65세 이후 은퇴를 지연한 경우, 연금률이 1포인트 증가하고 매달 0.005 포인트씩 상승함.	포괄적인 장해는 노령급여와 수령액이 동일. 직업상의 장해는 연금지수가 0.667포인트. 장해가 55세 이전에 발생시, 장해발생시점부터 55세까지의 모든 기간 (또한 55~60세부터 최대 20개월까지의 기간의 1/3 동안)이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됨.	노령연금과 동일. 3개월간 가입자 연금의 100% 지급. 그 후 45세이고 장해나 자녀가 있으면 60%, 기타의 경우는 25% 지급. 고아는 포괄적 장해연금에서 10%, 양친이 모두 없으면 20% 지급. 견습생이고 순소득이 최저한도 이하이면 18~25세에도 지급가능. 고소득자는 연금의 40%를 환수함.
	가 입 대 상 자	견습생을 포함하는 피용자, 일부 자영업자, 자녀양육공제 수령자, 실업급여 등 사회적 급여의 수령자, 1995. 4. 1 이후 양육수당의 수령자. 임금소득자에게는 동일한 법조항에 따라 별도 제도의 적용을 받음. 자영업자, 광업종사자, 공무원 및 농업종사자 등에게는 특별제도가 운영됨. 현재의 의무가입보험에서 제외된 16세 이상인 자, 국외거주 독일인 혹은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는 임의가입이 허용됨.		
재 원 조 달	가입자 : 소득의 9.3% 납입, 소득이 월 610마르크(동독지역은 500마르크) 이하이면 면제. 자영업자는 18.6%. 고용주 : 임금총액의 9.3%, 피용자의 소득이 월 610마르크(동독은 500마르크) 이하이면 18.6%. 정부 : 연금보험 총비용의 20% 보조. 각출금 납입에 대한 소득상한은 연 9만 3,600마르크(동독은 76,800마르크), 소득하한은 월 580마르크(동독은 470 마르크)임.			
운영기관	연방사회노동부, 23개 주 및 2개 특별기관, 연방근로보험기관, 보건기금			
제도형태	사회보험제도			
시행시기	1889년 최초입법. 1911년, 1957, 1973년 개정됨.			

<附表 I -1>의 繼續

		스웨덴		
제 도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내	수급자격요건	65세(60~64세이면 월 0.5% 감액). 기초연금: 각출금 납입은 없으며 3년간 국내거주하거나 연금포인트를 얻어야 함. 완전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16~64세에 40년간 거주하거나 연금포인트가 부여되는 30년간 거주해야 함. 거주기간 미달 1개월당 1/40 혹은 1/30만큼 연금이 감액됨. 소득비례 연금: 3년간의 납입기간 필요. 부분연금: 60~64세. 파트타임 노동에 대해 지급.	두 연금제도 모두 장해연금을 실시함. 장해연금은 완전연금, 연금의 3/4, 1/2, 1/4 등으로 차등지급될 수 있음.	기초연금: 생존한 배우자와 특정 연령의 고아가 대상. 노령연금에서와 같은 거주조건을 충족해야 함. 소득비례 연금: 사망자가 연금수령자였거나 3년간의 납입기간을 충족시켰을 경우.
	급부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소득의 98%에 거주조건에 따라 조정됨. 노령부부는 157% 지급. 70세까지 은퇴를 지연하면 1개월당 0.7%씩 증액됨. 소득비례 연금: 기초소득의 60%에 15년간의 연평균 연금지수를 곱함. 은퇴지연시 증액. 부분연금: 파트타임 노동으로 전환됨에 따른 소득상실액의 65%를 지급.	기초장해연금: 기초소득의 96%에 거주조건 조정. 부부는 157% 지급. 소득비례 연금: 65세까지 부여되는 세금공제를 제외하고는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계산됨. 부분장해는 완전연금의 3/4, 1/2, 1/4를 지급.	기초유족연금: 최소 5년간 동거하거나 자녀가 12세 미만인 경우 1년간 조정연금 지급. 연금 최고한도는 기초소득의 96%. 질병, 실업인 경우 특별유족연금 지급. 고아는 18세(학생인 경우 20세)에 기초소득의 25%, 양친이 모두 없으면 50%. 소득비례 유족연금: 사망자가 수령할 연금의 40%까지 1년간 조정연금 지급. 고아는 사망자가 수령할 연금의 30% 지급(1명당 20%씩 증액됨)
	용	가입대상자	기초연금: 거주 및 고용에 관한 규정기간을 충족한 국내거주자. 소득비례 연금: 기초소득 이상의 소득을 취득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 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외국에서 근로하는 기간도 보험기간에 포함됨. 국내에서 외국인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됨.	
	채원조달	가입자: 기초연금으로 피용자는 과세대상소득의 1%(기초소득의 7.5배까지). 자영업자는 6.03%(기초소득의 7.5배까지). 소득비례 및 부분연금으로 피용자는 부담하지 않으며, 자영업자는 고용주 각출금과 동일. 고용주: 기초연금은 임금총액의 5.83%. 소득비례연금은 임금총액의 13%. 부분연금은 임금총액의 0.2% 정부: 기초연금 비용의 약 25%. 소득비례 및 부분연금은 보조 포함.		
	운영기관	사회보장위원회, 각급 지역 사회보장기관 4개의 삼부위원회		
	제도형태	일반 및 사회보험제도의 이원적 체제.		
	시행시기	1913년 제정. 현행법은 1962년, 1976년.		

<附表 I -1>의 繼續

		호 주		
제 도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수 급 자 요 건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국내에 10년간 계속 거주하여야 하고 총거주연수가 1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5년간 계속 거주하여야 함. 완전한 시력상실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대상자는 자산조사 대상임.	남자는 16~65세, 여자는 16~60세. 장해 또는 시력상실로 근로능력을 상실시, 장해수준이 최소 20%인 경우. 일반국민 혹은 연금신청시 국내거주자에 한함. 장해자가 연금수령인이고 부인이 21세 이상이며 자녀가 없을 경우 부인연금 지급. 간호연금 : 사회보장연금 수령자를 간호하고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생존배우자로서 가족수당제도의 부모연금 수급권자. 자녀가 없는 1987. 7. 1에 50세의 미망인은 미망인수당 지급. 사망당시 배우자가 국내거주자이면 최소거주요건이 필요없음. 기타의 경우, 연금신청 직전 5년간 계속 거주하거나 어느 시점이든 10년간 계속 거주하여야 함.	
	내 용	독신은 주 160.8 호주 달러, 부부는 268.2달러까지 지급. 부인연금 : 주 134.1달러까지 지급. 부양자녀는 가족수당제도를 통해 지급. 결혼여부와 임대수준에 따라 43.4달러까지 임대보조. 은퇴자 거주자의 거주자는 특별규정이 적용됨. 간호연금 : 160.8달러까지 (배우자이면 134.1달러). 僻地手當 : 독신이면 주 8.75달러, 부부는 15달러, 자녀 1명당 3.5달러 추가. 가족당 2.6달러의 의약품 보조.	노령연금과 동일. 21세 미만의 장해연금수령자는 주 34.15달러의 청소년 장애보조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부인연금, 임대지원, 간호연금, 벽지 보조도 실시	유족연금 : 독신 노령연금과 동일. 자녀는 가족수당제도 (자산조사 실시)를 통해 보조받음. 임대지원 : 노령연금과 동일. 사망보조금 : 연금수령인의 사망시 그 배우자나 양친이 없는 자녀 및 간병인에게 14주에 상당하는 연금액 지급. 독신 연금수령인의 사망시, 한번의 연금지급액은 유산으로 남겨짐.
가 입 대 상 자	일반국민			
재 원 조 달	가입자 : 부담없음. 고용주 : 부담없음. 정부 : 일반세입으로 모든 비용 충당			
운 영 기 관	사회보장부			
제 도 형 태	기초연금제도 및 사회의 이원적 체제			
시 행 시 기	1908년 법제정, 현행법은 1991년.			

<附表 I -1>의 繼續

		뉴 질 랜 드		
제 도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내 용	수 급 자 격 요 건	뉴질랜드 연금제도 : 현재의 대상 연령은 62세이나 2001년까지 65세로 상승됨. 20세 이후 10년간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50세 이후부터는 5년간 거주해야 함. 부적격 배자와 결혼한 연금수령자를 제외하고는 소득평가 및 퇴직평가를 하지 않으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초과세를 납부해야 함.	질병급여 : 영구적이거나 심각한 근로능력의 제약 혹은 완전 시력상실의 경우. 최근 10년간 국내에 거주해야 함. 시각장해자를 제외하고는 소득평가 실시함. 16세 이상이어야 함.	미망인급여 : 재분화된 범주의 미망인 혹은 고아(고아급여). 최근 3~5년간 국내에 거주해야 하고 자산조사를 실시함.
	급부금	독신자는 주 234.14 뉴질랜드달러 지급(동거는 총 213.62달러). 노령부부는 348.16달러. 부적격 배우자를 둔 수령인은 소득평가가 없는 1/2의 결혼급수나 소득평가를 실시하는 완전 결혼급수 중 선택 가능. 연금은 과세대상이며 고소득의 퇴직제도 가입자는 과징금 부담.(독신은 4,160달러, 부부는 6,240달러를 상회하는 연간소득의 20%)	독신은 주 168.13달러, 부부는 280.58달러, 18세 미만인 자는 136.23달러까지 지급. 시각장해자 제외, 연소득 2,600달러(자녀 있으면 3,120달러)를 초과하는 독신자는 감액. 부양자녀에 대해서는 추가적 보조가 있음. 미성년급부 : 16~17세. 136.23달러.	미망인에게 140.29달러까지 지급. 연소득이 2,600달러를 초과시(자녀가 있으면 3,120달러) 감액. 연금은 과세대상. 18세 미만의 고아 각각에 대해 주 84.17달러 지급. 유족정착금으로 사망한 노령 또는 장해 연금수령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4주 상당의 연금을 일시지급. 장례비용으로 1천달러.
	가 입 대 상 자	일반국민. 정부퇴직제도에는 신규가입이 허용되지 않음. 이 제도는 통상적인 임의가입의 고용주부담 퇴직제도와 유사함. 1993년에 광업종사자 급여가 폐지됨. 이 제도는 다른 제도로 대체되었고 폐지당시 수혜자는 없었음.		
	재 원 조 달	가입자 : 부담없음. 고용주 : 부담없음. 정부 : 일반세입에서 모든 비용을 충당. 정부의 일반세입은 질병, 출산 및 실업급여와 가족수당에도 충당됨.		
운영기관	사회복지부 산하 뉴질랜드 소득지원기구			
시행시기	1898년 법제정. 현행법은 1990년의 국민연금제도 법안. 1994년에 뉴질랜드 연금제도로 개명.			

資料 : Social Security Administrator,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93~1995, July 1995.

〈附錄 II〉

〈附表 II-1〉 政策代案別 資源配分 I [60世代(21~80歲)]
($gr=0.03$ $\gamma=0.20$ $\rho=0.83$ $\alpha=2.1$)

	국민연금 부채					현행방식					연금각출률 인상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1985	131.2	14.73	1.000	5.53	45.71	131.2	14.73	1.000	5.53	45.71	131.1	14.74	1.000	5.54	45.69	131.2	14.73	1.000	5.53	45.71
1995	176.9	18.29	1.027	5.23	42.38	176.2	17.77	1.036	5.15	42.57	176.7	17.83	1.036	5.15	42.87	176.2	17.77	1.036	5.15	42.56
2015	254.1	20.90	1.108	4.49	35.95	233.5	19.78	1.097	4.58	34.93	237.2	19.50	1.109	4.49	35.69	233.2	19.76	1.097	4.58	34.85
2025	269.7	20.33	1.140	4.23	31.73	233.0	19.17	1.108	4.49	29.29	236.3	19.02	1.116	4.43	30.57	232.5	19.16	1.107	4.49	29.24
2030	269.3	19.72	1.151	4.15	29.26	225.2	18.54	1.108	4.49	25.87	228.1	18.45	1.115	4.44	27.41	224.7	18.55	1.107	4.50	25.89
2045	246.7	17.47	1.164	4.06	26.42	188.7	15.89	1.099	4.56	21.24	189.5	16.26	1.093	4.62	22.78	189.7	14.93	1.124	4.36	20.07
2060	223.8	15.93	1.162	4.07	27.84	161.9	14.55	1.076	4.76	23.21	160.7	14.72	1.070	4.83	23.25	158.5	14.38	1.073	4.79	22.20
2085	200.9	14.96	1.145	4.20	29.86	140.1	13.87	1.042	5.08	26.14	137.8	13.80	1.039	5.12	25.74	133.7	13.82	1.028	5.23	25.60
2134	197.0	14.93	1.138	4.25	30.97	139.6	13.85	1.041	5.09	27.28	136.1	13.80	1.035	5.17	27.02	134.2	13.79	1.030	5.21	27.11
	연금과세					급여개시연령 상향조정					소득추계제도 강화					정책조합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1985	131.2	14.73	1.000	5.53	45.71	131.2	14.73	1.000	5.53	45.71	131.2	14.73	1.000	5.53	45.71	131.1	14.74	1.000	5.54	45.69
1995	176.6	17.81	1.036	5.15	42.75	177.2	17.87	1.036	5.14	43.00	177.5	17.90	1.036	5.14	43.15	177.5	17.89	1.037	5.15	43.13
2015	236.0	19.87	1.100	4.56	35.39	239.4	20.01	1.102	4.54	36.04	241.4	20.09	1.104	4.52	36.43	241.0	20.06	1.104	4.53	36.28
2025	236.9	19.28	1.112	4.46	29.97	241.8	19.44	1.117	4.42	30.90	245.2	19.54	1.120	4.39	31.48	244.0	19.47	1.120	4.40	31.21
2030	229.7	18.65	1.113	4.45	26.68	235.1	18.81	1.118	4.41	27.75	239.2	18.92	1.122	4.37	28.45	237.6	18.86	1.122	4.39	28.05
2045	193.9	16.40	1.098	4.57	21.88	199.3	16.53	1.105	4.51	23.07	204.3	16.63	1.112	4.46	24.01	207.9	16.57	1.110	4.48	23.45
2060	167.2	14.67	1.085	4.69	23.64	171.7	14.78	1.092	4.63	23.90	176.1	15.05	1.094	4.61	24.38	173.9	15.01	1.091	4.64	23.88
2085	144.9	13.96	1.052	4.99	26.42	148.6	14.05	1.058	4.93	26.50	152.0	14.09	1.065	4.86	26.63	150.4	14.06	1.063	4.89	26.57
2134	143.9	13.94	1.050	5.01	27.59	147.0	14.04	1.055	4.96	27.76	149.5	14.10	1.059	4.92	27.92	148.4	14.06	1.058	4.94	27.85

<附表 II-2> 政策代案別 適用稅率 比較 I [60世代(21~80歲)]

(gr=0.03 γ=0.20 ρ=0.83 α=2.1)

(단위: %)

	국민연금 부재				현행 방식				연금각출률 인상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소비세율	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연금각출률	소비세율	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연금각출률	소비세율	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연금각출률	소비세율	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연금각출률
198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95	0	0	0	0	0	0	0	6.00	0	0	0	6.00	0	0	0	6.00
2015	0	0	0	0	0	0	0	9.00	0	0	0	13.00	0	0	0	9.00
2025	0	0	0	0	0	0	0	9.00	0	0	0	13.00	0	0	0	9.00
2030	0	0	0	0	0	0	0	9.00	0	0	0	13.00	0	0	0	9.00
2045	0	0	0	0	2.86	2.03	0.53	9.00	0	0	0	13.00	2.83	2.04	0.53	18.74
2060	0	0	0	0	3.14	2.17	0.56	9.00	0	0	0	13.00	0	0	0	16.70
2085	0	0	0	0	2.55	1.70	0.44	9.00	0.83	5.57	0.14	13.00	0	0	0	14.96
2134	0	0	0	0	2.17	1.42	0.37	9.00	0.45	2.94	0.08	13.00	0	0	0	14.46
	연금과세				급여개시연령 상향조정				소득추계제도 강화				정책조합			
198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95	0	0	0	6.00	0	0	0	6.00	0	0	0	6.00	0	0	0	6.00
2015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2025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203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2045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2060	2.44	1.68	0.44	9.00	1.70	1.17	0.30	9.00	0	0	0	9.00	0	0	0	9.00
2085	1.88	1.24	0.32	9.00	1.21	0.80	0.21	9.00	0.84	0.55	0.14	9.00	1.08	0.71	0.18	9.00
2134	1.54	1.00	0.26	9.00	0.86	0.56	0.14	9.00	0.49	0.32	0.08	9.00	0.74	0.48	0.13	9.00

<附表 II-3> 年金政策의 厚生效果 比較 I [60世代(21~80歲)]

($gr=0.03$ $\gamma=0.20$ $\rho=0.83$ $\alpha=2.1$)

(단위 : %)

세 대	후 생 효 과							
	국민연금 부재	현행방식	연금각출률 인상	부과방식으로 전환	연금과세	급여개시연령 상향조정	소득추계제도강화	정책조합
-59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	99.40	99.08	99.04	99.08	99.07	99.06	99.05	99.05
-18	99.31	98.91	98.87	98.92	98.90	98.89	98.88	98.88
-10	98.99	99.56	99.45	99.56	99.41	99.23	99.14	99.19
1	98.84	99.42	99.13	99.43	99.21	98.93	98.75	98.87
20	99.46	99.46	98.96	99.72	99.35	99.19	99.03	99.16
60	100.27	98.39	98.52	97.93	98.67	98.95	99.14	99.06
80	100.22	98.26	98.09	97.79	98.47	98.60	98.78	98.68
150	100.06	98.32	98.09	97.90	98.49	98.61	98.70	98.66

<附表 II -4> 年金受給과 釀出金の 比較 I [60世代(21~80歲)]

($gr=0.03$ $\gamma=0.20$ $\rho=0.83$ $\alpha=2.1$)

세 대	연금수급의 현재가치/연금각출금의 현재가치							
	국민연금 부재	현행 방식	연금각출금인상	부과방식으로전환	연 금 과 세	급여개시연령상향조정	소득추계제도강화	정 책 조 합
-20	0	2.001	2.027	2.000	1.800	1.510	1.376	0
-15	0	1.636	1.562	1.635	1.474	1.240	1.132	1.221
-5	0	1.406	1.288	1.405	1.269	1.070	0.946	1.040
25	0	1.003	0.774	1.005	0.908	0.770	0.685	0.751
45	0	0.968	0.650	0.784	0.876	0.733	0.678	0.730
60	0	0.947	0.628	0.569	0.861	0.719	0.658	0.711
120	0	0.896	0.594	0.537	0.816	0.683	0.626	0.676

<附表 II-5> 政策代案別 資源配分 II [60世代(21~80歲)]

($gr=0$ $\gamma=0.25$ $\rho=0.83$ $\alpha=2.1$)

	국민연금 부채					현행방식					연금각출물 인상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1985	121.5	14.01	1.000	5.68	28.79	121.5	14.01	1.000	5.686	28.79	121.6	14.02	1.000	5.68	28.82	121.5	14.01	1.000	5.68	19.96
1995	162.8	17.43	1.025	5.40	23.87	164.2	17.05	1.035	5.292	24.86	164.6	17.09	1.035	5.29	25.10	164.2	17.04	1.035	5.29	21.48
2015	231.3	20.50	1.091	4.76	15.17	220.8	19.86	1.085	4.81	16.44	224.8	19.54	1.098	4.70	17.13	220.3	19.87	1.084	4.82	20.74
2025	246.9	20.36	1.117	4.54	10.34	220.1	19.68	1.088	4.79	10.27	224.9	19.57	1.097	4.70	12.00	220.2	19.79	1.086	4.80	17.17
2030	247.4	19.88	1.127	4.46	7.53	211.3	19.13	1.083	4.83	6.19	216.4	19.10	1.092	4.75	8.47	212.8	19.35	1.082	4.84	14.16
2045	227.6	17.74	1.138	4.37	4.66	169.9	15.44	1.082	4.84	-0.43	173.0	16.78	1.058	5.06	2.00	173.0	14.40	1.114	4.56	5.52
2060	205.9	16.13	1.136	4.38	6.44	138.6	14.49	1.033	5.32	3.55	139.8	14.32	1.040	5.25	3.14	134.1	14.44	1.023	5.42	10.00
2085	184.6	14.94	1.124	4.48	8.706	114.9	13.87	0.985	5.86	8.36	113.8	13.81	0.983	5.87	7.96	107.2	13.94	0.961	6.16	14.250
2134	181.5	14.89	1.119	4.52	10.03	116.3	13.84	0.990	5.80	9.57	113.8	13.81	0.983	5.87	9.59	111.8	13.91	0.975	5.98	15.83
	연금과세					급여개시연령 상향조정					소득추계제도 강화					정책조합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1985	121.5	14.01	1.000	5.68	28.79	121.5	14.01	1.000	5.68	28.79	121.5	14.01	1.000	5.68	28.79	121.6	14.02	1.000	5.68	45.69
1995	164.5	17.07	1.035	5.29	25.01	164.9	17.11	1.036	5.29	25.22	165.2	17.13	1.036	5.29	25.37	165.2	17.12	1.036	5.29	43.13
2015	223.1	19.93	1.088	4.79	16.88	226.5	20.04	1.091	4.76	17.59	228.8	20.11	1.094	4.74	18.04	228.2	20.09	1.093	4.74	36.28
2025	224.3	19.79	1.092	4.75	11.05	229.8	19.95	1.098	4.69	12.20	234.3	20.06	1.103	4.65	13.00	232.7	20.00	1.102	4.66	31.21
2030	216.4	19.25	1.089	4.77	7.21	222.8	19.43	1.097	4.71	8.61	228.3	19.56	1.103	4.65	9.64	226.1	19.49	1.101	4.67	28.05
2045	176.3	16.03	1.081	4.85	0.32	182.6	17.01	1.073	4.92	2.07	190.2	17.17	1.084	4.82	3.79	186.7	17.09	1.079	4.86	23.45
2060	145.4	14.61	1.046	5.18	3.71	150.7	14.65	1.058	5.07	3.55	157.7	14.73	1.072	4.93	3.60	154.4	14.68	1.066	4.99	23.88
2085	120.9	13.97	0.999	5.69	8.27	124.5	14.02	1.008	5.59	8.04	130.3	14.08	1.022	5.442	7.86	127.5	14.05	1.015	5.51	26.57
2134	121.4	13.94	1.001	5.66	9.62	124.2	14.02	1.007	5.60	9.62	128.6	14.11	1.017	5.496	9.65	126.4	14.06	1.012	5.54	27.85

<附表 II-6> 政策代案別 適用稅率 比較 II [60世代(21~80歲)]

(gr=0 $\gamma=0.25$ $\rho=0.83$ $\alpha=2.1$)

(단위: %)

	국민연금 부재				현행방식				연금각출률 인상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소비세율	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연금각출률	소비세율	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연금각출률	소비세율	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연금각출률	소비세율	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연금각출률
198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95	0	0	0	0	0	0	0	6.00	0	0	0	6.00	0	0	0	6.00
2015	0	0	0	0	0	0	0	9.00	0	0	0	13.00	0	0	0	9.00
2025	0	0	0	0	0	0	0	9.00	0	0	0	13.00	0	0	0	9.00
2030	0	0	0	0	0	0	0	9.00	0	0	0	13.00	0	0	0	9.00
2045	0	0	0	0	7.04	6.37	1.66	9.00	0	0	0	13.00	0	0	0	34.21
2060	0	0	0	0	6.52	5.66	1.47	9.00	5.38	4.69	1.22	13.00	0	0	0	27.84
2085	0	0	0	0	6.03	4.97	1.29	9.00	4.56	3.77	0.98	13.00	0	0	0	26.83
2134	0	0	0	0	5.29	4.31	1.12	9.00	3.90	3.17	0.83	13.00	0	0	0	24.86
	연금과세				급여개시연령 상향조정				소득주계제도 강화				정책조합			
198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95	0	0	0	6.00	0	0	0	6.00	0	0	0	6.00	0	0	0	6.00
2015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2025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203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2045	4.10	3.68	0.96	9.0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2060	5.52	4.78	1.24	9.00	4.89	4.24	1.10	9.00	4.08	3.54	0.92	9.00	4.52	3.92	1.02	9.00
2085	4.99	4.12	1.07	9.00	4.36	3.61	0.94	9.00	3.55	2.94	0.77	9.00	3.96	3.28	0.85	9.00
2134	4.38	3.56	0.93	9.00	3.76	3.06	0.80	9.00	3.02	2.45	0.64	9.00	3.42	2.78	0.72	9.00

<附表 II -7> 年金政策의 厚生效果 比較 II [60世代(21~80歲)]

($gr=0$ $\gamma=0.25$ $\rho=0.83$ $\alpha=2.1$)

(단위 : %)

세 대	후 생 효 과							
	국민연금 부재	현행 방식	연금각출률 인상	부과방식으로 전환	연금 과 세	급여개시연령 상향조정	소득추계제도강화	정 책 조 합
-59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	99.76	99.49	99.47	99.49	99.49	99.48	99.47	99.47
-18	99.72	99.38	99.36	99.38	99.38	99.37	99.36	99.36
-10	99.58	99.71	99.65	99.72	99.62	99.49	99.41	99.47
1	99.65	99.35	99.15	99.37	99.23	99.03	98.89	98.98
20	100.59	98.93	98.45	99.02	99.01	98.98	98.95	99.01
60	101.65	94.54	95.06	91.47	95.45	96.39	97.35	96.93
80	101.59	94.00	93.59	91.06	94.80	95.21	95.88	95.58
150	101.36	94.33	93.76	91.90	94.99	95.32	95.85	95.59

<附表 II -8> 年金受給과 釀出金の 比較 II [60世代(21~80歲)]

($gr=0$ $\gamma=0.25$ $\rho=0.83$ $\alpha=2.1$)

세 대	연금수급의 현재가치/연금각출금의 현재가치							
	국민연금 부재	현행 방식	연금각출금인상	부과방식으로 전환	연 금 과 세	급여개시연령상향조정	소득추계제도강화	정 책 조 합
-20	0	1.542	1.564	1.540	1.388	1.162	1.002	0
-15	0	1.199	1.157	1.198	1.081	0.908	0.785	0.878
-5	0	0.967	0.909	0.966	0.874	0.736	0.638	0.713
25	0	0.567	0.452	0.511	0.512	0.431	0.377	0.420
45	0	0.546	0.358	0.320	0.494	0.411	0.356	0.398
60	0	0.522	0.346	0.150	0.477	0.398	0.347	0.388
120	0	0.464	0.304	0.142	0.427	0.356	0.312	0.348

<附表 II-9> 政策代案別 資源配分 III [60世代(21~80歲)]

($gr=0$ $\gamma=0.1$ $\rho=0.83$ $\alpha=2.1$)

	국민연금 부채					현행방식					연금각출률 인상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1985	56.9	12.77	1.000	11.06	19.95	56.9	12.77	1.000	11.06	19.95	56.9	12.77	1.000	11.06	45.69	56.9	12.77	1.000	11.06	19.96
1995	78.9	16.35	1.027	10.49	18.26	82.7	16.27	1.045	10.12	21.42	82.9	16.30	1.045	10.12	42.87	82.8	16.28	1.045	10.02	21.48
2015	119.2	20.03	1.101	9.11	14.23	125.2	20.23	1.115	8.87	20.44	129.8	20.04	1.132	8.61	35.69	126.3	20.28	1.117	8.34	20.74
2025	129.9	20.33	1.127	8.69	11.72	124.1	20.39	1.109	8.97	16.41	131.5	20.50	1.128	8.66	30.57	125.9	20.52	1.112	8.93	17.17
2030	130.9	20.01	1.135	8.55	9.97	116.6	19.84	1.096	9.19	12.88	124.9	20.10	1.116	8.85	27.41	119.1	20.06	1.100	9.12	14.16
2045	118.4	17.47	1.140	8.48	7.26	86.5	15.49	1.078	9.51	4.05	89.0	17.15	1.052	9.98	22.78	91.7	15.03	1.110	8.96	5.52
2060	107.1	16.14	1.141	8.47	8.16	68.9	14.37	1.025	10.52	5.91	69.8	14.23	1.032	10.37	23.25	70.8	14.71	1.026	10.50	10.00
2085	95.3	14.79	1.130	8.63	9.186	53.6	13.56	0.962	11.97	8.56	53.7	13.51	0.963	11.94	25.74	54.1	14.00	0.954	12.16	14.250
2134	93.5	14.68	1.125	8.70	10.02	53.9	13.53	0.964	11.92	9.38	52.8	13.50	0.958	12.07	27.02	56.8	14.03	0.969	11.79	15.83
	연금과세					급여개시연령 상향조정					소득주계제도 강화					정책조합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임금률	이자율(%)	저축률(%)
1985	56.9	12.77	1.000	11.06	19.96	56.9	12.77	1.000	11.06	19.96	56.9	12.77	1.000	11.06	19.96	56.8	12.77	1.000	11.06	45.69
1995	82.8	16.28	1.045	10.12	21.48	83.2	16.31	1.046	10.10	21.68	83.2	16.31	1.046	10.10	21.70	83.1	16.31	1.046	10.10	43.13
2015	126.6	20.27	1.118	8.82	20.75	130.7	20.44	1.127	8.68	21.74	131.1	20.45	1.128	8.67	21.82	129.8	20.40	1.125	8.71	36.28
2025	127.2	20.51	1.116	8.86	17.14	134.5	20.81	1.131	8.62	18.99	136.3	20.87	1.135	8.56	19.35	133.5	20.76	1.129	8.65	31.21
2030	120.6	20.00	1.105	9.03	13.95	128.9	20.37	1.123	8.74	16.27	131.9	20.48	1.130	8.64	16.95	128.3	20.33	1.122	8.76	28.05
2045	89.8	15.74	1.085	9.37	4.47	95.4	17.40	1.071	9.62	7.31	100.6	17.64	1.085	9.37	9.22	96.1	17.42	1.073	9.58	23.45
2060	72.8	14.52	1.040	10.22	6.08	76.8	14.56	1.058	9.87	6.03	83.3	14.70	1.070	9.64	6.23	77.9	14.64	1.060	9.82	23.88
2085	57.2	13.68	0.980	11.54	8.52	60.1	13.73	0.994	11.19	8.28	63.5	13.81	1.011	10.82	8.23	61.5	13.78	1.001	11.05	26.57
2134	56.9	13.65	0.979	11.56	9.48	58.9	13.73	0.988	11.34	9.50	61.6	13.83	1.000	11.06	9.58	60.2	13.78	0.994	11.20	27.85

<附表 Ⅱ-10> 政策代案別 適用稅率 比較 Ⅲ [60世代(21~80歲)]
 (gr=0 $\gamma=0.1$ $\rho=0.83$ $\alpha=2.1$)

(단위: %)

	국민연금 부재				현행 방식				연금각출률 인상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소비세율	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연금각출률	소비세율	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연금각출률	소비세율	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연금각출률	소비세율	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연금각출률
198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95	0	0	0	0	0	0	0	6.00	0	0	0	6.00	0	0	0	6.00
2015	0	0	0	0	0	0	0	9.00	0	0	0	13.00	0	0	0	9.00
2025	0	0	0	0	0	0	0	9.00	0	0	0	13.00	0	0	0	9.00
2030	0	0	0	0	0	0	0	9.00	0	0	0	13.00	0	0	0	9.00
2045	0	0	0	0	7.51	6.49	1.69	9.00	0	0	0	13.00	0	0	0	35.24
2060	0	0	0	0	6.72	5.70	1.48	9.00	5.67	4.81	1.25	13.00	0	0	0	27.75
2085	0	0	0	0	6.30	5.18	1.35	9.00	4.75	3.92	1.02	13.00	0	0	0	27.27
2134	0	0	0	0	5.47	4.46	1.16	9.00	4.06	3.31	0.86	13.00	0	0	0	24.96
	연 금 과 계				급여개시연령 상향조정				소득추세제도 강화				정 책 조 합			
198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95	0	0	0	6.00	0	0	0	6.00	0	0	0	6.00	0	0	0	6.00
2015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2025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203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2045	6.31	5.43	1.41	9.0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2060	5.69	4.81	1.25	9.00	5.08	4.29	1.12	9.00	4.25	3.59	0.93	9.00	4.67	3.94	1.03	9.00
2085	5.17	4.26	1.11	9.00	4.46	3.68	0.96	9.00	3.62	2.99	0.78	9.00	4.06	3.35	0.87	9.00
2134	4.51	3.67	0.96	9.00	3.86	3.14	0.82	9.00	3.08	2.51	0.65	9.00	3.50	2.85	0.74	9.00

<附表 II-11> 年金政策의 厚生效果 比較 III [60世代(21~80歲)]

($gr=0$, $\gamma=0.1$, $\rho=0.83$, $\alpha=2.1$)

(단위 : %)

세 대	후 생 효 과							
	국민연금 부재	현행 방식	연금각출률 인상	부과방식으로 전환	연 금 과 세	급여개시연령 상향조정	소득추계제도강화	정 책 조 합
-59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0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20	99.90	99.75	99.75	99.75	99.75	99.75	99.75	99.75
-18	99.88	99.70	99.69	99.70	99.70	99.69	99.69	99.69
-10	99.85	99.60	99.58	99.60	99.58	99.53	99.51	99.53
1	1.001	99.14	99.04	99.15	99.11	99.05	99.01	99.04
20	1.017	99.29	98.74	99.33	99.37	99.49	99.49	99.46
60	1.029	93.59	94.51	89.85	94.77	96.50	97.57	96.79
80	1.029	92.56	92.09	89.49	93.66	94.45	95.32	94.82
150	1.026	92.53	91.84	90.11	93.49	94.10	94.88	94.47

<附表 II -12> 年金受給과 釀出金の 比較 III [60世代(21~80歲)]

($gr=0$ $\gamma=0.1$ $\rho=0.83$ $\alpha=2.1$)

세 대	연금수급의 현재가치/연금각출금의 현재가치							
	국민연금 부재	현행 방식	연금각출물인상	부과방식으로 전환	연금 과 세	급여개시연령상향조정	소득추계제도강화	정 책 조 합
-20	0	0.675	0.691	0	0.610	0	0.413	0.472
-15	0	0.478	0.474	0.481	0.434	0.346	0.297	0.338
-5	0	0.343	0.339	0.346	0.313	0.253	0.218	0.246
25	0	0.139	0.121	0.130	0.128	0.105	0.093	0.103
45	0	0.122	0.078	0.082	0.112	0.088	0.077	0.087
60	0	0.106	0.068	0.030	0.099	0.078	0.069	0.078
120	0	0.699	0.044	0.020	0.068	0.053	0.049	0.055

<附表 II-13> 政策代案別 資源配分 IV [60世代(21~80歲)]

($gr=0$ $\gamma=0.20$ $\rho=0.3$ $\alpha=2.1$)

	국민연금 부재					현행방식					연금각출률 인상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자본	노동	입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입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입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입금률	이자율(%)	저축률(%)
1985	107.7	15.90	1.000	7.28	24.91	107.7	15.90	1.000	7.28	24.91	107.7	15.90	1.000	7.28	24.91	107.6	15.89	1.000	7.27	24.85
1995	145.8	19.80	1.027	6.89	21.24	148.7	19.84	1.034	6.80	23.05	149.0	19.87	1.043	6.79	23.243	148.7	19.84	1.034	6.80	23.08
2015	209.1	22.95	1.103	5.96	14.47	206.0	23.28	1.092	6.08	17.46	211.2	23.21	1.103	5.97	18.51	205.5	23.28	1.092	6.09	17.43
2025	224.5	22.81	1.131	5.66	10.60	204.7	23.21	1.091	6.09	12.22	211.9	23.37	1.101	5.98	14.41	204.3	23.28	1.089	6.11	12.50
2030	225.5	22.29	1.142	5.56	8.21	195.5	22.65	1.083	6.18	8.50	203.1	22.90	1.093	6.07	11.268	196.0	22.80	1.082	6.20	9.29
2045	208.0	19.89	1.154	5.44	5.74	156.3	19.50	1.057	6.50	2.28	158.1	20.34	1.047	6.62	4.42	160.0	19.23	1.070	6.34	2.50
2060	188.2	18.04	1.153	5.45	7.20	127.2	18.30	1.009	7.15	4.80	127.9	18.23	1.012	7.10	4.77	125.0	18.54	0.999	7.29	6.24
2085	168.7	16.71	1.141	5.57	8.90	102.5	17.66	0.951	8.07	8.36	101.7	17.63	0.949	8.10	8.006	96.7	18.28	0.922	8.58	11.28
2134	165.7	16.64	1.136	5.62	10.01	102.5	17.54	0.953	8.03	9.55	100.2	17.61	0.944	8.17	9.57	99.3	18.13	0.933	8.38	13.17
	연금과세					급여개시연령상향조정					소득추계제도 강화					정책조합				
	자본	노동	입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입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입금률	이자율(%)	저축률(%)	자본	노동	입금률	이자율(%)	저축률(%)
1985	107.6	15.89	1.000	7.28	25.92	107.7	15.90	1.000	7.28	24.91	107.7	15.90	1.000	7.28	24.91	107.6	15.89	1.000	7.28	24.83
1995	149.1	19.87	1.034	6.79	24.36	149.5	19.89	1.035	6.78	23.39	149.7	19.91	1.035	6.78	23.50	149.3	19.89	1.035	6.79	23.37
2015	209.6	23.35	1.098	6.02	19.31	213.2	23.43	1.103	5.97	18.78	215.3	23.47	1.106	5.93	19.15	212.4	23.41	1.101	5.98	18.64
2025	211.0	23.31	1.101	5.99	14.58	217.3	23.45	1.109	5.89	14.53	221.8	23.52	1.115	5.83	15.27	216.6	23.44	1.108	5.91	14.38
2030	202.7	22.76	1.095	6.05	11.15	210.1	22.92	1.105	5.94	11.34	215.8	23.02	1.113	5.85	12.36	209.8	22.91	1.105	5.94	11.27
2045	162.7	20.12	1.060	6.46	4.49	169.0	20.24	1.072	6.32	4.64	177.0	20.37	1.086	6.15	6.42	170.3	20.25	1.074	6.29	4.89
2060	134.1	18.20	1.029	6.87	6.32	139.3	18.09	1.043	6.67	4.89	145.6	18.02	1.060	6.46	5.06	141.1	18.11	1.048	6.62	5.06
2085	108.6	17.52	0.971	7.72	9.58	112.6	17.41	0.985	7.50	8.03	118.4	17.27	1.004	7.21	7.90	114.9	17.37	0.992	7.39	8.08
2134	107.7	17.45	0.970	7.74	10.94	110.6	17.41	0.979	7.59	9.61	115.0	17.34	0.993	7.37	9.66	112.8	17.37	0.986	7.48	9.64

<附表 II-14> 政策代案別 適用稅率 比較 IV [60世代(21~80歲)]

($gr=0$ $\gamma=0.20$ $\rho=0.3$ $\alpha=2.1$)

(단위: %)

	국민연금 부재				현행방식				연금각출률 인상				부과방식에서의 전환			
	소비세율	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연금각출률	소비세율	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연금각출률	소비세율	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연금각출률	소비세율	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연금각출률
198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95	0	0	0	0	0	0	0	6.00	0	0	0	6.00	0	0	0	6.00
2015	0	0	0	0	0	0	0	9.00	0	0	0	13.00	0	0	0	9.00
2025	0	0	0	0	0	0	0	9.00	0	0	0	13.00	0	0	0	9.00
2030	0	0	0	0	0	0	0	9.00	0	0	0	13.00	0	0	0	9.00
2045	0	0	0	0	6.83	2.03	0.53	9.00	0	0	0	13.00	0	0	0	31.28
2060	0	0	0	0	6.44	2.17	0.56	9.00	5.27	4.52	1.18	13.00	0	0	0	28.04
2085	0	0	0	0	6.11	1.70	0.44	9.00	4.65	3.85	1.00	13.00	0	0	0	27.24
2134	0	0	0	0	5.47	1.42	0.37	9.00	4.12	3.35	0.87	13.00	0	0	0	25.53
	연금과세				급여개시연령상향조정				소득추계제도 강화				정책조합			
198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95	0	0	0	6.00	0	0	0	6.00	0	0	0	6.00	0	0	0	6.00
2015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2025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203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2045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0	0	0	9.00
2060	5.42	4.64	1.21	9.00	4.75	4.07	1.06	9.00	3.94	3.37	0.88	9.00	4.38	3.74	0.97	9.00
2085	5.02	4.15	1.08	9.00	4.35	3.60	0.94	9.00	3.52	2.92	0.76	9.00	3.96	3.28	0.85	9.00
2134	4.51	3.67	0.95	9.00	3.86	3.14	0.82	9.00	3.07	2.51	0.65	9.00	3.35	2.85	0.74	9.00

<附表 II -15> 年金政策의 厚生效果 比較 IV [60世代(21~80歲)]

($gr=0$ $\gamma=0.20$ $\rho=0.3$ $\alpha=2.1$)

(단위 : %)

세 대	후 생 효 과							
	국민연금 부재	현행 방식	연금각출률 인상	부과방식으로 전환	연금과세	급여개시연령 상향조정	소득추계제도강화	정책 조합
-59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0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99.99
-20	99.75	99.52	99.50	99.51	99.50	99.50	99.49	99.50
-18	99.71	99.41	99.39	99.41	99.39	99.39	99.38	99.39
-10	99.59	99.54	99.49	99.53	99.45	99.34	99.27	99.33
1	99.80	98.97	98.79	98.98	98.86	98.69	98.58	98.66
20	1.012	98.73	98.04	98.87	98.84	98.84	98.83	98.80
60	1.027	92.61	93.50	88.65	94.25	95.74	97.07	96.07
80	1.026	91.47	90.85	87.26	92.77	93.53	94.56	93.97
150	1.023	91.50	90.61	87.76	92.61	93.23	94.10	93.66

<附表 II -16> 年金受給과 釀出金の 比較 IV [60世代(21~80歲)]

($gr=0$ $\gamma=0.20$ $\rho=0.3$ $\alpha=2.1$)

세 대	연금수급의 현재가치/연금각출금의 현재가치							
	국민연금 부재	현행 방식	연금각출률인상	부과방식으로전환	연 금 과 세	급여개시연령상향조정	소득추계제도강화	정 책 조 합
-20	0	1.183	1.199	1.182	0	0	0	0.850
-15	0	0.897	0.874	0.896	0.813	0.672	0.580	0.650
-5	0	0.699	0.667	0.698	0.637	0.528	0.458	0.511
25	0	0.363	0.298	0.346	0.334	0.279	0.246	0.271
45	0	0.339	0.221	0.207	0.312	0.257	0.225	0.251
60	0	0.306	0.201	0.089	0.288	0.238	0.211	0.234
120	0	0.239	0.152	0.064	0.228	0.188	0.169	0.188

<국문요약>

우리나라 國民年金制度의 改善方向

全瑛俊 · 韓道淑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公的年金制度인 國民年金制度는 1973년 國民福祉年金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老後所得報障制度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오일쇼크를 비롯한 경제·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제도의 시행이 지연되다가 1988년에야 비로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아직 導入初期에 있으며 급여지급이 2008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선진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財政收給의 不均衡과 같은 재정상의 문제는 아직 대두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보험료에 비해 過多하게 책정될 給與水準과 같은 국민연금제도의 현 收給構造가 유지될 경우 향후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난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의 현 구조하에서는 2020년경에 기금이 赤字로 전환되며 2030년 경에는 積立基金이 枯渴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本 報告書는 人口構造의 變化를 반영한 世代別 厚生分析을 통해 世代間의 所得移轉에서 오는 歪曲을 最小化하고 경제전체의 厚生을 전제로 하는 우리나라 國民年金制度의 改善方向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年金財政의 收給不均衡을 해결하기 위한 代案別 改善方向을 제시하였다.

또한 本 報告書에서는 주요국의 공적연금제도의 사례분석에 따른 국제비교와 함께 최근 주목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

A Reform Proposal for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Korea

Chun, Young—Jun and Do—Sook, Han

Rapid demographic transitions in Korea are caused by rapidly rising life expectancy and declining fertility rate which translate into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old aged people in the general population. As other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with rapid economic growth, the role of formal system for the old age security in Korea is also becoming very important.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Korea(NPS) as a foremost formal old age security system with most wide coverage has been first introduced by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Welfare and Pension Act in 1973. However, due to the oil crises and other social and economic difficulties, the system's operation was postponed till 1988. The NPS is still at the early stage of its development and has not yet been faced with the major financial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the pension benefit expenses. But with an outlook for the composition of future population and the present pension benefit—contribution formula, the NPS's future financial picture does not seem so bright. The previous studies on this issue suggest that the NPS's financial balance will turn negative around the year 2020, and the fund will finally dry up in 2030.

This study recognizes the seriousness of the financial problem of the NPS when it reaches the maturity due to fast aging population

and large expenditures which far exceed the level of contributions. This study analyzes intergenerational impact of income transfers within the system assuming demographic changes.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the study offers alternative reform proposals for improving future financial situation of the system.

This study also offers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public pension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followed by recent discussions on the issue of international pension reform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